

한국사회의 양극화 심화에 따른 위기진단과 사회보장 대응방향



일 시 2024. 12. 20 (금) 오후 2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공동주최 안 상 훈 국회의원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보건복지부

협력단체 | 골든에이지포럼, 사)지속가능발전원, 한국사회봉사단연합회, 동아노인복지연구소, 한국복지공공연구소, 한국사회복지원로회, 환경과 복지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성남시민포럼

한국사회의 양극화 심화에 따른 위기진단과 사회보장 대응방향

일 시 | 2024년 12월 20일 (금) 오후 2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공동주최 | 안 상 훈 국회의원,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복지 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 꼭 필요 한 때에 골고루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전달되는지, 또 불법수급자가 없는지, 수급자들의 재화나 서비스에 남용과 오용을 막을 수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시민운동차원에서 감시,감독 연구를 통한 시민 옴부즈만 역할을 하고, 대안 제시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 차

【인사말】	안 상 훈 국회의원
【축 사】	김 상 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서 상 목 前 보건복지부 장관 박 강 수 前 배재대학교 총장
【주 제】	한국사회의 양극화 심화에 따른 위기진단과 사회보장 대응방향
【주 제 발 표】	
	김 태 완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 론 문】	
	강 성 호 선임연구위원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
	최 균 교수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정 용 제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오 건 호 정책위원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부 록】	본 연구회 (연혁/공지사항/협력기관 및 단체) 소개.....

프로그램

1 부

사회 : 김 은 경 사무국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호서대학교 겸임교수

- 1) 개회선언
- 2) 국민의례
- 3) 인 사 말..... 안 상 훈 국회의원
- 4) 축 사..... 김 상 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서 상 목 前 보건복지부 장관
박 강 수 前 배재대학교 총장
- 5) 참석자 소개이 정 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 6) 단체기념사진모든 참석자

2 부

좌장 :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주제발표

한국사회의 양극화 심화에 따른 위기진단과 사회보장 대응방향

.....김 태 완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토 론

..... 강 성 호 선임연구위원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

..... 최 균 교수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 정 용 제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 오 건 호 정책위원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참관자 질의/응답

○ 총 마무리 발언이 정 숙 회장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상훈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한국사회 양극화 심화에 따른 위기진단과 사회보장 대응방향」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뜻을 모아 이번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 주신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정숙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한국사회의 양극화 심화에 따른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진단과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주제발표를 준비해 주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박사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토론을 위해 참석해 주신 보험연구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님, 한림대학교 최균 교수님, 국회입법조사처 정용제 입법조사관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정책위원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한국은 소득, 자산, 노동시장, 교육, 지역 등 여러 부문의 다중 격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2020년 전후 부동산 가격 급등 이후 자산 불평등이 심화하여 한국의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7년 0.584에서 2024년 0.612까지 7년 연속 상승 중입니다. 노동시장에서는 여전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및 사내 복지, 근무환경 등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부모의 능력에 따른 자녀의 사교육지출 편차는 매년 커지고 있고, 명문대 재학생의 50% 이상은 부모가 가장 소득이 높은 5분위라는 연구도 나옵니다.

자유시장경제 하에서 필연적으로 격차는 발생하지만, 그 격차가 지나치면 다수의 국민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경제적 양극화뿐 아니라 정치·사회적 양극화를 경험하는 것 역시 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기회의 격차가 지속되고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지 못하는 사회는 성장 동력을 상실해 갈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다양한 사회정책을 통해 자유시장 경제하에서 발생하는 시장 실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러한 자본주의의 수정된 버전이 바로 ‘복지국가’입니다. 복지국가의 성패는 어떤 사회정책으로,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에 달려있습니다. 소득보장을 위한 현금성 복지는 취약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집중하는 한편, 전 국민 대상으로는 고용, 주거, 돌봄 등 사회서비스 복지를 확대하여 국민 간 생활 격차를 줄여가야 합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를 통해 한국 사회의 양극화 양상을 다각도로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 정책적 대응 방향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고견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국회의원 안 상 훈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의원입니다.

[한국사회 양극화 심화에 따른 위기진단과 사회보장 대응방향]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복지 선진화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상훈 의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토론회 주최에 함께 힘써주신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산, 교육, 문화 등 각종 격차가 벌어지는 가운데 소득양극화는 최근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지난달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금년 8월 기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174만8천원으로 임금불평등이 역대 가장 심한 수준입니다. 양극화가 심화된 배경에는 산업·노동구조 및 경제구조 변화, 자산격차 확대를 비롯한 구조적 문제가 짙게 깔려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구조적 문제가 여전한 와중 코로나19 이후 자산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1인가구가 증가하는 추세까지 겹쳐 양극화 먹구름이 좀처럼 걷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집권 후반기 정책목표로 ‘양극화 타개’를 설정하고 2025년 예산안에 격차 완화를 위한 ‘휴먼 뉴딜’예산을 편성했으나, 야당 주도로 민생예산이 대폭 삭감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최근 어지러운 정국에 양극화 해소에 제동이 걸렸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종합대책 마련에 끝김이 없어야 하고 지원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해야 하는 시점인 만큼, 양극화 위기수준을 진단하고 대응책을 도출하기 위한 본 토론회가 갖는 시의성이 매우 큼니다.

국민의 복리 증진과 민생 행보에 조금도 중단과 지연이 없도록,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복지를 위해 앞장서시는 안상훈 의원님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토론회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참석자 여러분에게 적극적인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본 토론회 개최를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김 상 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축 사

우선 ‘양극화 심화’라는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하신 이정숙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강의 기적’은 형평 속의 고도성장을 이룩한 대표적 사례로 국제사회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된 것이 었그제 같은데, 이제는 우리가 양극화의 심화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우리나라 소득분배의 역사적 추이를 살펴보면, 노동 집약적 산업이 수출의 주종을 이루었던 1960년대는 수출 부문의 획기적 증가로 인한 고도성장이 실업률의 감소와 실질임금의 상승으로 이어져 성장의 과실이 저소득층에게도 골고루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중화학공업 추진전략으로 인해 산업의 고도화는 이루어졌으나, 산업 간 자본집약도 차이로 인한 임금 격차의 확대는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ICT 기술혁명 은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이는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해결책은 상대적으로 기술혁신의 혜택 보지 못하는 계층과 부문이 기술혁신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및 재래식 서비스산업의 기술혁신 노력에 대한 공공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과 고령층에게 ICT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정부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정부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OECD 한국보고서가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아직도 정부 차원의 노력은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양극화에 대한 전문가들은 물론 정부와 정치권의 인식이 크게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서 상 목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 회장/ 前 보건복지부 장관/ 강남대학교 석좌교수

축 사

우리 사회 소득과 돌봄 사각지대의 타개책이 보여야 한다.

축고 움추려지는 겨울입니다.

자연의 섭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 우리 사회 전체의 분위기도 매우 축고 어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선진복지사회 연구회 이정숙 회장은 시대가 요구하는 한국사회 양극화에 따른 대응전략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훌륭하신 발표자들과 함께 힘차게 밀고 나가는 모습이 존경스럽습니다.

현대사회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과학과 기술의 무한 진보를 향해 지속 가능한 힘과 지혜를 쏟고 있습니다.

모든 기계가 인공지능을 탑재하는 시대입니다. 그것이 인간사회를 어떻게 돕고 망칠런지는 누구도 예측이 불가능한 언필칭 AI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학과 첨단 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인간의 보편적 가치와 삶의 보람과 행복을 추구하는 복지국가 즉, 한국사회 양극화 심화에 따른 사회보장의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갖는다는 것이야말로 시의적절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삶의 질과 욕망을 충족 시켜주는 선진복지사회는 우리의 꿈입니다.

실로 인간은 지구의 단순한 거주자가 아닌 우리 자체가 지구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지구사회의 풍경은 그 어느 때보다 한국사회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갈등과 경쟁이 극심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간스러움에 더욱 다가서려는 이번 토론회는 실로 우리가 바라는 마음이며 노력입니다.

끝으로 오늘의 토론회에서 쏟아져 나온 정부와 사회가 풀어야 할 많은 아이디어와 과제들이 우리 정부와 사회에서 긴요하게 인용되기를 희망하면서 펜을 놓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박 강 수

배재대학교 前총장/ 경동대학교 석좌교수/경영학박사

[주 제 발 표]

한국사회의 양극화 심화에 따른
위기진단과 사회보장 대응방향

김 태 완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 양극화 심화에 따른 위기진단과 사회보장 대응방향¹⁾〉

김태완(한국보건사회연구원)

I. 현시점에서 양극화 대응 필요성 및 배경

1. 양극화 대응 필요성

◇ 일반의 질문 : 왜 양극화 연구를 또 하는가? 양극화 무엇이 문제인가?

- 2000년대 들어 IMF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배제, 소외된 계층이 상존
 -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으로 최빈층, 빈곤층 대상 사회안전망지속적으로 강화
 - 근로빈곤층, 노인 등은 물론 신취약계층(비정규직, 소수자 등)에 대한 대응은 부족
 - ⇒ 소득, 돌봄 사각지대
- 소득을 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불평등(자산, 주거, 노동시장 등)현상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가 대응 부족
 - 상대적 양극화를 넘어 절대적 양극화(=격차)에 초점을 두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부족
 - ⇒ 국민통합 저해
- 전통적 위험인 빈곤, 실업, 질병 등을 넘어 신사회적위험은 다층화, 계층화, 중첩화되고 있지만 현재의 사회정책은 이에 대한 대응 부족
 - 중산층, 근로연령층 대상 위기 발생(코로나 19, 소득분배 위기('18년), 가족내돌봄등) 등 사회안전망취약
 - ⇒ 누구나 취약계층, 빈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 경직적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따른 제도 간 연계 부족(소득+서비스보장)과 새로운 위기(감염병, 인구위기, 디지털전환 등)에 대한 대응 부족
 - ⇒ 현재를 넘어 미래에 대한 희망 부재

1) 이번 발표문은 “김태완, 이주미 외(2022). 한국사회양극화 진단과 사회정책 대응.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발제자가 최근 정부 및 위원회 등에서 발표한 자료를 취합하여 새롭게 구성한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번 글에 수록된 내용은 기관 공식의견이 아닌 발제자 개인의견임을 밝힙니다.

2. 최근의 양극화 대응

□ 대통령실 '24년 11월 11일 “양극화 타개” 집권 후반기 정책목표 설정

-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에는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라도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라고 발표

□ 양극화 정책 방향 :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사회 추진”

- ① 1차적 분배 미흡시 2차적 분배 기능 강화를 통해 양극화 해소
- ② 중산층의 생활, 문화 수준 등 향상을 위한 노동, 교육, 주택 및 자산 분야별 정책 추진
- ③ 청년과 미래세대 등 경제주체가 일하고 교육 받을 기회를 제공해 노동시장과 사회적 자본의 선순환 구조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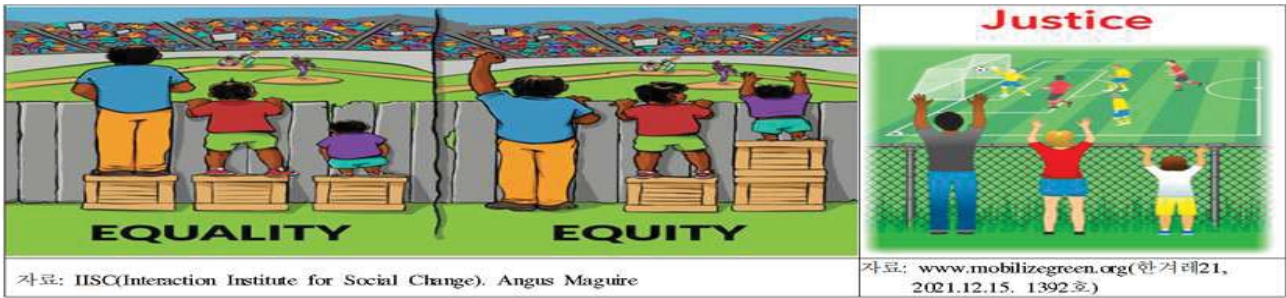
II. 양극화 개념과 원인

1. 양극화 개념

□ 빈곤은 1901년 라운트리의 연구를 시초로 하여 많은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졌다면, 불평등에 대한 연구 역시 20세기 초 로렌쯔, 지니, 피구 및 달튼 등의 연구를 시초로 하여 많은 논의와 연구

□ 불평등(Inequality)이란 두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음. 첫째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인하여 소득, 부, 지출 등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둘째는 소득 등에 차이가 있는 것과 동시에 분배가 공평하지 않다는 의미의 윤리적 판단을 지니고 있음.

- 앳킨슨의 경우 첫 번째는 격차(difference), 분산(dispersion), 집중(concentraion)이란 의미로 사용하고 두 번째는 불평등(Inequality)라는 용어를 사용함.
- 앳킨슨의 정의에 따를때 불평등이란 소득이나 부에 대해 격차가 존재하며 이 격차가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게 됨.
 - － 그러나 현실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의미를 큰 차이 없이 사용하고 있음. 또한 불평등과 소득분배란 용어도 같은 의미로서 다루게 됨.
- 평등(平等, Equality)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나누어 갖는 것임(아래 왼쪽그림). 하지만 이는 공평(公平, Equity)하지는 않음
 - － 평등하게 나누면 누군가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므로,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이것이 공정(公正, Fairness),정의(正義, Justice)로운 것임



□ 양극화(兩極化, bipolarization)

- 자원의 분포(the resource distribution) 또는 자원의 사다리(the resource ladder)에서 최상층과 최하층이라는 2개 극점(極點, spike)에 인구의 빈도(頻度, frequency)가 집락(集落, clustering)된 상태로 정의(신동균·전병유, 2005, pp. 79-80; 신동균, 2006, pp. 63-64)
- 자원의 분포에서 인구의 빈도가 특정수준 또는 극점(極點, spike)에 집중된 상태를 극화(極化, polarization) 또는 다극화(多極化, multipolarization)라 하고, 여기서 극점이 2개(N=2)이면 양극화라고 부름(신동균, 2006, pp. 64-67). 즉, 양극화는 자원의 분포가 양끝으로 나뉘어 몰림·쏠림·집중·편중을 뜻하는 개념
 - “분포에 있어 중간이 줄어들고 분포의 양 끝단으로 밀집되는 현상”, 또는 “자원의 분포(the resource distribution) 또는 자원의 사다리(the resource ladder)에서 최상층과 최하층이라는 2개 극점(極點)에 인구 빈도(頻度, frequency)가 집락(集落, clustering)된 상태”로 정의
- 양극화는 협의적(狹義的) 개념으로 경제적 양극화, 특히 소득양극화를 의미하지만, 광의적(廣義的) 개념으로 경제적 양극화를 포함하는 사회 전체적 양극화(경제 및 사회 전반에서 집단 간 격차로 인한 사회집단 간 정치적 가치관의 대립, 생활양식의 분화, 상대적 박탈감의 증가 등)를 의미(장미혜 외, 2009, pp. 25-27).

□ 격차(隔差, disparity)

- 격차는 ‘(빈부, 임금, 기술 수준이) 서로 떨어져 다른 정도’를 뜻하고, 자원의 분포에서 집단 간 편차를 기술하는 개념
 - ‘가격, 자격, 품질, 등급이 서로 다름’을 뜻하는 격차(格差⇒일본)와는 구별(국립국어원, 2008)
- 격차의 추가적 이해 : 격차의 절대성을 활용한 이해
 - 사례를 보면, 소득 1분위 평균소득은 10만원, 소득 10분위 평균 소득은 100만원 ⇒ 소득10배율은 10배, 소득 1분위와 소득 10분위 평균소득격차는 90만원(A)
 - 시간이 지나 소득 1분위 평균소득은 1,000만원, 소득 10분위 평균 소득은 1억원 ⇒ 소득10배율은 10배, 소득 1분위와 소득 10분위 평균소득격차는 9,000만원(B)
 - A와 B의 절대적 소득격차는 100배가 증가, 하지만 소득분배율은 동일

□ 양극화 지수

○ ER 지수(Esteban and Ray, 1994)

- 단순 ER지수는 동질성 (π_i^α)과 이질성($|\mu_i - \mu_j|$)의 곱들의 합(신동균, 2006, p. 66)

$$ER(\alpha, \rho) = \sum_i \sum_j \pi_i^{1+\alpha} \pi_j |\mu_i - \mu_j|$$

- 여기서 π = 확률밀도(해당 극점에서의 인구비율), μ = 해당 극점에서의 평균소득, j = 집단(극점)의 개수, i = 집단(극점) 내 i 번째 개인, α = 지수의 민감도(0~1.6사이의 값을 가짐)를 의미. $\alpha = 0$ 이면 단순 ER지수는 지니계수(G)와 같음

○ 울프슨 지수(Wolfson Index, 유경준, 2007, p. 5)

- 울프슨 지수는 “중산층의 축소” 개념을 이용하고, 다음과 같이 표현

$$W = \frac{\mu}{m} \left[\frac{1}{2} - L - \frac{G}{2} \right]$$

- 여기서 μ = 평균소득, m = 중위소득, L = 중위소득 이하 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 G = 지니계수를 의미. 중위소득 대비 평균소득 비율(μ/m)이 커질수록, 중위소득 이하 소득계층의 소득점유비율(L)이 작아질수록 지수(W)가 증가(양극화 정도가 커짐)

2. 양극화 등장 배경과 원인

□ 등장배경

- 2005년 신동균·전병유논문이 발표되면서 관심이 높아짐. 여기서는 소득양극화에 초점(신동균, 전병유, 2005)
- 2005년 노무현대통령이 신년사와 신년기자회견에서 시작(김왕배, 2009). 성장과 분배 선순환, 동반성장론 대두
 - 노무현정부에서 양극화 담론을 주도한 이유로 외환위기 이후 사회안전망, 분배정책 강화를 위한 사회적 지지와 자세 및 보험료 체계 개편 등을 위한 추동력 차원에서 시작한 것으로 평가(김왕배, 2009)

□ 양극화 원인 : 한국사회 성장 단계를 통해 본 관점

○ 60~80년대 한국의 성장정책 : 고도 성장기

- 재벌, 중공업 및 제조업, 전문엘리트(관료, 전문가 집단 등) 중심의 발전사회 : 노동운동, 민주화 운동은 있었지만 절대빈곤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 정부주도 인식사업 등으로 양극화, 분배 현상에 무관심(?). 경제성장이 최우선

⇒ 산업과 노동시장에서 격차 시작 : 기업규모별, 산업별 격차 발생

- 교육격차 : 우리 자녀 혹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 우리 가족도 좋아질 수 있다는 교육 열 → 상류층은 기득권 유지, 중간계층은 더 높은 계층으로의 상승 희망, 하층은 직업을 가지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육 (남인숙, 2011, 20)

⇒ 교육에서 격차 시작 : 학벌사회, 수도권 중심(☞부동산문제 시작)발전 등

- 90년대 사회발전과 경제성장 정책 : 마지막 고도성장기
 - 전문엘리트중심의 사회고착화. 이 속에서 민주화 운동을 반영한 사회정책 확대
 - 절대빈곤에서 벗어나면서 상대빈곤, 상대적 불평등에 관심을 두는 시기
 - 제조업, 중공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90년대로 들어서면서 기술집약산업으로 전환에 따른 일자리 창출 능력의 저하 → 2000년대 들어 저성장 기조에 맞물리면서 일자리 창출 능력이 악화 → 양극화의 한 원인으로 진단(김원식, 2013)
- 2000년대 저성장기(=잠재성장률 하락)
 - 재벌 일자리 창출능력 한계, 산업구조 재편이 늦어짐(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심 전환, 디지털 중심 산업으로 전환이 늦어짐)에 따른 청년, 조기은퇴 이후 일자리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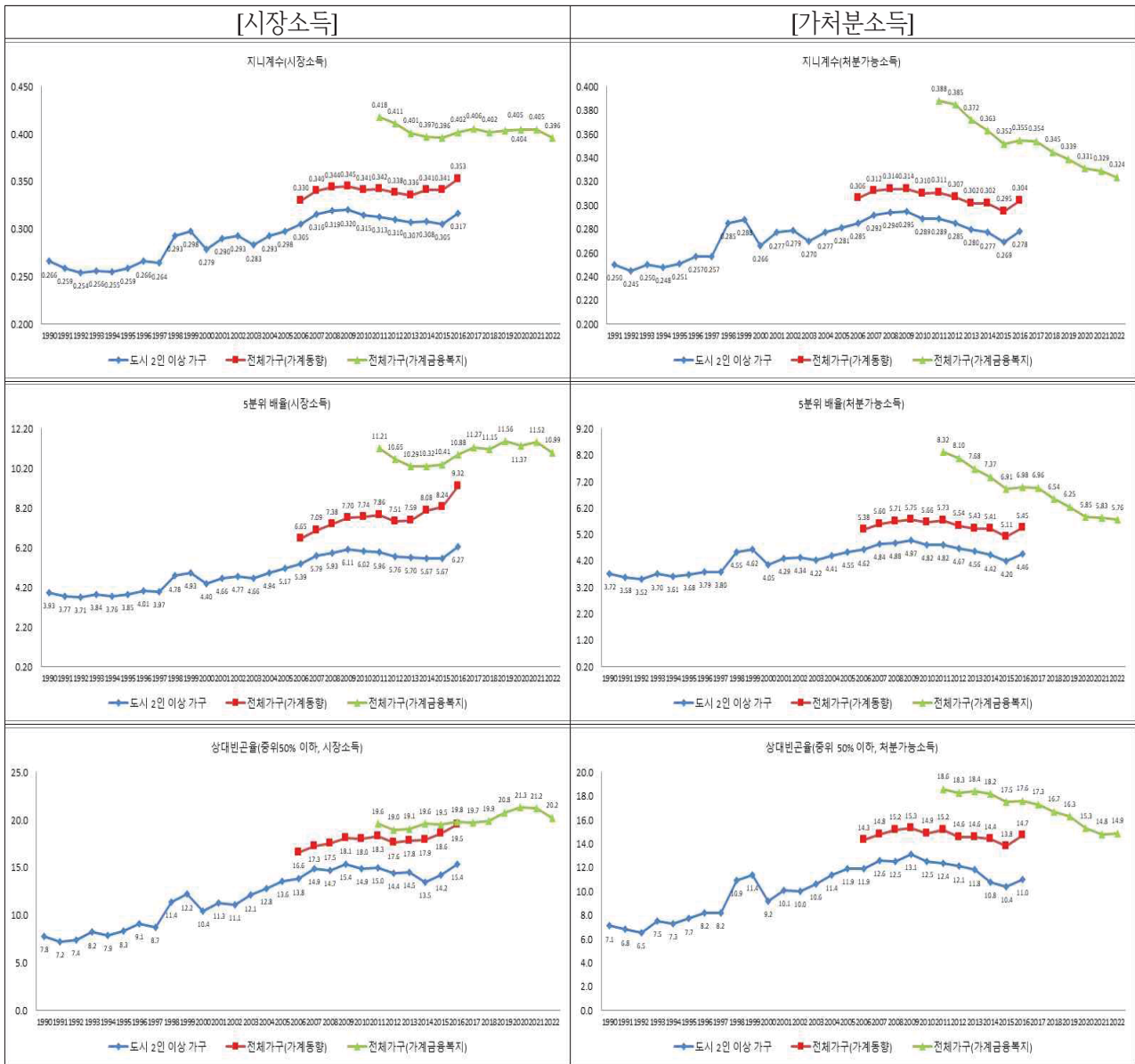
III. 한국 사회 양극화 현상

□ 한국의 소득분배 변화

-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소득분배는 공적이전소득의 확대에 따라 분배 및 상대빈곤율이 지속적으로 감소중
 -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확대, 기초연금 급여 상향, 근로장려세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노인과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제도 확충 중
 -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도입 등도 공적이전소득 확장에 영향
- 반면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분배 및 상대빈곤율은 여전히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
 - 2022년 시장소득 분배지수도 소폭 개선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가처분소득과 비교해서는 변화가 크지 않음
 - 노동시장 이중구조, 영세자영업자 및 불안정 고용층의 근로 및 사업소득의 불안정성이 영향. 여기에 고령화로 인한 베이비 부머세대의 은퇴로 향후 시장소득 개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

[그림 III-1] 주요 소득분배 지표 변화

(단위: %, 배)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소득분배지수-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중간계층 규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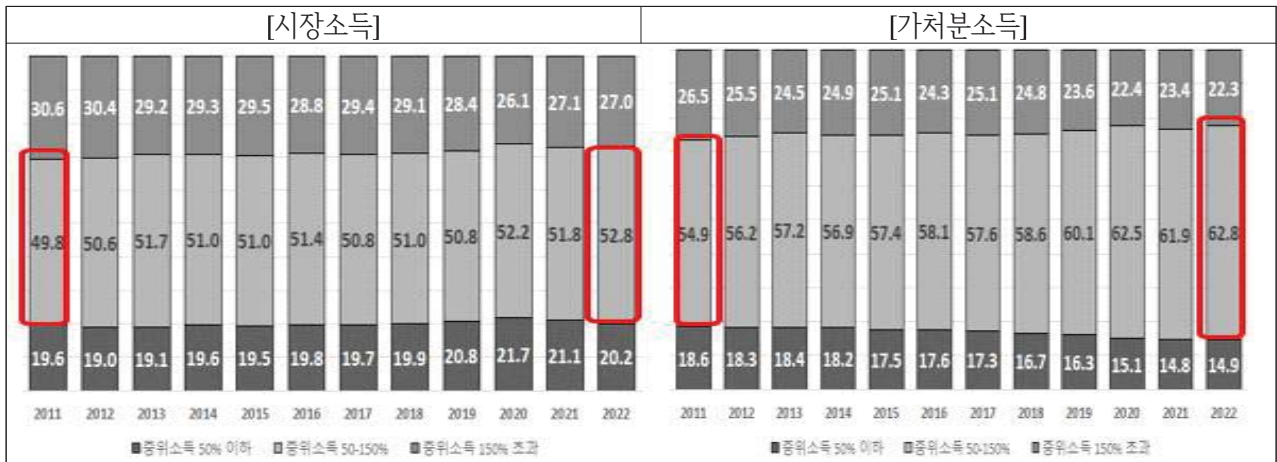
○ 소득을 기준으로 한국의 중간계층 변화를 살펴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간계층의 규모가 증가

— 시장소득 기준으로 2011년 49.8%에서 2022년 52.8%로 증가. 가처분소득 역시 동일 기간 54.9%에서 62.8%로 증가

○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중간계층이 증가하고 있어서 양극화 현상을 바로 진단하기 어려움

[그림 III-2] 중간계층 변화

(단위: %)



자료: 김태완, 이주미 외(2022). 한국사회양극화 진단과 사회정책 대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인용 및 추가분석

□ 지역별 빈곤율 격차

○ 도시 및 농어촌 거주 가구 간 빈곤율 변화 추이를 보면, 두 지역 간에 상대빈곤율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

—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차이가 줄어들고 있지만, 시장소득에서 도농 간에 격차가 발생 중

<표 III-1> 도시와 농어촌 가구빈곤율 변화

(단위: %)

전체 (가구)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전체		농촌		도시		전체		농촌		도시	
	중위 30% 미만	중위 50% 미만	중위 30% 미만	중위 50% 미만	중위 30% 미만	중위 50% 미만	중위 30% 미만	중위 50% 미만	중위 30% 미만	중위 50% 미만	중위 30% 미만	중위 50% 미만
2019 1/4	19.7	27.0	32.2	40.2	16.9	24.0	10.6	21.5	18.5	33.9	8.8	18.8
2019 2/4	18.1	25.3	28.6	37.2	15.8	22.6	8.5	19.5	13.4	27.9	7.4	17.7
2019 3/4	18.7	25.6	28.1	37.2	16.6	23.0	9.1	19.5	14.7	29.8	7.8	17.3
2019 4/4	17.5	24.4	24.0	32.2	16.0	22.7	8.9	18.4	11.9	24.3	8.2	17.2
2020 1/4	20.0	26.6	33.2	40.6	17.1	23.4	10.1	20.8	17.4	32.9	8.4	18.1
2020 2/4	20.5	26.8	33.2	41.1	17.6	23.7	7.3	17.1	12.1	27.6	6.2	14.7
2020 3/4	19.3	26.2	29.9	37.6	17.0	23.6	9.0	19.1	13.5	28.4	7.9	17.0
2020 4/4	18.3	25.2	22.1	30.4	17.4	24.0	8.1	17.9	7.9	20.8	8.2	17.3
2021 1/4	21.0	27.8	31.4	39.4	18.7	25.3	9.2	20.3	13.9	28.8	8.2	18.4
2021 2/4	19.4	26.2	29.3	37.8	17.2	23.6	8.5	18.4	13.1	28.3	7.5	16.2
2021 3/4	18.3	25.0	26.2	34.5	16.6	22.9	7.9	18.0	10.4	24.9	7.3	16.5
2021 4/4	17.8	24.5	21.1	29.9	17.1	23.4	8.0	18.4	9.6	21.1	7.7	17.8
2022 1/4	19.6	25.9	30.3	37.2	17.3	23.4	8.5	18.4	14.5	27.6	7.2	16.3
2022 2/4	18.1	24.3	27.5	34.8	16.0	22.0	8.0	17.4	12.6	26.1	7.0	15.5
2022 3/4	17.8	24.7	26.6	34.5	15.8	22.6	9.1	18.3	12.4	25.4	8.3	16.8
2022 4/4	17.2	24.3	21.6	30.3	16.2	23.0	7.9	17.8	9.9	21.4	7.5	17.1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저자 산출(김태완, 이주미, 최준영, 2023. 보건복지포럼)

- 광역단위별 빈곤 격차를 보면, 서울 및 수도권에 비해 지역 광역시와 자치도 간의 빈곤격차도 상당

〈표 III-2〉 지역별 빈곤율 변화

(단위 : %)

구분	전국	서울	수도권 (인천/경기)	부산/경남/울산	대구/경북	대전/충남/세종	강원/충북	광주/전남/전북/ 제주도
2005	20.0	15.4	17.9	17.9	27.7	21.0	19.8	30.9
2006	18.9	13.0	15.0	18.6	25.0	19.6	23.8	30.5
2007	18.2	12.5	14.0	16.7	26.0	21.0	20.2	30.3
2008	18.9	13.0	16.2	18.1	25.9	19.6	23.3	27.9
2009	18.1	14.1	14.5	18.4	26.6	18.2	20.6	25.1
2010	17.6	14.2	14.5	16.7	23.4	16.9	20.6	26.0
2011	18.0	13.4	14.8	18.4	25.2	16.3	24.9	25.0
2012	17.2	14.8	13.4	16.9	25.7	12.5	23.0	24.1
2013	18.7	15.1	14.4	18.2	29.5	15.4	22.9	27.2
2014	18.0	13.5	14.7	18.9	26.0	17.0	23.2	23.9
2015	17.9	15.3	14.6	16.6	22.6	18.1	22.8	25.3
2016	17.9	14.4	14.3	17.7	24.0	19.8	23.9	24.1
2017	17.8	15.1	12.9	18.5	24.6	19.6	23.6	23.6
2018	18.5	15.3	12.1	21.7	25.4	20.8	28.5	24.4
2019	18.3	15.2	12.7	21.1	24.1	22.3	24.6	23.4
2020	19.6	16.2	13.9	22.4	24.7	23.6	30.9	23.7
2021	20.1	17.8	13.8	23.8	26.1	25.1	27.4	24.7

주 : 1) 한국복지패널조사 기준

자료 : 김태완. 2024. 부산이니셔티브 포럼 발표자료. 부산연구원.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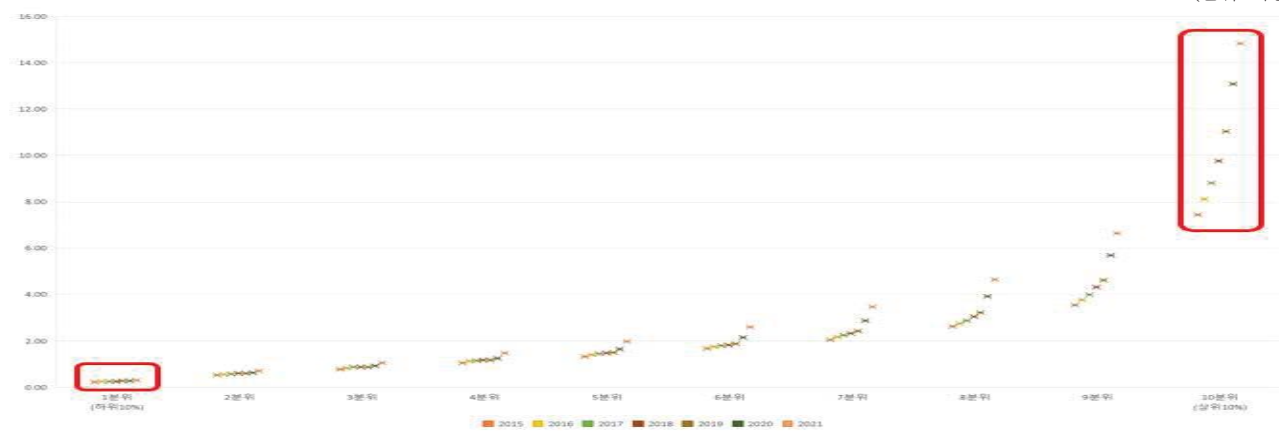
□ 자산양극화 현상

- 주택소유통계 결과, 10분위(상위 10%)와 1분위(하위 10%)의 자산 격차를 확인

- － 1분위(하위 10%)의 경우, 2015년 대비 2021년 800만원 상승할 때
- － 10분위(상위 10%)의 경우, 2015년 대비 2021년 7억 4천만원상승

〔그림 III-3〕 분위별주택 자산가액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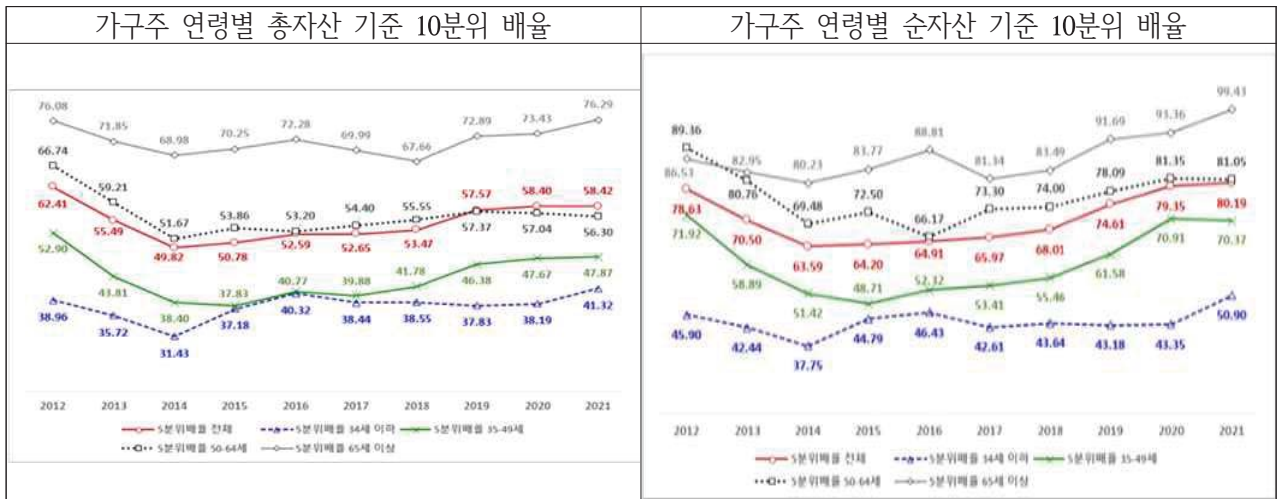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KOSIS ‘주택자산가액기준10분위별주택소유가구 기본현황’. 2023.

○ 34세 이하 청년층, 65세 이상 노년층의 자산 10분위 배율이 최근 증가

— 35세 이상 연령층 가구주 가구의 경우 최근 시점인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순자산 10분위 배율이 감소한 반면, 34세 이하 청년층 가구주 가구의 경우 유일하게 그 격차가 증가

[그림 III-4] 가구주 기준 자산 10분위 배율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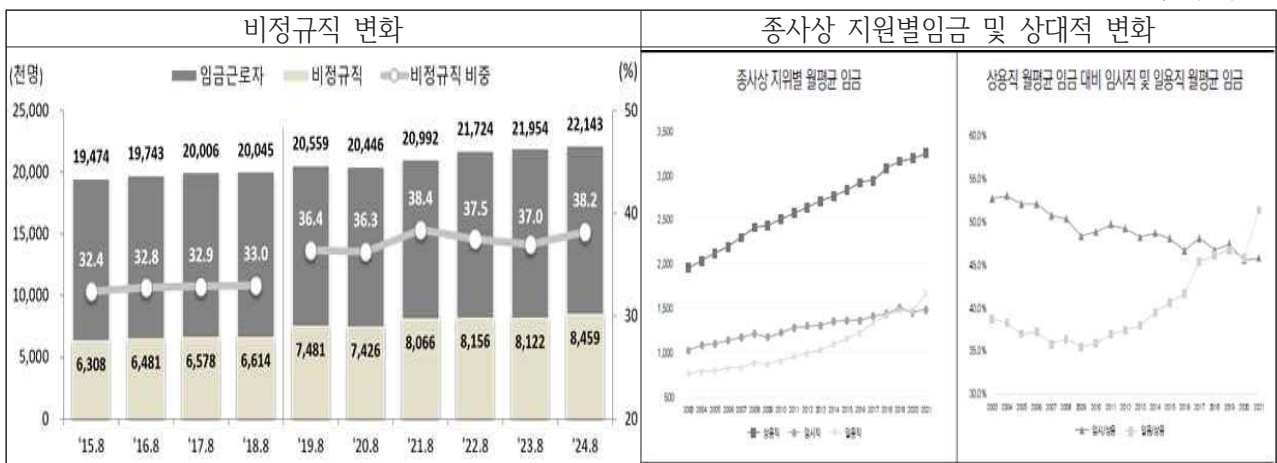
자료: 김태완, 이주미 외(2022). 한국사회양극화 진단과 사회정책 대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인용

□ 노동시장 양극화 : 노동시장 이중구조

○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로 본격 등장한 비정규직 규모는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고 있지 못하며, 상용직과 임시직 간의 임금차이도 여전히 발생 중

[그림 III-5] 비정규직 규모 및 임금 상대변화

(단위: %, 천원)



자료: 통계청.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2024. 10.22).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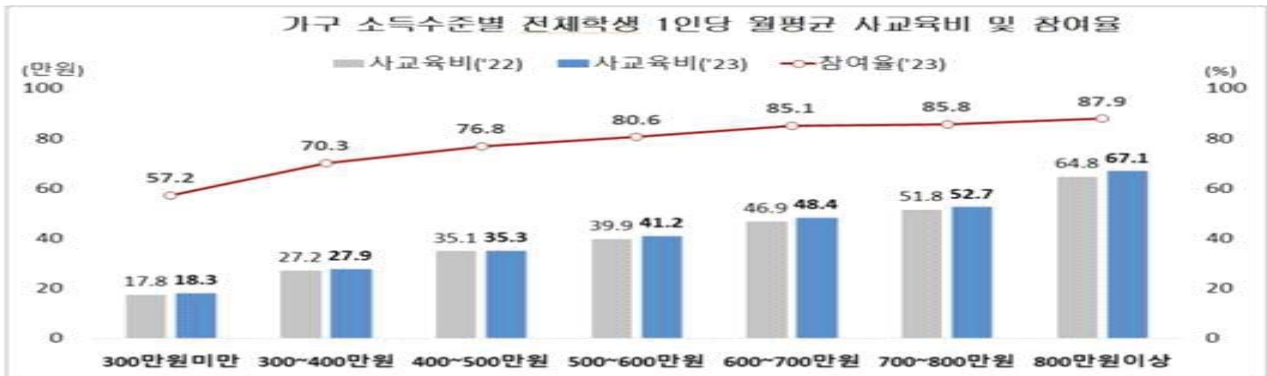
임완섭(2023). 노동양극화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316호. 재인용

□ 교육 양극화 및 격차 현상

-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 결과 소득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 수준과 참여율에서 큰 차이 발생
 - － 300만원 미만은 월 18.3만원, 800만원 이상은 67.1만원으로 세배 이상 큰 차이를 보임. 사교육 참여도 소득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여, 300만원 미만은 57.2%, 800만원 이상은 87.9%로 집계됨

〔그림 III-6〕 수도권과 비수도권 가구당 총자산 추이

(단위: 만원, %)



자료: 뉴스핌. 사교육 양극화 더 심해졌다---교육이 계층장벽. 2024.03.15.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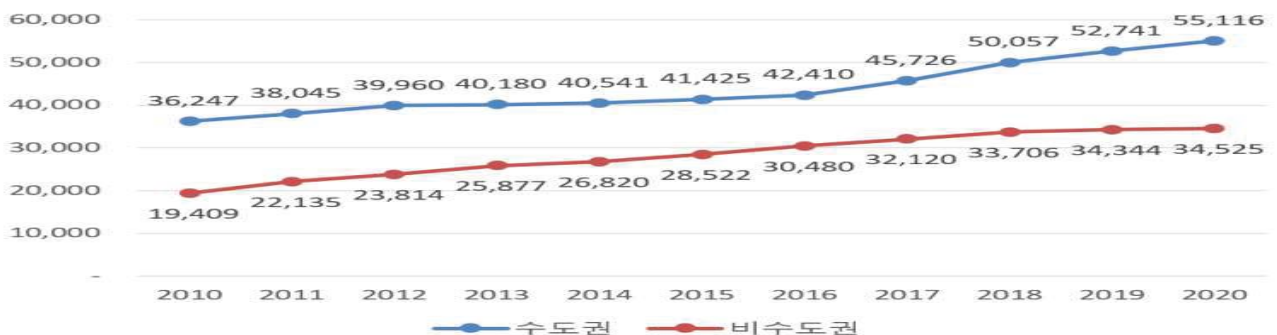
-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현상은 결국 부모의 소득 및 자산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자녀의 학업성취에도 영향
 - － 소득이 높은 5분위(월 소득 558만원) 자녀는 69%가 일반 대학에 진학, 1분위(월 소득 104만원) 자녀는 40%만 진학. 명문대학(서연고) 재학학생 50% 이상은 부모 소득이 5분위(뉴스핌, '24, 재인용)

□ 지역간 양극화 현상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총자산 변화 추이를 보면, 격차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 일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다시 확대되는 중

〔그림 III-7〕 수도권과 비수도권 가구당 총자산 추이

(단위: 만원)



자료: 하수정 외(2021). 지역불평등 현황과 개선방안. 협동보고서(총괄편). 국토연구원. 재인용.

- 지역별로 자산빈곤율을 살펴보면, 서울이 가장 낮았으며, 강원충북과 호남권과 제주 등의 자산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II-3〉 지역별 자산 빈곤율

(단위: %)

	전체	서울	수도권 (인천/경기)	부산/경남/ 울산	대구/경북	대전/충남/ 세종	강원/충북	광주/전남/ 전북/제주도
2011	25.9	20.3	26.9	17.7	33.9	24.7	31.4	35.5
2012	24.8	19.7	26.0	21.3	28.2	20.0	33.2	30.9
2013	25.4	22.2	26.0	23.6	26.0	20.0	30.3	31.9
2014	25.1	21.3	28.7	20.9	23.9	21.0	29.3	29.6
2015	26.0	20.7	29.3	22.7	24.4	21.4	30.0	33.4
2016	25.7	21.4	28.1	21.8	25.0	24.5	29.9	30.8
2017	26.3	20.8	25.8	24.0	27.7	26.1	34.3	34.3
2018	27.8	21.4	27.7	26.6	30.9	28.3	38.2	31.4
2019	28.4	21.0	28.0	28.0	33.7	27.5	35.9	34.1
2020	27.9	21.0	26.0	27.6	35.0	28.0	39.3	33.0
2021	28.9	21.4	27.7	27.3	34.1	27.3	43.4	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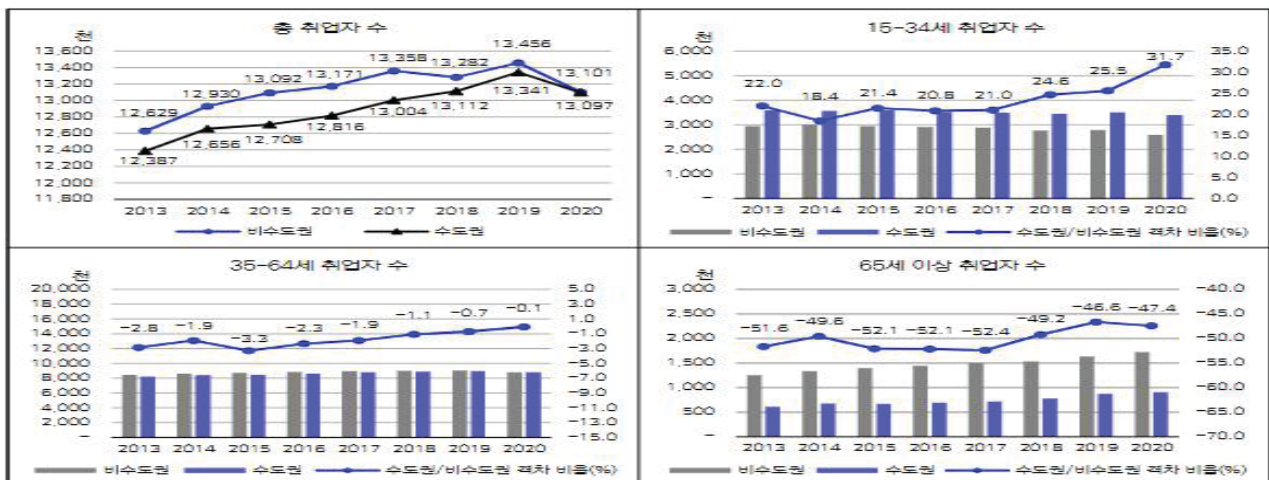
주: 자산은 순자산을 의미함

자료: 김태완, 2024. 부산이니셔티브 포럼 발표자료, 부산연구원, 재인용

- 인구와 기업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일자리 및 임금 등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차이를 보임
 - 2017년 이전에는 비수도권의 취업자수가 수도권에 비해 많았지만, 2018년 이후에는 지역 간 취업자 규모가 감소하다 2020년에는 거의 동일한 수준을 보임. 향후가 암울한 이유는 34세 이하의 취업자에서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임
 - 반면에 중장년, 특히 고령취업자에서는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많은 것으로 분석됨

〔그림 III-8〕 수도권과 비수도권 취업자수 변화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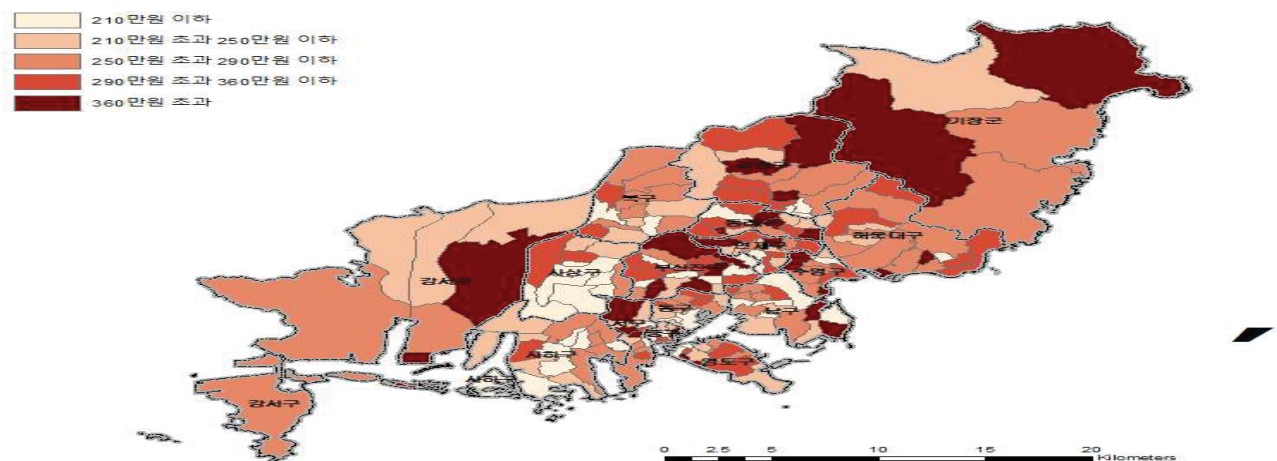


자료: 강동우(2023). 일자리분포의 지역격차, 월간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재인용

□ 지역격차에 대한 새로운 접근²⁾

- 전국단위의 분배비교가 아닌 내가 사는 지역내에서의 분배 격차에 대한 새로운 인식
- 소득격차는 주거 공간의 분리로 이어지고, 주거 공간의 분리는 다시 교육격차에 영향. 사례연구(부산시)를 통해 공간 관점에서 다중격차 현상을 진단
 - － 주거 측면에서 부산 읍면동들은 사회경제적 측면과 비교하여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겪고 있음(아파트비율, 노후주택 비율 등)
 - － 아파트 비율, 노후주택 비율, 평균 주택 공시가격으로 측정된 주거측면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가 사회경제적 측면에 비해서 심각. 학업 성취 측면에서 특히 읍면동 중학교 수준의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
 - － 소득격차, 주거격차, 교육격차 간 연계는 사람 중심의 사회적 접근뿐만 아니라, 장소 기반의 공간적 접근이 중요. 격차와 불평등 수준이 유사한 인접한 읍면동이 일정 규모의 군집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9] 부산시 읍면동 월평균 소득 5분위 지도



자료: 김태완 외, 2023. 한국사회격차진단과 대응전략.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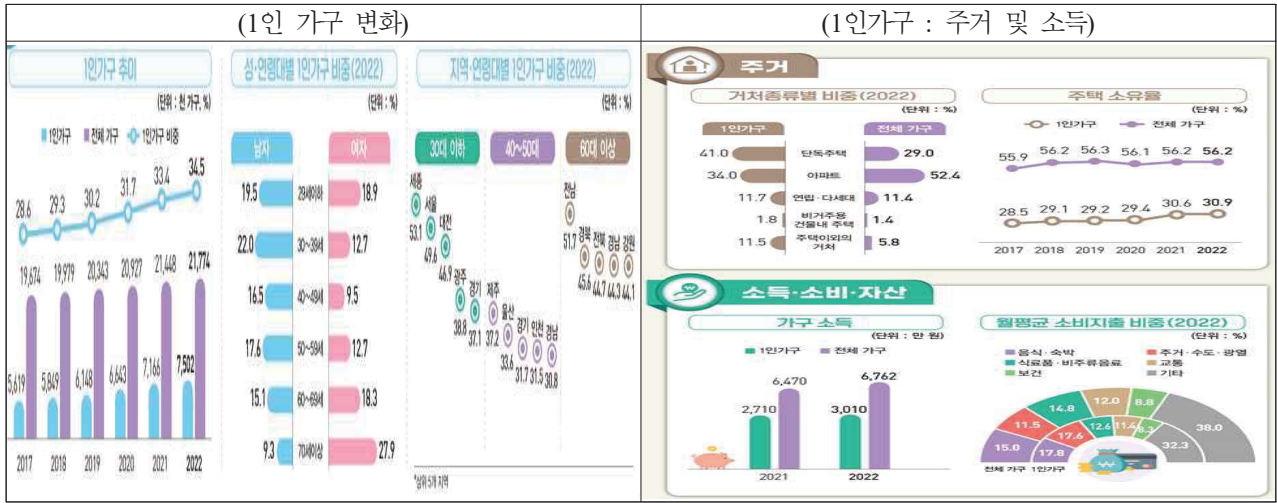
□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화되면서, 향후 가족구조 변화 특히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 주로 노인 세대에서 1인 가구 증가가 예상

- 1인 가구 연령별 비중을 보면 60대 16.0%(2040년), 70대 18.4%(2040) 등 고령 노인이 많은 비중을 점유할 것으로 예측

2) 김태완 외, 2023. 한국사회격차진단과 대응전략.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재인용

[그림 III-10] 장래 가구 추계

(단위: %)



자료 : 통계청. 2023 통계로 보는 1인가구. 보도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으로 1인 가구 빈곤율은 시장소득 중위 50% 기준으로 2020년 55.9%, 가처분소득기준으로 47.2% 수준이었음
- 전체 가구 빈곤율에 비해 1인 가구 빈곤율이 상당히 높았음. 여기에 더해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시장소득 중위 50%기준으로 80%대 후반을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약 70%대 초반의 수준을 보여줌
 - 1인 가구 빈곤율이 높은 속에서 노인 1인 가구의 빈곤상황은 더욱 열악한 상황임

<표 III-4> 1인 가구 및 노인 1인 가구 빈곤율 변화

(단위: %)

전체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중위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50%	중위60%	중위40%	중위 50%	중위 60%
2016	52.0	58.8	64.8	45.7	54.9	61.9	44.2	54.0	61.1
2017	51.7	58.5	63.2	45.0	53.7	59.9	42.9	52.1	58.6
2018	51.9	58.9	64.3	45.0	54.1	60.9	43.1	52.7	59.6
2019	53.1	59.6	64.7	44.2	53.9	61.0	41.7	51.8	59.3
2020	50.3	55.9	60.9	39.6	49.4	56.4	36.7	47.2	55.2
2021	46.9	52.3	57.4	37.6	46.2	53.8	34.4	44.5	52.4
65세 이상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중위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50%	중위60%	중위40%	중위 50%	중위 60%
	83.3	88.3	91.9	71.1	79.9	85.3	68.7	78.4	83.7
	82.3	87.4	91.1	70.1	78.8	83.5	67.5	76.7	81.7
	81.7	87.2	90.8	68.9	77.9	83.8	65.6	75.5	81.6
	81.6	87.1	90.0	66.8	77.1	82.9	62.6	73.9	80.7
	82.2	86.9	90.1	63.7	75.8	81.9	58.4	72.1	80.0
2021	83.0	87.2	90.2	64.3	75.1	81.9	57.9	71.6	79.5

주: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전가구에 농업, 임업 및 어업 포함됨.

자료: 김태완, 최준영. (2023). 2022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V.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 정책 대응방향

1. 시장에서의 양극화 극복방향

가. 지역양극화(=지역격차) 해소 방향

□ 새로운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

○ 과거의 양극화 및 격차에 대한 논의 핵심은 소득 및 자산으로 인한 양극화 문제이었음

- 한국의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중간계층이 증가하면서 소득에 대한 양극화 현상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자산으로 인한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게 대두

□ 자산양극화 현상은 지역양극화 혹은 지역격차와 연계됨

○ 실태분석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자산격차는 해소되기 보다는 여전히 진행중에 있음. 이외에 인구, 기업 등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해소되기 보다는 더욱 심화 중

- 인구의 약 50.7%, 1,000대 기업의 약 8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GRDP 역시 격차를 보임. 반면 일반기업수는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이 많은 상황

[그림 IV-1]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

(단위: %)



자료 : 김창길(2024).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농산어촌 뉴빌딩 추진전략. 농산어촌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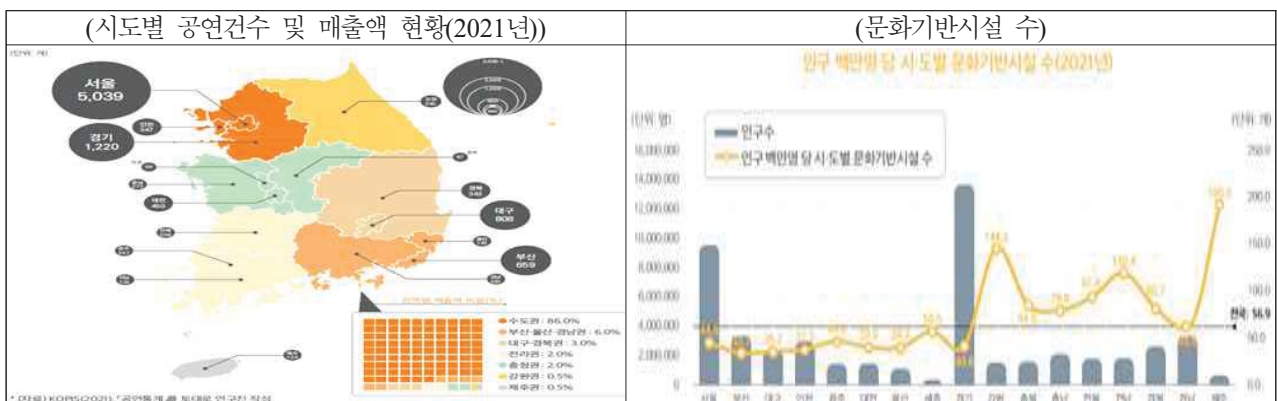
<표 IV-1>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주요 격차

항목	수도권	비수도권	항목	수도권	비수도권
면적(2021년)	12.1%	87.9%	1,000대 기업 수(2020년)	86.9%	13.1%
인구(2021년)	50.3%	49.7%	GRDP(2020년)	52.5%	47.5%
청년(20~39세)인구(2021년)	55.0%	45.0%	1인당 GRDP(2020년)	37.1백만원	34.1백만원
취업자 수(2021년)	50.5%	49.5%	신용카드 개인 사용액(2021년)	75.6%	24.4%
사업체 수(2019년)	47.0%	53.0%	주택매매가격(중위단위값)(2022년 6월)	6,460천원	2,142천원

자료 : 김현우 외(2022).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격차와 정책방향, 월간산업경제 286호. 산업연구원. 재인용

- 지역양극화 실태에서 본 것과 같이 수도권은 청장년층이 비수도권은 고령층의 취업자 규모가 많음. 이는 지역 간 산업구조와 여기에 기인하는 기업 및 임금 등에 의한 차이로 볼 수 있음
- 수도권의 경우 첨단 산업, 금융산업 등이 주요하게 분포하고 있지만, 비수도권은 제조업이 중심이 되어 발전하고 있음(강동우, 2023). 또한 대기업 집단이 주로 수도권에 분포함으로써 청장년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음
 - 인구 및 산업구조로 인한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부합되는 중견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것과 동시에 중견,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지자체 차원의 복지정책이 지원되어야 함
 - 산업구조, 기업규모 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격차는 민간기업이 해소하기는 어려움. 지역에서는 지역기업, 특화기업 등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규제해소, 조세부담 경감 등) 제도가 적극적으로 제안될 필요가 있음
 - 중견, 중소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위해 기업에의 접근성 제고,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돌봄 및 필수지출 등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 노력이 결합 될 필요가 있음
 - 최근 지자체 군 중에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증평군을 들 수 있음. 증평군의 경우 자녀를 둔 가정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녀 양육, 보육 등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 반응이 높은 상황(이재영, 2024)
- 지역간 발생하는 문화적 격차 해소 역시 필요
- 문화적 측면에서도 수도권지역과 비수도권 지역간에 격차가 발생중. 이때의 차이는 인프라로 인한 것도 있지만, 주요하게는 소프트웨어 측면인 공연건수 등에 의한 차이임

[그림 IV-2] 지역간 문화 격차



자료 : 하수정 외(2024). 지역간 삶의 질 격차.균형발전 모니터링&이슈브리프, 국토연구원

- 인프라 측면에서 비수도권의 문화기반시설도 많이 확충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매출은 수도권과 광역도시가 중심이 되고 있음. 이와 같은 차이가 지역주민의 문화적 결핍을 초래

- 지역에서의 문화적 결핍, 배제는 일자리를 찾아 지역으로 내려온 청장년층이 다시 도시로 이동하게 되는 양상을 초래. 지자체만이 아닌 문화예술계 등과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방향

□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소

-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
 - 노동시장 문제는 실태 분석에서 본것과 같이 현재적 문제이면서, 현재 및 미래에 발생할 디지털전환(Digital transition) 속에서도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할 것임
 - 무엇보다 AI 등의 급격한 발전은 정보(Information)와 데이터(Data)에 대한 집중현상과 차이(=숙련도)를 유발하고 가진 자와 못가진자 간의 양극화 및 격차를 심화시킬 것으로 보임
- 성별, 연령별, 기업규모별, 학력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 노동시장 차별 현상에 대한 시정 필요. 비정규직, 간접고용 등 불안정 고용 형태 남발 방지 등
 - 우선 검토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은 2017년 10월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정부에 2009년에 이어 성별·연령·인종·장애·종교·성적 지향·학력 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바가 있음³⁾
 - 차별금지법이외에도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등에서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 노동시장 차별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 노동취약계층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선행 및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노동시장 차별요소 해소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확립
 -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제8조(임금))”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 남녀 간의 차이는 지속적으로 발생 중
 - 남녀 간 이외에도 직무, 학력, 숙련 등은 물론이고 2000년대 들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 사회적으로 임금으로 인한 차이는 물론이고 근무환경 및 작업조건, 안전, 복지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3) 한국에서는 성소수자와 관련된 조항으로 인해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계에서 반발이 거센 상황. 따라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 및 타협 등이 조속히 시행될 필요가 있음

○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지출지원 정책 지원 등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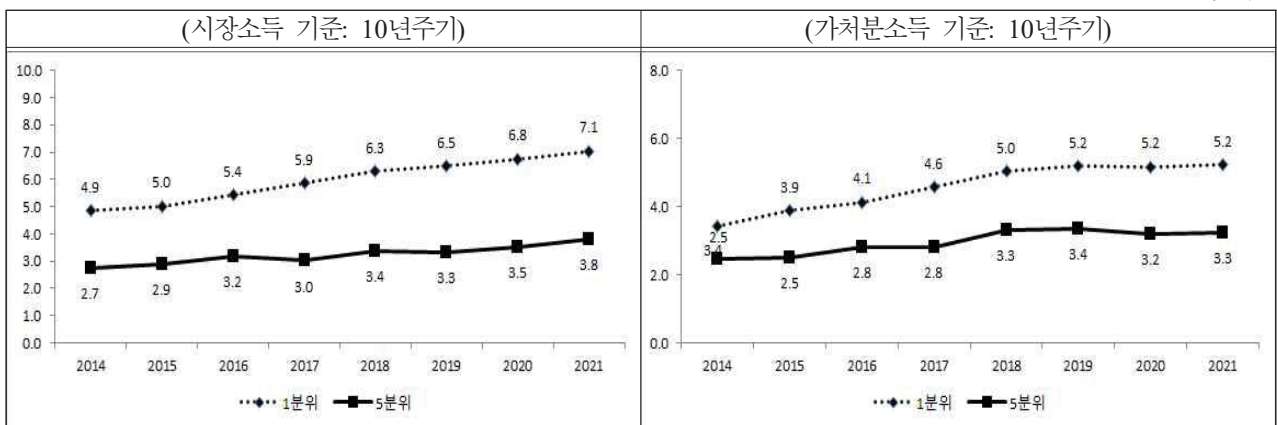
- 청년실업이 높아지면서, 구직청년과 구인 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칭에 대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청년의 경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대기업, 공공기관 등을 선호하고 있지만 이들 일자리는 한정됨
 - 구직 단계에서 청년층이 위와 같은 기업을 선택하는 것은 임금 및 사내복지 그리고 근무환경 등에서 차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
 - 청년층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미스매칭을 줄이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지원 측면에서 안정적이고 강건한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이들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기업이 임금을 통해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하며 정부의 적극적 지출 경감 정책(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통한 간접 지원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중견, 중소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주거, 자녀 양육 및 교육, 필수지출(식비, 교통비, 공공요금 등) 등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면서 기업 간 발생하는 임금 및 복지격차를 사회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음

□ 교육개혁을 통한 교육 격차 해소

- 과거와 다르게 한국 사회에서 계층 사다리, ‘개천에서 용’이라는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 현상이 감소하고 있음
 - 시장이 지나며 소득분위가 고착화되는 비율이 증가 중. 교육측면에서 발생하는 양극화 및 격차 현상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

[그림 IV-3] 사회이동성 평가 : 동일비율유지 비율

(단위: %)



자료 : 김태완, 이주미 외(2024). 사회이동성 현황분석 : 패널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인용 및 추가분석

○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입시에서의 지원방안 마련

- － 공교육 강화, 창의적 교육 등을 통한 과도한 사교육 부담 경감 방안 마련
- － 취약계층 대상 균형선발, 지역 및 개별 특성 등을 고려한 선발체계
- 특정 직업군 쏠림 현상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
 - －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 대기업 등 청년층 쏠림 현상에 대한 대응필요
 - － 기업규모, 종사상 지위 등에 따른 임금, 복지 등 차별적 조건 개선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

□ 시장에서의 노동취약계층 대응 방안 마련

-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영세자영업자,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노동자 등 노동취약계층의 삶의 불안정성 증가
- 코로나시기 정부재정지출 증가로 인해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크게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후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
 - － 영세자영업자 등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여기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감소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 직접적 영향하에 있음
 - － 위기극복을 위한 채무조정, 위기 소상공인 대상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

2. 사회정책을 통한 양극화 극복방향

가. 기본 방향

□ 세대별, 위험유형별 사회안전망 플랜 : 현재 및 미래적 위험으로부터 탈출

- 빈곤층 대응⁴⁾
 - － 빈곤위험 Map 구축을 통한 단계별 다층적 소득보장제도 구축 : 빈곤층, 차상위 및 근로빈곤, 신취약계층 등
 - － 가구 및 개인 특성을 고려한 사회서비스 연계 방안 마련 : 가구내 취약가구원 대상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가구내 근로능력자 대상 고용, 주거 등 사회서비스 연계 마련
- 취약계층 대응 : 돌봄체계구축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 － 소득보장을 넘어 서비스 보장 강화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사회복지서비스 지원방안 마련
 - － 전통적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 강화 ⇒ 장애인, 노인, 취약여성 등 대응 강화(예, 노인빈곤 감소를 위한 안전망구축 등)
 - － 새로운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 강화 ⇒ 1인가구, 소수자, 경계선 장애, 고립은둔층,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안전망 구축

4) 빈곤층 대응은 발제자의 다른 자료에서 여러 차례 발표한 바가 있어, 여기서는 제외하고자 하며, 기존 발표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 사회안전망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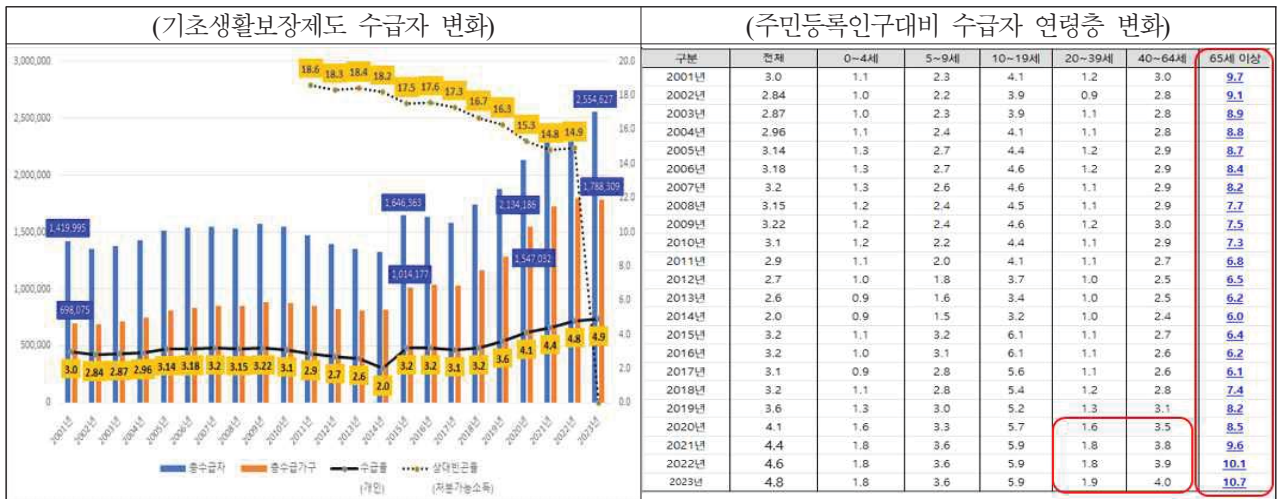
□ 근로빈곤층 양극화 해소 방안

○ 빈곤층 및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호 강화 가운데 소외되는 근로빈곤층 대응 강화 필요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전후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근로장려세제 수급요건 완화, 기초연금 급여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등 빈곤 및 취약계층 지원제도가 강화됨
- 기초생활보장제도 제도 완화로 2023년 기준 수급자는 약 255만명으로 증가중, 이중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의 수급 비율은 10%(전체수급자 중 41.3%)를 넘어섬. 반면 경제위기, 감염병 위기 등으로 일을 해도 생활고를 경험하는 근로연령대의 수급비율은 2-4% 내외로 65세 이상과 차이

[그림 IV-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층 변화

(단위: 명, %)



자료 : 보건복지부. (202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현황. 저자 수정

○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근로장려세제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운영중에 있음. 하지만 동 제도 역시 각각의 제도가 가진 한계로 인해 근로빈곤층을 위한 안정적 소득보장제도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함

- 근로장려세제는 국세청이 정한 소득 및 자산기준 이하일 경우 조세를 통해 소득을 환급받는 제도임. 2019년 이후 수급규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급 금액이 낮고, 연간 1회(근로자는 2회) 지급에 불과하여, 실질적 소득보장제도 역할 보다는 일시적 위기 혹은 특정시점의 보너스 역할 밖에 수행하고 있지 못함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를 천명하며 2021년 도입되었으며, 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연계하는 제도로 운영됨
- 국민취업지원제도 역시 수급자에 대한 수당 수준이 낮고(월 50만원, 6개월),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이 배제되어, 취업지원서비스를 받는 동안에 생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음

5)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부양가족에 대해 월 10만원, 최대 4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지만, 그 대상이 18세 미만, 65세 이상이거나 중증장애를 가진

○ 근로빈곤층 대응 : 일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 : 생계급여 이상의 사각지대 빈곤층 지원 방안 마련(소득+고용안전망 연계)

-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 혹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등이 운영중에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써 디딤돌 소득(서울시), 기본 혹은 기회소득(경기도), 각종 출산 및 직역수당(청년, 농어민 수당 등) 등을 운영하고 있음
- 각각의 제도가 복잡하고 연계 또한 쉽지 않은 구조임. 무엇보다 최근의 사회적 위험의 양상은 소득 즉 현금만을 지원해서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고용, 주거 등 복합적 서비스와의 연계가 필요한 상황. 특히 근로가능한 빈곤 및 취약계층에게는 소득보장과 고용보장이 함께 제공될 수 있는 구조를 제 공함으로써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개인과 가구단위 보장 : 개인은 고용서비스를 가구는 사회서비스(주거, 의료, 교육 등)보장 강화

□ 청년, 신중년(특히 베이비부머 세대) 대응 마련

○ 청년, 장년 대상 사회 안전망 구축

－ 현재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근로장려세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실질적 실업부조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로의 전환 모색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로 위기조건에 부합시 생계, 주거, 의료 급여 등을 지원 중. 이중 생계와 주거를 우선 하여 통합방안 모색 ⇒ “긴급”이라는 내재적 특성을 넘어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취업조건(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에 부합시 수급자격이 부여 ⇒ 취업조건에 대한 완화내지 폐지와 취업수당 성격을 생계급여 수준(급여기간 등)으로 조정하고 부가급여 및 서비스와 연계를 추가함으로써 실질적 실업부조 역할로 조정
- 근로장려세제는 가구유형별 소득 및 재산기준에 부합시 소득 수준에 따라 점증, 평탄, 점감구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음. 목적은 소득보장과 근로유인 확보 ⇒ 현재 근로유인보다는 소득보장의 특성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다른 소득보장제도와와의 통합을 통해 실질적 소득보장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정 필요
- 각 제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대상, 급여조건, 전달체계 등)를 통해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는 청년, 중장년층과 중간계층으로 갑작스러운 위기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대상을 중심으로 한 사회안전망 구축

－ 자녀 양육 및 교육, 청장년 대상 일자리 연계(고용서비스(소득+직업연계) 강화)

경우에만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어, 과거 생활보호제도에서 운영하던 인구학적 기준을 다시 연상하게 하고 있음.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실업부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가족에 대한 부가급여 역시 확대될 필요가 있음

- 현대 사회가 경험하는 위기는 단순 소득 위기를 넘어 실생활(감염병, 주거, 교육 등)과 연계되어 복합적으로 발생중(최영준, 2011)
- 근로빈곤층은 물론 중간계층에게 공히 필요한 자녀 양육 및 교육, 부모돌봄 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서비스연계 방안 필요 ⇒ 사회전반적인 돌봄정책에 대한 강화 방안 마련(후술)
- 현재는 소득보장은 보건복지부, 고용서비스는 고용노동부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중. 현재적 위기는 소득과 고용안전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지만 서로 분절적으로 운영중. 이에 대한 연계 및 협력 방안 모색 필요 ⇒ '24년 6월 금융위원회에서 금융-복지-고용 연계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음. 점진적으로 확대 개편 검토

○ 신중년대응 강화 : 조기 은퇴, 미래 노후준비 미비층대상

- 1차 베이비부머세대(1955~63년생) 약 705만명, 2차 베이비부머세대(1964~74년생) 약 954만명이 이미 고령세대에 진입하거나 진입할 예정
- 이들 세대는 기존 고령세대에 비해 소득, 자산, 노동시장 숙련도 등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조기퇴직(주된 일자리 은퇴 49세), 60세 정년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조기에 벗어나고 있지만, 노후 소득보장 미비로 소득 단절구간(일명 크레바스)의 위기를 경험중
- 일할 수 있는 세대가 많다는 점,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되는 것을 고려하여 현재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년연장과 관련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계속해서 노동시장에 남아 소득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임금 및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연금가입기간 연계 등을 사회적 타협을 통해 마련
- 지역일자리 사업 확충(지역 중소기업 연계 강화 및 인센티브지원 등), 노후대비 재무 관리 등
- 중고령층, 베이비 부머 세대 중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운 대상에게는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해 부족한 소득에 대한 보충과 일정수준의 사회적 기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특성 상 단기, 단순 작업 중심임으로 고용서비스와 연계되어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하여 기업내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시장형 일자리 사업 등을 발굴 및 지원
- 안정적 소득 및 재산 관리를 위해 금융서비스와 연계된 노후대비 재무관리 서비스를 제공 ⇒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과의 연계 모색

다. 돌봄보장 사각지대 해소 : 돌봄안전망 강화

□ 취약계층 지출부담 경감

- 소득 저분위가구는 상시적으로 적자 생활 유지 중.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보면, 소득 고분위 가구에 비해 소득 저분위가구는 소득 대비 지출이 많은 적자가구를 유지 중
- 결국 부족한 소득을 채우기 위해 저소득 가구는 금융기관에 채무를 지거나, 사채 등 사금융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

- 자금용으로 인한 피해는 이미 언론, 연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함

〈표 IV-1〉 가계동향조사 기준 소득분위별 소득 및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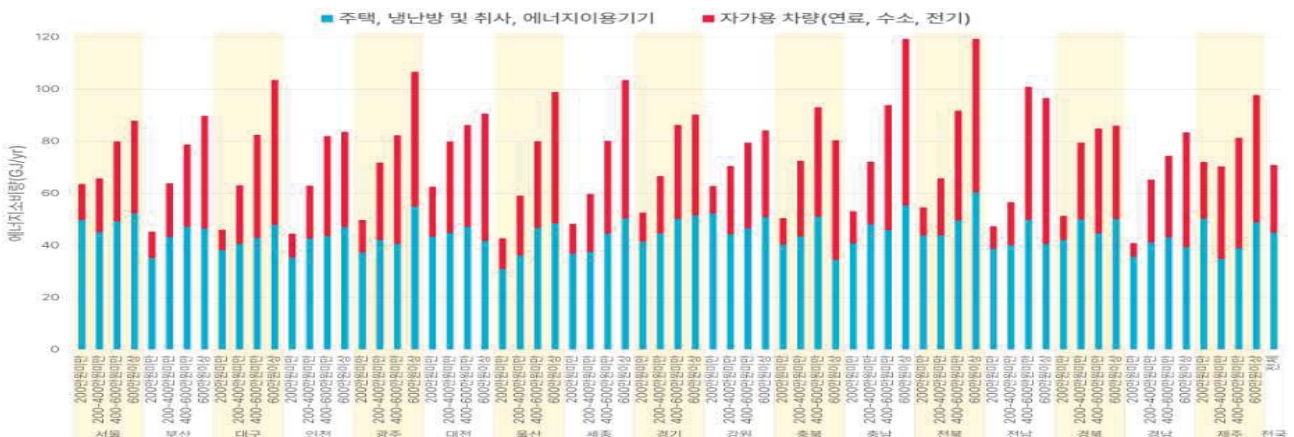
(단위: 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평균	가계지출	333	324	337	359	381
	소비지출	246	240	249	264	279
	소득	426	436	451	484	498
	경상소득	419	427	443	475	489
1분위	가계지출	120	122	133	141	147
	소비지출	102	106	115	122	127
	소득	90	94	102	111	112
	경상소득	89	94	101	110	111
2분위	가계지출	207	200	210	227	230
	소비지출	168	164	170	182	186
	소득	226	233	246	265	269
	경상소득	224	232	244	264	267
3분위	가계지출	304	283	295	319	329
	소비지출	235	220	228	243	252
	소득	361	363	379	405	415
	경상소득	358	360	377	402	411
4분위	가계지출	405	392	405	434	469
	소비지출	300	289	303	321	346
	소득	525	534	549	588	610
	경상소득	519	529	544	582	603
5분위	가계지출	629	622	644	675	729
	소비지출	422	421	431	452	486
	소득	926	952	978	1,050	1,082
	경상소득	904	921	947	1,017	1,050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가계동향조사: 소득5분위별, 재인용 및 분석

- 저분위가구 지출 경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저분위가구는 물론 중간계층의 소비부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 지출경감 방안은 두가지 방향에서 검토될 수 있음. 첫째는 저분위가구, 중간계층 가구에 대한 돌봄부담 경감(후술), 둘째는 필수지출에 대한 소득수준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통해 필수지출에 소요되는 부담을 완화하는 것임
- 소득수준별 가구당 에너지 소비량을 보면 냉난방, 취사는 물론 자동차 등에서 고소득층의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IV-5〕 소득수준별 가구당에너지 소비량(2019년 기준)



자료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23). 17개 시도의 소득수준별 가구당 에너지소비량. ICCA카드뉴스, 재인용

- 에너지소비량이 많은 고소득층에 대한 추가적인 에너지 사용에 따른 비용을 추가하고, 저분위가구의 에너지 가격을 낮춤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저분위 및 중간계층에 대한 에너지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 에너지이외에도 생활에 있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주거비, 교통 및 통신비, 금융이용 비용 등에 대한 저분위 가구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적 방안마련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합의가 필요
- 사회적 합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사유는 필수지출을 공급하는 주요 기관이 공사, 공공기관 등으로 이들 기관이 공공복리를 우선하느냐 시장이익 창출을 우선하느냐에 따라 공공요금 등이 영향을 받게 됨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 ⇒ 그동안 한국 사회는 정권의 성격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을 겪고 있음으로 필수지출 요금에 대한 적용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

□ 통합돌봄 강화

○ 소득수준별 자녀양육에 들어가는 비용 격차 해소

- 가족과 출산조사 결과 자녀1인당 월 지출 비용은 72.1 만 원으로 추정. 가구소득 수준별로 차이가 있어 소득 60%미만은 46.1만 원, 160% 이상은 108.3만 원으로 격차가 62.2만원(2.35배 격차)차이가 발생 중

〈표 IV-2〉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비용

(단위: 만원, 명)

구분	자녀1인당 월 지출 비용	표준편차	사례수
전체	72.1	49.0	4,055
지역			
동부	75.1	51.1	3,314
읍면부	58.7	34.7	741
성별			
남자	60.5	46.4	174
여자	72.6	49.0	3,881
연령			
19-24세	36.9	21.0	35
25-29세	57.0	37.2	189
30-34세	57.9	36.2	510
35-39세	65.1	39.0	951
40-44세	75.3	42.8	1,142
45-49세	83.9	62.7	1,227
교육			
고졸이하	60.7	35.8	1,320
대졸	75.7	45.8	2,509
대학원졸	99.5	103.1	226
취업여부			
취업	76.0	52.5	2,254
비취업	67.3	43.7	1,801
가구소득			
60% 미만	46.1	27.2	451
60-80% 미만	52.9	26.0	682
80-100% 미만	65.6	35.1	749
100-120% 미만	71.8	39.0	730
120-140% 미만	77.4	38.9	443
140-160% 미만	82.8	41.0	333
160% 이상	108.3	79.0	667
자녀 수			
1명	75.9	57.1	1,470
2명	72.0	42.8	2,126
3명	63.2	47.1	406
4명	43.4	22.8	46
5명	31.0	13.2	7

자료 : 박종서외.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인용

- 소득수준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양육비용은 결국 저분위, 중간계층의 부담을 가중함으로써 소득수준별로 차등적인 출산율을 보여주기도 함
-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2022)에 따르면, 소득 하위층의 100가구당 출산가구 수는 2010년 2.72에서 2019년 1.34로 51.0% 감소. 소득 중위층은 같은 기간동안 6.50에서 3.56으로 45.3%, 소득 상위층은 7.63에서 5.78로 24.2%로 감소

-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에서 아이를 낳은 가구가 100가구 있다고 전제시,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11.2%에서 2019년 8.5%로 감소. 고소득층 가구 비율은 46.5%에서 54.5%로 8%포인트 증가. 즉 가난한 집일수록 아이를 낳지 못하는 현상이 심화

[그림 IV-6] 소득분위별 출산율 변화

(단위: 100가구당 출산가구수)



자료 : 매일경제. 소득 낮으니 출산도 꺼려...9년간 출산율 하락폭 가장 커, 2022.05.03. 재인용

— 자녀 양육 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소득이 낮은 가구의 아동이 안정적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마련해야 함 ⇒ 폭력, 지출 등으로 부터 자유로운 가정

○ 자녀돌봄 부담 경감과 더불어 늘어나는 고령인구에 대한 대응 역시 필요. 최근 국회와 정부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4. 2.29)을 제정하여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 전국적으로 시행예정

— 이는 노인이 생활하던 곳(Aging in Place, AIP)에서 편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음

— 현재 시범사업을 통해 지자체 특성과 인프라를 고려한 사업 개발을 통해 민관협력 서비스 모델체계 구현을 준비하고 있음. 따라서 민간, 중앙 및 지방정부간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이 요구됨

다. 양극화 해소 사회정책 추진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 필요

□ 조세 및 국민부담률 증대에 따른 자원마련의 한계

○ 양극화 해소를 위해 우선 고려될 수 있는 것은 조세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조세의 원칙인 소득있는 곳에 과세를 강화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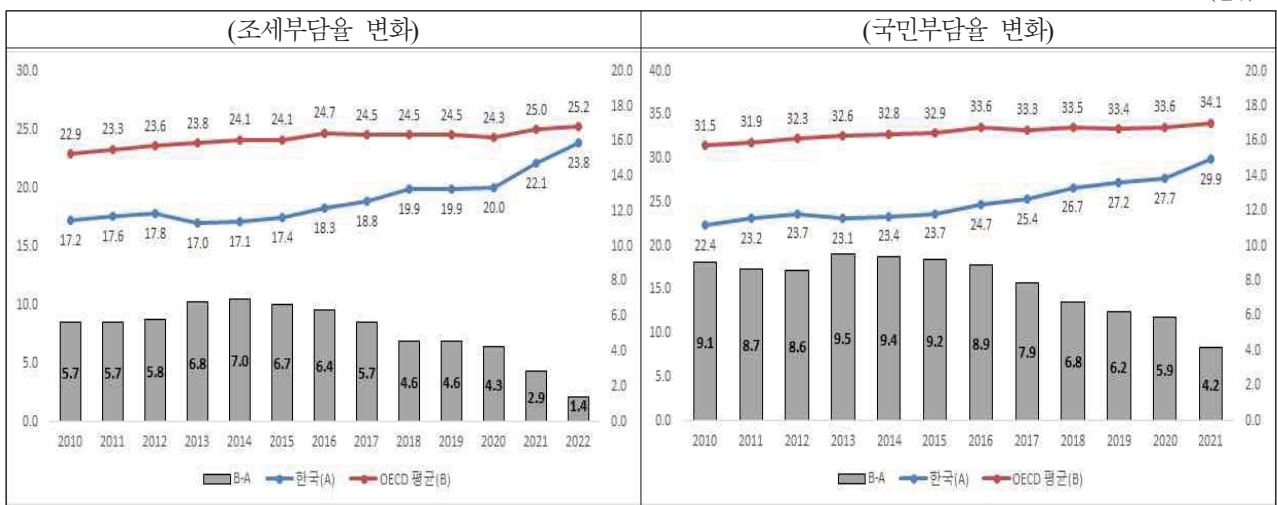
— 하지만 조세와 관련해서는 오랜 기간 사회적 갈등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바가 있으며, 현재의 사회구조상 자원마련 역시 쉽지 않은 상황

○ 한국의 조세 및 국민부담률 추이를 보면, 과거와 다르게 OECD국가의 평균과 이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

- 국민부담율(=(총조세+사회보장기여금)/명목GDP)은 2010년 9.1%p차이에서 2022년에는 4.2%p로 절반 이상 감소함. 현재 연금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가 조정될 것이 예상되고,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보험료, 실업자 및 고용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의 보험료 등이 조정될 것으로 예측되어, 향후 국민부담율은 더 높아지고, OECD국가와의 차이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측
- 조세 및 국민부담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명목 GDP가 크게 증가하면 되지만,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계속 감소되는 것을 고려시 조기에 이를 해소하기는 어려운 상황

[그림 IV-7] 조세 및 국민부담률 추이

(단위: %)



주: 1) OECD 평균은 38개국 기준임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24). 대한민국 조세.

□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새로운 조세 방안 마련 필요

- 양극화 극복을 위해서는 재원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지만, 현재 정부는 계속해서 재정적자를 경험하고 있어서, 양극화 극복을 위한 추가정책 마련이 쉽지 않음
- 양극화를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타협을 통해 새로운 세원에 대한 불굴이 필요한 상황

참고문헌

- 강동우(2023). 일자리분포의 지역격차, 월간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 국회예산정책처. (2024). 대한민국 조세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23). 17개 시도의 소득수준별 가구당 에너지소비량. ICCA카드뉴스.
- 김왕배(2009), 양극화와 담론의 정치, 언론과 사회 17(3), 78-115.
- 김창길(2024).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농산어촌 뉴빌딩 추진전략. 농산어촌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김태완, 이주미 외(2022). 한국사회양극화 진단과 사회정책 대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완, 이주미, 최준영(2023), 도농 1인가구 빈곤특성 비교, 보건복지포럼323.
- 김태완 외(2023). 한국사회격차 진단과 대응전략.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태완, 최준영(2023), 2022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완(2024). 부산이니셔티브 포럼 발표자료. 부산연구원.
- 김태완, 이주미 외(2024). 사회이동성 현황분석 : 패널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현우 외(2022).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격차와 정책방향, 월간산업경제 286호. 산업연구원
- 남인숙(2011). 한국의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교육 격차. 현상과인식, 35(3), 15-38.
- 뉴스핌. 사교육 양극화 더 심해졌다---교육이 계층장벽. 2024.03.15.
- 매일경제. 소득 낮으니 출산도 꺼려...9년간 출산율 하락폭 가장 커, 2022.05.03
- 박종서외(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202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현황
- 신동균, 전병유(2005). 소득 분포의 양극화 추이: 1997-2003. 노동경제논집, 28(3). 한국노동경제학회. 77-109
- 신동균(2006). 소득분포의 양극화: 개념과 실태. 노동리뷰, 63-80.
- 유경준(2007). 소득 불평등도와 양극화: 오해와 실태. KDI.
- 이재영(2024), 온 마을이 함께하는 행복 ON 돌봄사업, 농어촌 활력을 ON 하다. 농산어촌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임완섭(2023). 노동양극화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316호.
- 장미혜, 민현주, 이택면, 염유식(2009). 경제·사회 양극화의 현황과 대응 방안(3차년도):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사회 자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영준, (2011), 위험 관리자로서의 복지국가-사회적 위험에 대한 이론적 이해, 정부학연구 17(2), 31~57
- 하수정 외(2021). 지역불평등 현황과 개선방안. 협동보고서(총괄편). 국토연구원
- 통계청. 2023 통계로 보는 1인가구. 보도자료
- 통계청.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2024. 10.22)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소득분배지수-가계금융복지조사.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주택소유통계. ‘주택자산가액기준10분위별주택소유가구 기본현황’.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가계동향조사: 소득5분위별

토 론 문

강 성 호 선임연구위원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

한국사회 양극화 대응 방향

I. 발표 요지

- ☐ 동 발표 자료는 우리나라 전반의 양극화 현상과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① 양극화 대응 필요성 배경
 - ② 양극화 개념과 원인
 - ③ 우리나라 양극화 현상
 - ④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응 방향의 순서로 설명하였음
- ☐ 본 발표는 우리나라의 양극화를 시장과 사회정책을 통해 극복하자는 주장으로 하드웨어드, 소프트웨어를 관통하는 양극화 정책을 제시
 - 시장내 문제 극복 : 수도권 인구 집중, 지역간 문화격차 등 지역양극화, 성/연령/취업형태 등 노동시장 양극화(교육 개혁)
 - 사회정책 통한 극복 방향 : 빈곤/취약계층 대응 사회안전망 강화, 돌봄사각지대 해소 등 돌봄안전망 강화, 재원확보 필요(새로운 조세 재원 발굴)

II. 전반적 의견

1. 양극화 정도의 추이, 국제 비교를 통한 진단과 정책방안 마련 필요
 - ☐ 양극화는 보는 시각에 따라 문제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
 - 먼저 우리나라 양극화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이는 불평등과 구분되는 현상인가?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가?
 - 국제수준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와 유사한 생활수준의 국가보다 심각한 수준인가?
 - ☐ 양극화를 완화 혹은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은 무엇인가?
 - 양극화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을 경우 기존의 양극화 대응책이 대안이 될 수 있는가?
 - 혹은 일반적인 불평등 완화 정책이 이러한 양극화 대응책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
 -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양극화를 해소할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가?
 - 주요 선진국의 양극화 대응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
2. 양극화는 사회 상황, 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
 - ☐ 일반적으로 산업화 전 사회는 대부분이 가난하여 극빈의 일극 체계였을 것이므로 양극화 문제가 고려되지는 않았을 것임
 - 그러나, 아무도 이런 극빈의 평등사회는 원치 않을 것임

- 산업화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초래하였고, 복지정책 등으로 보완해 왔음
 - 산업화를 통해 사회적, 개인적 부의 창출이 생겼으나 반대 급부로 불평등, 양극화의 사회적 부작용이 초래됨
 -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최소한의 복지정책을 추진할 필요는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삶의 질의 개선과 함께 양극화도 함께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남
- 불평등과 양극화의 허용범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결국 성장과 평등의 원론적 문제를 고민하게 함
 - 다만, 두 관계는 단순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대립과 타협이라는 정반합의 철학적 퍼즐을 푸는 것이라고 하겠음

3. 노동시장, 부동산시장, 빈곤 등에 대한 양극화 해소 필요

- 노동시장 양극화도 정규직/비정규직, 성별, 업종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함
 - 정규직/비정규직의 소득격차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 노동유연성을 강조하는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동일 노동 시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하거나 고용불안정성을 고려하여 추가적 임금을 제공할 필요!
 - 우리나라의 기업문화가 이를 수용할지, 우리 사회의 인식변화가 필수적 사항으로 보임
 - 성별 임금 격차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법이 필요함
 - 특히, 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여성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불안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기업 등에서 출산 여성에 대한 일자리 복귀 등에 대해서는 보다 우선적으로 조치할 필요
 - 정년연장 등을 통해 생산가능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특히 전문인력이 시장에서 사장되는 비효율을 막을 필요가 있음 : 임금피크제와 연계한 정년연장 논의 필요
- 부동산시장은 지역간 양극화와 관련될 수 있으므로
 - 수도권/지방 간 사회, 문화, 교육, 경제적 격차를 줄여가는 정책이 필요
 - 특히, 교육정책이 무엇보다 중요
 -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억제
 - 지방 명문대 부활 정책 추진
 - 지방 특유의 문화 개발 등을 통한 관광지, 산업단지 조성 등도 필요
 - 지방 혁신 도시이전 후 해당 지역과 이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한 문제점 검토 및 대응방안 마련할 필요
- 빈곤문제는 소득외 자산의 유동화를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
 - 보유 주택 및 부동산에 대한 유동화 강화를 통해 노후생활 개선 : 주택, 농지연금 등 활성화
 - 퇴직 전 세대에 대한 노후준비 장려정책 추진 : 정년연장, 퇴직 후 노후준비 교육 등

4. 추가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 새로운 조세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면서 수용성이 높은 제도를 찾아야!
 - 단순히 부가세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치재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고려할 만함
 - 채권발행은 후세대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유보적임

토 론 문

최 균 교수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정책적 접근

1. 개 관

-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은 1970, 80년대의 복지제도 도입 및 정착기, 1990년대 말 경제위기 이후 제도 성장기, 2000년대 들어서 제도 확대기의 단계에 진입함
- 지난 50여 년 동안 국가의 지속적인 복지 증진 노력에 따라 복지체계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절대빈곤의 해소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제도 간 불균형과 지역 격차는 여전히 존재함
 - 특히, 복지제도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복지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이의 해소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 ‘복지정치’가 아닌 ‘복지공학’의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해야 합리적인 해결책의 개발이 가능할 것임

2. ‘양극화’ 개념에 대한 논의

-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및 자산의 확대에 의한 ‘격차의 확대’와 제도 내 분배기능의 미흡으로 인한 ‘불공정’ 간의 개념적 구분이 필요함
 - ‘격차의 확대’는 경제규모의 확대와 소득 증가에 따른 현상임
 - ‘불공정’은 사회 내 문화, 제도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부조리한 현상으로 파악
 - 따라서 ‘양극화’ 개념은 불명확한 정의에 기초한 다소 선정적 특성
- 시장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 이전지출을 통한 처분가능소득의 상대빈곤율이 감소하여 중간계층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그동안의 공공 복지지출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임
- 향후 공공 이전지출을 통한 상대빈곤율 감소는 국가의 재정건전성 문제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사회정책 외에 경제정책 등 각종 다양한 분야 정책의 개선도 함께 진행해야 함

3. 사회정책의 목표는 무엇인가?

- 사회정책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절대빈곤의 시기에는 ‘최저생활의 보장’

이 주요한 목표로서 기능했으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한 상대빈곤의 시기에는 ‘평등(equality)’이 주요한 목표로 제시됨

- ☐ 여기에서의 ‘평등’은 ‘기회의 평등’과 ‘조건의 평등’ 개념을 포괄하고 있으며, 결과의 평등을 의미하지는 않음.
- ☐ 현재 우리나라 사회정책의 목표는 무엇인가?
 - 최저생활보장: 절대빈곤 개념에서의 육체적 효율성(physical efficiency)의 유지를 의미하는가?
 - 평등: 어떤 평등인가?
 - 양극화 해소: 어느 수준 이상의 소득분배 상태에서 가능한가?
 - 자립(자활): 복지제도 성과 평가에서 자립률은 어느 수준인가?
 - 참여? 능동? 창조? 포용?: 성과는 어떠한가?

4.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정책의 과제

- ☐ 차별적 제도의 개선
 - 공정한 기회 제공: ‘조건의 평등’ 확대, 차별적 요소 제거, 선택의 기회 확대
 -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 ‘공정임금’ 개념 도입
- ☐ 기회의 확대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강화
 - 일하려는 시민(청년, 노인 등)에게 일자리 제공
 - 실천(행동)하는 시민에게 지원 강화
- ☐ ‘일하는 복지’ 확대
 - 근로연계복지(welfare to work) 강화
 - 복지의존성과 같은 도덕적 해이 방지책 마련
 - ‘자립(자활)’ 가치 확립
-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
 - 사회서비스 확대로 생활상의 어려움 완화 또는 해소
 - 무상이 아닌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 제공
- ☐ 기타 정책의 개혁 과제
 - 노동시장정책: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확립
 - 조세정책: 지대(rent) 구조 개혁
 - 지역정책: 지역격차 해소 위한 광역체계화, 분권화 강화

토 론 문

정 용 제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한국사회의 취약계층 사회보장제도 개선방향

한국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제도는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되, 생계·주거·일자리 등 여러 분야의 빈곤을 세밀히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초생활보장, 통합돌봄, 노숙인 복지제도 등 다양한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I. 법령 및 행정규칙 상 다양한 취약계층의 개념

1.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취약계층”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동 시행령에서 제시하는 취약계층의 개념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으로서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등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6. 7.>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업 계층으로 인정한 사람[전문개정 2010. 12. 9.]

2.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취업취약계층”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제시하는 취업취약계층의 개념은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임

「고용정책 기본법」

-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6.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3.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주거취약계층”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서 제시하는 주거취약계층의 개념은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빈곤가구 등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지원사업"이란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건설·매입·전세임대사업, 주거위생·안전·환경 개선 사업, 이사비·생필품 지원 사업, 보증금 대출 지원 사업 등을 말한다.

Ⅱ.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

1. 복지사각지대의 개요

복지사각지대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정책과 서비스가 닿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나 지역을 의미함. 이는 복지 시스템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포괄함

보건복지부는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하여 단전, 단수 등 위기정보를 보유한 누적 666만명의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아래표와 같이 누적 290만명에게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공적 급여와 민간 자원을 연계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해오고 있음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지원현황 (2015년~ 2023년) ■

(단위: 명)

발굴연도	발굴대상자	복지서비스 지원내역						
		총 계 (지원율)	공공서비스 연계					민간서비스 연계 ^{주2} (지원율)
			기초 생활보장 (지원율)	차상위 (지원율)	긴급 복지 (지원율)	기타 공공 서비스 ^{주1} (지원율)	합계 (지원율)	
합 계	6,656,547	2,902,301 (43.6%)	148,766 (2.2%)	58,790 (0.9%)	86,352 (1.3%)	516,048 (7.8%)	809,956 (12.2%)	2,092,345 (31.4%)
'15년	114,609	18,318 (16.0%)	1,966 (1.7%)	961 (0.8%)	702 (0.6%)	10,367 (9.0%)	13,996 (12.2%)	4,322 (3.8%)
'16년	208,653	46,780 (22.4%)	3,064 (1.5%)	6,573 (3.2%)	719 (0.3%)	20,278 (9.7%)	30,634 (14.7%)	16,146 (7.7%)
'17년	298,638	76,638 (25.7%)	6,712 (2.2%)	8,537 (2.9%)	1,109 (0.4%)	31,412 (10.5%)	47,770 (16.0%)	28,868 (9.7%)
'18년	366,755	133,490 (36.4%)	18,345 (5.0%)	6,588 (1.8%)	1,663 (0.5%)	38,860 (10.6%)	65,456 (17.8%)	68,034 (18.6%)
'19년	633,075	228,009 (36.0%)	17,674 (2.8%)	3,825 (0.6%)	3,276 (0.5%)	42,099 (6.6%)	66,874 (10.6%)	161,135 (25.5%)
'20년	1,098,134	442,652 (40.3%)	23,723 (2.2%)	5,243 (0.5%)	25,374 (2.3%)	74,019 (6.7%)	128,359 (11.7%)	314,293 (28.6%)
'21년	1,339,909	663,874 (49.5%)	28,611 (2.1%)	11,180 (0.8%)	19,664 (1.5%)	105,740 (7.9%)	165,195 (12.3%)	498,679 (37.2%)
'22년	1,208,086	606,101 (50.2%)	25,708 (2.1%)	9,338 (0.8%)	15,402 (1.3%)	109,351 (9.1%)	159,799 (13.2%)	446,302 (36.9%)
'23년	1,388,689	686,439 (49.4%)	22,963 (1.7%)	6,545 (0.5%)	18,443 (1.3%)	83,922 (6.0%)	131,873 (9.5%)	554,566 (39.9%)

주 1. (기타 공공서비스) 장애인연금, 사회서비스이용권(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등), 요양감면 등

주 2. (민간서비스) 공동모금회, 푸드뱅크,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민간기관 결연후원금 등

주 3. 지원율은 발굴대상자 대비 각 항목별로 지원한 비율임

자료 : 보건복지부

2. 주요 문제점

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한 지원이 민간서비스 연계에 치중함

2015년 ~ 2023년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원을 한 결과, 공공서비스를 연계한 지원율이 12.2%(81만명)인데 반해 민간서비스를 연계한 지원율은 31.4%(209만명)으로서 19.2%p 더 높음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 지원법」 등 법률에 근거한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공공서비스(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와 달리 민간서비스의 연계는 2024년 국정감사에서 지적¹⁾한 바와 같이 공동모금회 및 푸드뱅크와 같이 일회성·단기성으로 지원하기에 편리한 측면이 많기 때문임

나. 전국민 복지멤버십 서비스 가입률의 감소²⁾

정부는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서비스는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에게 가구의 연령, 가구구성, 경제상황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주는 제도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적인 수단임

2021년 9월에 동 서비스가 시작되었을 당시 가입대상자는 ‘기존의 복지수급자’였으나, 이듬해인 2022년 9월부터는 ‘전국민’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전국 2,207만 가구 대비 가입률은 2023년 5월 30.2%(666만 가구)였으나 2024년 9월 29.4%(649만 가구)로서 2.6%(17만 가구)감소하였음. 이 중 신청에 따라 복지멤버십에 가입된 가구는 92.3%(48만 가구) 늘어났으나,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의³⁾에 따라서 신청과 상관없이 당연히 복지멤버십에 가입되는 가구는 10.6%(65만 가구) 줄어들었음

1) 국회의원록, 2024년도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피감사기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2024. 10. 8., p.35.

2) 정용제, 「복지멤버십 제도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방안」, NARS 현안분석 제311호, 국회입법조사처, 2023. 12. 27.

3)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신청을 받아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안내(이하 “맞춤형 급여 안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맞춤형 급여 안내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의 수급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다. 「기초연금법」

라. 「장애인연금법」

마. 「장애인복지법」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Ⅱ 전국민 복지멤버십 가입현황 (2023년 5월 ~ 2024년 9월)Ⅱ

(단위: 가구수)

구 분		2023년 5월	2023년 11월	2024년 2월	2024년 5월	2024년 9월	'23.5.~'24.9. 증감 (증감율)
가입 총계 [당연가입 + 신청가입] (전국 2,207만 가구 대비 비중)		666만 (30.2%)	678만 (30.7%)	633만 (28.7%)	645만 (29.2%)	649만 (29.4%)	-17만 (-2.6%)
당연가입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의2]		614만	614만	561만	556만	549만	-65만 (-10.6%)
신청 가입	복지급여와 동시신청·가입	32만	38만 5,000	41만	45만	50만	18만 (56.3%)
	복지멤버십만 단독으로 신청가입	20만	25만 5,000	31만	44만	50만	30만 (50.0%)
	신청가입 합계	52만	64만	72만	89만	100만	48만 (92.3%)

주 : 전국가구수는 국가통계포털 2023년도 총조사기준 2,207만 가구임

자료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제출자료

다. 긴급복지지원의 예산 및 지원기간 부족, 기초생활보장으로의 연계 미흡

긴급복지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효과적인 제도임. 최근 10년간(2014년 ~ 2024년) 긴급복지 예산은 3,086억원(618.4%) 증가하였으나, 동 기간 긴급복지 주지원의 건수 증가율(817.4%)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Ⅲ 긴급복지 예산 증가 현황 (2014년 ~ 2024년)Ⅲ

(단위: 억원)

구 분	2014	2018	2021	2022	2023	2024	'14~'24증가액 (증가율)
긴급복지	499	1,113	1,856	2,156	3,155	3,585	3,086 (618.4%)

주 : 상기예산은 국비예산 기준임

자료 : 2014년~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개요

Ⅳ 긴급복지 주지원의 건수 증가 현황 (2014년~2023년)Ⅳ

(단위: 건)

주지원내역	2014	2018	2021	2022	2023	'14~'23증가건수 (증가율)
주지원합계	44,344	203,040	506,830	370,676	406,816	362,472 (817.4%)
생계지원	20,370	159,414	443,313	315,215	344,278	323,908 (1,590.1%)
의료지원	21,772	32,208	47,215	43,234	50,656	28,884 (132.7%)
주거지원	2,158	11,302	16,115	12,090	11,751	9,593 (444.5%)

주지원내역	2014	2018	2021	2022	2023	'14~'23증가건수 (증가율)
시설이용지원	44	116	187	137	131	87 (197.7%)

자료 1. 여유진외 4인, 긴급지원제도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 보건복지부 제출자료(2024.2.7.)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시행된 2006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생계지원 및 주거지원 등 주지원 사항은 1개월(또는 1회)을 지원하는 단기지원이 원칙이었으나, 2024년부터 동 법이 개정·시행되어 생계지원에 한해 3개월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하지만 기본적인 지원 기간이 짧아 지원에 문제가 있음

■ 긴급복지 지원의 기본원칙 (2024년도 기준) ■

지원구분	원칙	시군구청장 결정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지원금액
생계지원	3개월	—	3개월 범위내 추가연장	1,833.5천원/월(4인기준)
주거지원	1개월	2개월 범위내 지원연장	9개월 범위내 추가연장	주거 662.5천원/월이내 (대도시 4인기준)
의료지원	1회	—	1회 추가연장	3,000천원 이내
교육지원	1회(분기)	—	3회(분기)범위내 추가연장	고교 214천원/분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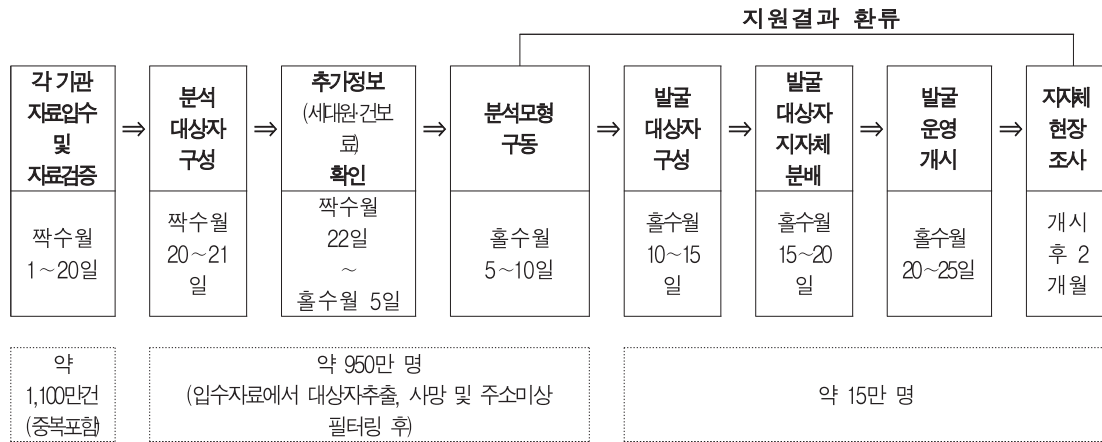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 「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2024.

3. 향후 과제

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한 지원이 공공서비스 연계에 노력할 필요

지자체는 복지사각지대 정보수집대상자 950만명중 15만명을 연6회 통보받아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대상자를 일일이 확인(방문, 전화 등)한 뒤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게 됨. 지방자치단체의 현장확인 단계(생활실태조사 후 지원여부 판단)에서 기초생활보장 등 공공서비스와의 연계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하고, 매년 동 지원 우수사례에 대한 공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한 지자체 조사 절차 ■



자료 : 보건복지부

나. 전국민 복지멤버십 서비스 가입률 확대노력 필요

「사회보장급여법」제22조의2(맞춤형급여안내) 제2항제1호 바목4)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복지멤버십 당연가입관련 법률)의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신청에 의한 복지멤버십가입” 분야의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인 국민비서서비스(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 이외에 다부처가 함께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여 전국민 복지멤버십을 신속하게 홍보하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다. 긴급복지 지원수준의 향상

긴급복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긴급복지 주지원 실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최근 10년간(2014년 ~ 2024년) 긴급복지 예산증가율(618.4%) 대비 긴급복지 주지원의 건수 증가율(817.4%)을 감안하여, 긴급복지 예산을 편성 시 주지원 실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긴급복지 지원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에서는 3개월(생계지원) 및 1개월 .1회(주거지원 등 지원)로 이원화 되어 있음. 하지만, 최근 10년간

4)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신청을 받아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안내(이하 “맞춤형 급여 안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맞춤형 급여 안내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의 수급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다. 「기초연금법」

라. 「장애인연금법」

마. 「장애인복지법」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2014년 ~ 2023년) 긴급지원의 종류별 건수 증가추세(주거지원 444.5%(9,593건) 증가 등)⁵⁾를 감안하여, 생계지원 외 지원을 대상으로 기본 지원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추가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단기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긴급지원 대상자들에 대하여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민간서비스⁶⁾보다 공적급여인 기초생활보장 급여로 연계하는 것이 필요함. 2024년 4월부터 실거주지 신청으로 확대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대상으로 향후 실적(실거주지에서 신청하여 수급된 기초생활보장 현황)을 면밀하게 조사 및 관리하여, 신청절차가 유사(실거주지 신청)한 긴급복지의 후속조치로 연계되어 복지사각 지대의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긴급지원 종류별 건수 증가추세 (2014년 ~ 2023년)

- 생계지원 : 1,590.1% 증가 (1개월 지원, 2024년 1월부터 1개월 → 3개월로 변경)
- 의료지원 : 132.7% 증가 (1개월 지원)
- 주거지원 : 444.5% 증가 (1개월 지원)
- 시설이용지원 : 197.7% 증 (1개월 지원)

6) 정부는 '2022년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2022.11.24.)에서 긴급복지 지원 후 계속하여 지원이 필요하거나, 지원이 필요함에도 지원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가구에 대하여 민간연계를 강화하도록 지자체에 안내하고 있음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향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공공 복지 제도임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2020년에 시행했습니다. 기존의 생활보호법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의 틀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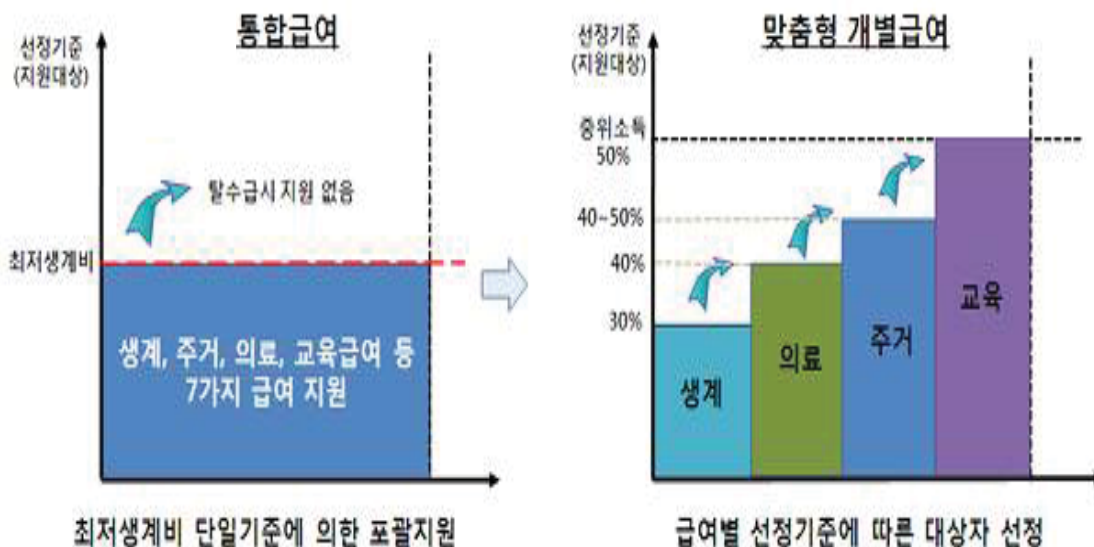
가. 주요 특징

소득인정액 기준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 일 때 지원이 가능하고, 급여 종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로 나뉘어 개별적 필요에 맞게 지원함. 조건부 수급으로서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을 위한 조건부 지원을 통해 자립을 돕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음

나. 통합급여에서 맞춤형급여로의 전환(2015년)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별로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차별화, 분야별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조정 (기존 ‘통합급여’ → 개선 ‘맞춤형 개별급여’)

- ① 2015년~2023년기준(중위소득비율) : 생계급여(30%), 의료급여(40%), 주거급여(43%), 교육급여(50%)
- ② 2024년기준(중위소득비율) : 생계급여(32%),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



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각 급여별 수급자 통계 (2019년 ~ 2023년)

①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가구수 (단위 : 가구, 명)

- 최근 5년간 수급자 수 증가 : 379,600명 증(30.6% 증)

구분	일반수급자									시설 수급자	합 계 (일반+ 시설 수급자)
	가구수								수급자수		
	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이상			
'19년	861,409	666,172	127,774	43,067	16,370	5,395	1,697	934	1,150,809	89,345	<u>1,240,154</u>
'20년	923,879	721,200	135,033	42,906	16,478	5,524	1,771	961	1,221,022	87,973	1,308,995
'21년	1,081,655	856,602	156,242	44,220	16,405	5,495	1,752	939	1,402,260	90,820	1,493,080
'22년	1,157,750	928,843	161,190	43,668	16,089	5,375	1,687	898	1,481,771	92,230	1,574,001
'23년	1,200,418	971,371	162,115	43,074	15,970	5,330	1,673	885	1,523,735	96,019	<u>1,619,754</u>

자료 : 보건복지부

② 의료급여 수급자수

- 최근 5년간 수급자 수 증가 : 25,000명 증(1.7% 증)

구 분	계	1종	2종
2019년	<u>148만 9,000명</u>	110만 4,000명	38만 4,000명
2020년	152만 6,000명	113만 7,000명	38만 9,000명
2021년	151만 7,000명	114만 4,000명	37만 2,000명
2022년	152만 2,000명	116만 5,000명	35만 8,000명
2023년	<u>151만 4,000명</u>	116만 7,000명	34만 7,000명

자료 : 보건복지부

③ 주거급여 수급자수

- 최근 5년간 수급자 수 증가 : 373,000명 증(35.9% 증)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지원인원	<u>104만명</u>	118만 6,000명	127만 3,000명	134만 5,000명	<u>141만 3,000명</u>

자료 : 국토교통부

④ 교육급여(교육활동비) 수급자수

- 최근 5년간 수급자 수 증가 : 5,969명 증(2.0% 증)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 지원인원	<u>29만 5,819명</u>	30만 2,800명	31만 548명	30만 9,582명	<u>30만 1,788명</u>
초등학교	11만 9,049명	12만 4,356명	13만 1,521명	13만 3,103명	12만 7,517명
중학교	7만 6,563명	8만 1,097명	8만 5,677명	8만 7,794명	8만 5,136명
고등학교	10만 207명	9만 7,347명	9만 3,350명	8만 8,685명	8만 9,135명

자료 : 교육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문제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의 지속적 발생

(2018년 73만명 → 2021년 66만명)

① 정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 ~2020) 이후 복지사각지대 감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오고 있음.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중증장애인, 한부모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해 오고 있음⁷⁾ 2025년 이후 부양의무자 예외규정 기준 완화와 관련하여, 생계급여에 있어서는 부양의무자 예외규정 기준을 확대하여 생계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비수급 빈곤층 규모 완화를 추진하고, 의료급여에 있어서는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 의료 필요도를 고려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 우선순위를 검토할 예정임⁸⁾

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주요 개선 실적 Ⅰ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구분	개선시기	주요내용
1차 [2018~2020]	생계	'19. 1.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19. 9.	부양의무자 재산환산율(4.17% → 2.08%) 완화
		'20. 1.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의료	'19. 1.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30세 미만 부모 가구의 경우 및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2차 [2021~2023]	생계	'21. 1.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21.10.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원 초과 또는 재산합산 9억원 초과 시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의료	'22. 1.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3차 [2024~2026]	생계 및 의료	'24. 1.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원 초과 또는 재산합산 9억원 초과 시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자료 1.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II-1, 보건복지부, 2024. 1.

2. 2024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2024. 1.) 및 2024 의료급여 사업안내(2024. 1.)

②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견표명⁹⁾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12월 28일 전원위원회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이 사회안전망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담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의견표명하기로 결정함

7) 보건복지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II-1」, 2024.1. p.32

8) 관계부처합동,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 ~ 2026)」, 2023.9.

9)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필요」, 보도자료, 2020. 12. 31.

빈곤하지만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즉,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는 2018. 12. 기준 약 73만명(48만 가구)에 달하고, 이러한 비수급 빈곤층의 주요 발생 원인이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도 2017년 이러한 대한민국 사회보장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며 정부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할 것을 권고했음

③ 국회 국정감사의 지적사항

2023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과 관련하여 부양의무자인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에도 동 가족의 소득과 재산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음¹⁰⁾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음에도 기초생활수급 신청 시 제출하는 수급관련 심의자료인 ‘부양기피사유서’(가족관계해체사유서)¹¹⁾가 최근 5년(2019년~2023년)동안 23,013건(2019년) ~ 39,908건(2023년)이 등록되고 있어서 동 기간동안 16,895건(73.4%)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

■ 기초생활 수급 신청 시 등록하는 부양기피사유서 건수 현황 (2019년 ~ 2023년) ■

(단위: 건)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19~'23 증감 (증감율)
생계급여	7,468	8,910	10,211	8,100	13,442	5,974 (80.0%)
의료급여	7,533	8,948	8,639	8,189	14,896	7,363 (97.7%)
주거급여	7,230	8,241	7,694	6,611	11,090	3,860 (53.4%)
교육급여	782	702	627	613	480	-302 (-38.6%)
합 계	23,013	26,801	27,171	23,513	39,908	16,895 (73.4%)

자료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제출자료(2024. 2. 19.) 재구성

④ 국민권익위원회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 폐지 권고¹²⁾

국민권익위원회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보장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자격에서 중·장기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함(2023.11.6.)

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1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부록), 남인순 위원 질의, 2023.10.12. p.131.

11) 부양기피사유서는 가족관계해체사유서를 의미함. 부양의무자가 법적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이유가 기술되어 있음

12) 국민권익위원회, 「납부 능력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 악순환 고리를 끊는다」, 2023.11.23.

제21대 및 제22대 국회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를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 및 보완 수단을 제안하였음.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동 기준 폐지의 보완 수단으로서 부정수급 신고제도의 도입(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안) 및 비용 징수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활용(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안)하도록 대안을 제시하였음

Ⅱ 제21대국회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주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현황 Ⅱ

대표발의자 (의안번호, 발의일)	주요 내용
<제21대 국회>	
이해식 의원 (2101719, 2020.7.9)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부양의무자 요건을 폐지하여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의 범위를 확대
남인순 의원 (2102863, 2020.8.11.)	○수급자가 되기 위한 부양의무자 요건을 폐지하여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
최혜영 의원 (2102970, 2020.8.14.)	○빈곤층에게 실질적인 사회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필요가 있음
강선우 의원 (2103412, 2020.9.1.)	○복지사각지대의 주요 원인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도덕적 해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신고제도를 도입
양정숙 의원 (2109819, 2021.4.30.)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급여 실시 여부 등을 결정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비용 징수 시에 활용하도록 함
강은미 의원 (2118209, 2022.11.11.)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최저생활 및 자활을 제도적으로 보장
장경태 의원 (2123218, 2023.7.12.)	○생계의료교육급여에 적용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침이 아닌 법령으로 명시하여 기초생활 수급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최저생활 및 의료복지를 제도적으로 보장
<제22대 국회>	
남인순 의원 (2203155, 2024.8.23.)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강화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으며, 소득은 낮지만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2021년 기준 66만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많음
김태년 의원 (2204026, 2024.9.13.)	○생계급여 수급자격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공공부조에서 가족 간 부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구시대적 당위성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필요

자료 :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최종검색일 : 2024. 12. 6.)

3. 향후 과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제도적 보완

① 기초생활보장 수급과 관련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를 심의하여 기초생활수급을 결정하는 시·군·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¹³⁾의 권한을 확대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¹⁴⁾, 2023년부터는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수급 기준에는 해당되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으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급권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가구를 선정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심의·의결하고 있으므로, 기초생활수급 대상 가구의 확대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생활보장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참고로 제21대 국회에서 생활보장위원회의 강화와 관련하여 법안이 제출된 바 있음

Ⅱ 제21대국회 생활보장위원회 강화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현황 Ⅱ

대표발의자 (의안번호, 발의일)	주요내용
윤소하 의원 (2005784, 2017. 2.24.)	○ 급여 수급자의 생활보장위원회에 참여 기회 부여 등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의 최저생활 및 자활을 제도적으로 보장 -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수급권자를 대표하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3명 이내의 사람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강은미 의원 (2118209, 2022.11.11)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급여 수급자의 생활보장위원회에 참여 기회 부여 등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 - 수급자 결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함(안 제2조제5호 삭제 및 제3조제2항 등)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수를 16명에서 18명으로 늘리고, 2명은 수급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함(안 제20조제3항)

자료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1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② 시·군·구에 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14) 보건복지부 제출자료(2024.2.21.)

Ⅱ 지방자치단체 생활보장위원회 조사결과 주요내용 Ⅱ

지방자치단체	주요 내용
대구광역시 남구,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 상정하는 기초생활수급 대상가구수를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권한 확대와 관련하여 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함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북구, 경상북도 의성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경상남도 김해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활성화 (회의개최 수 확대)를 통한 권리구제 및 지원확대

자료 : 입법조사처 조사 결과¹⁵⁾

②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기존 제도의 보완수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부양의무자 기준의 제약으로 인해 수급권자로 결정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이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수급권자를 결정하여 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지급된 기초생활 수급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¹⁶⁾

국민권익위원회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보장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자격에서 중·장기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2023.11.6.)한 바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저소득층 보험료 경감사업 및 의료비 국가지원 제도 등을 함께 감안¹⁷⁾하여 동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및 완화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임

15) 기초자치단체 생활보장위원회 보호선정 가구수 관련 건의사항 등 입법조사처 조사

- 조사대상 : 기초자치단체 126개소

- 조사기간 : 2023. 9. 20. ~ 2023. 10. 10.

※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p.356에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월 1회 이상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켜지고 있지 않으며, 다수 지자체에서 1회 개최를 하고 있음

16) 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109819호, 발의일 2020.4.30.) 제안설명

17) 정해주, 「부양의무자 기준·급여제한 폐지권고에 복지부 등 “개선검토”」, KBS, 2023.11.23.

IV. 통합돌봄지원제도의 현황 및 쟁점

1. 통합돌봄지원제도 현황

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돌봄통합지원법)심사경과

「돌봄통합지원법」의 국회 입법과정과 관련하여, 동 법은 2024년 2월 2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3월 26일에 공포되었으며, 2년후인 2026년 3월 27일에 시행될 예정임. 단, 법 제26조에서 명시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범사업은 올해 3월 26일에 즉시 시행됩니다. 2024년 현재 전국 1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상기 시범사업이 이미 진행중에 있음

심사경과를 요약하면, 동 법은 제21대국회에서 발의된 제정안으로서 2021년도에 정춘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 등 7개의 제정법안이 2020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음. 그후에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하였는데, 특히 정춘숙의원님의 대표발의법안과 전재수의원님의 대표발의법안은 소위원회 심사전에 공청회를 거친바 있음

2023년 12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안으로 상정하였으며, 상기 7개의 제정법안은 대안에 반영됨으로 인해 폐기되었으며, 상정된 대안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으며, 2024년 2월에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확정이 되었음

Ⅱ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발의 및 심사경과 Ⅱ

법안명 (대표발의 의원, 의안번호, 발의일)	심사경과 (법안번호 ① ~ ⑧)
①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 (정춘숙의원, 2104946, '20.11.4.)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 전체회의 상정 및 소위원회 21-2-27 ①, 21-11-11 ②, 23-9-18 ③~⑤, 23-9-15 ⑥, 23-12-15 ⑦ ■ 공청회 23-2-24 ① ~ ② ■ 제2법안심사소위 심사 23-4-26 ① ~ ②, 23-9-19 ① ~ ⑥, 23-11-21 ① ~ ⑥, 23-12-19 ① ~ ⑦ 의결: 대안반영폐기 ■ 전체회의의결 23-12-20 ①~⑦ 의결: 대안반영폐기, ⑧ 의결: 대안가결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24-2-29 수정가결 <본회의 의결> 24-2-29 원안가결
②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 (전재수의원, 2111356, '21.7.6.)	
③ 지역돌봄보장법안 (남인순의원, 2121940, '23.5.11.)	
④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 (산현영의원, 2122302, '23.5.26.)	
⑤ 노인돌봄 등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최영희의원, 2123246, '23.7.13.)	
⑥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최재형의원, 2124407, '23.9.12.)	
⑦ 노인 등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최충윤의원, 2125596, '23.11.24.)	
⑧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 2126565, '23.12.20. 상정) *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	

나. 「돌봄통합지원법」의 주요 내용

동 법률은 제정법으로서, 국회법상 공청회 절차를 포함한 입법절차를 거쳤음. 동 법률 제2조는 인권관련 조항으로서,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에서 노인의 58%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는 결과, 2012년도 국가인권위 조사에서

시설거주 장애인의 57%가 시설밖에서 거주하고 생활하기를 희망한다는 결과를 반영하였음. 이에 따라 노쇠등으로 일상생활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여 살던곳에서 생애말기까지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가 완결형 통합지원 연계체계를 마련하는 등 여건조성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률안 심사시 주요 검토 내용으로서, 주요쟁점사항 및 대안으로 의결된 사항을 확인하면

첫째, 대상자를 노인으로 한정할 것인지 여부임. 대안에서는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의결되었음

둘째, 돌봄으로 의료연계를 포괄할 것인지 여부임. 대안에서는 통합지원의 개념을 보건의료, 일상생활돌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 등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으로 의결하였음

셋째, 타법과의 연계대상 부분임. 대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보건의료기본법」 상의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연계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입원 또는 입소하고 있던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가 퇴원 또는 퇴소하고자 할 때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고 통합지원신청을 안내하여 퇴원 또는 퇴소이후에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기관 등의 장에게 통합지원대상자의 주거 소득 등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타법과의 연계에 대한 규정으로 의결하였음

넷째, 전문인력 양성 시책 및 지정대상기관을 선언적으로 규정할지 여부입니다. 대안에서는 국가와 지자체는 통합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선언적으로 규정하였고, 국가는 연구소 및 대학 등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선언적으로 규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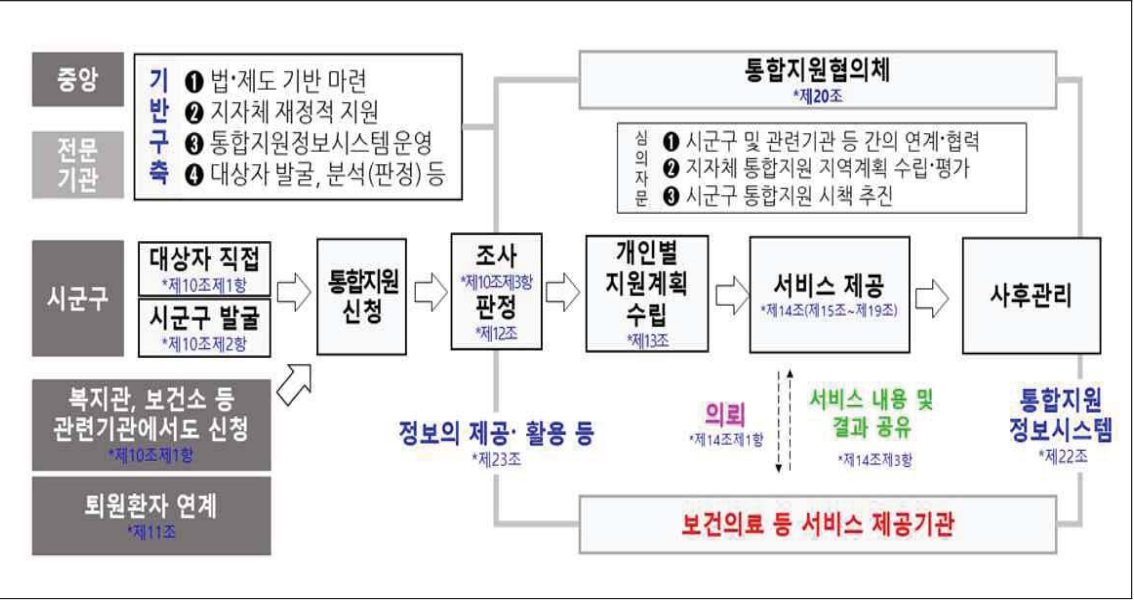
다섯째, 통합지원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하위법령 위임 여부임. 대안에서는 전문기관을 특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통합지원 정책 수립, 홍보 및 지역계획 추진성과의 평가지원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음

여섯째, 비용지원과 관련한 사항임. 대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통합지원 시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별도 기금의 설치는 규정하지 않았음. 현재 정부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진행중에 있는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국비에서 50%정도 지원받고 있으며, 2024년 총사업비는 10억 6,500만원이며, 국비지원 5억 3,200만원, 경기도비지원 1억 6,000만원, 안산시비 3억 7300만원으로서, 국비지원 및 경기도비지원을 받고 있음

일곱째, 기관간 협조체계 및 전담조직 관련사항임. 대안에서는 기관간 협조체계로서 지역계획의 수립평가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심의자문

조직인 통합지원협의체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급여법」상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전담조직과 관련해서 시군구에서는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통합지원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 단계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음

「돌봄통합지원법」상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 개념도



※ 자료 : 보건복지부

2. 통합돌봄지원 시범사업을 통한 주요쟁점 사항

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통합돌봄지원 서비스 고려 필요

미래 소멸위험이 높은 지역인 인구감소지역은 전체 인구의 감소로 지역 내 각종 생활 인프라가 감소하고, 돌봄 필요자의 일부는 의료 및 돌봄서비스 이용이 수월하고, 비공식적 돌봄서비스를 보다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녀 거주지 또는 요양시설 및 병원으로 이동하게 되며, 이는 다시 지역 내 인구감소를 야기하며, 결국 지역소멸 가속화를 야기하게 됨

따라서, 지역내 ‘돌봄경제’에 따른 돌봄의 선순환 구조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함. 돌봄 서비스 제공 및 돌봄 인프라에 대한 지출은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투자로서 노인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소멸위험지역 거주 돌봄 필요 노인에 대한 삶의 질 향상 뿐만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 확보 측면에서도 지역 내 거주자인 노인들의 돌봄체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¹⁸⁾

18) 국가인권위원회, 「인구감소지역 노인의 생활실태와 인권보호 방안 모색」, 제18차 노인인권포럼, 2024. 11. 26., p.22.

정부의 통합돌봄 시범사업(2019년 ~ 2024년) 선정지 21개소¹⁹⁾ 중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2024. 2. 27. 시행)를 통하여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은 단 2개소에 불과함 (대구광역시 남구, 경상북도 의성군)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통합돌봄 시범사업 성과를 확인하여 「돌봄통합지원법」제5조²⁰⁾에서 규정한 기본계획(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와 협의하여 5년마다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 통합지원 인프라·서비스 확충 방안 등에 있어서 인구감소지역의 돌봄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필요함

나. 통합돌봄사업의 지자체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원 및 기본계획 수립에 참고

2023년 ~ 2024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12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시·군·구비를 25% ~ 86%부담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통합돌봄사업을 실시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고보조 지원수준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수립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2023년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경기도 부천시 등 12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총 75억 6,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전체적으로 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의 비중은 41.8% : 13.4% : 44.8%임. 하지만, 경기 부천시는 자체 시·군·구비를 최고 86% 부담하고 있으며, 광주 및 대전소재 4개 기초자치단체는 자체 시·군·구비를 최저 25%부담하고 있어서 61%p 차이가 남

19) 통합돌봄 시범사업 선정지(21개소)

- 부산광역시 : 북구, 부산진구
- 대구광역시 : **남구**
- 대전광역시 : 대덕구, 유성구
- 광주광역시 : 서구, 북구
- 경기도 : 남양주시, 부천시, 안산시, 화성시
- 충청북도 : 진천군, 청양군
- 충청남도 : 천안시
- 전북특별자치도 : 전주시
- 전라남도 : 순천시, 여수시
- 경상북도 : **의성군**
- 경상남도 : 김해시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서귀포시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지 않음

20) 「돌봄통합지원법」

제5조(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사와 협의하여 5년마다 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 목표와 기본방향
2. 통합지원 인프라·서비스 확충 방안
3. 통합지원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통합지원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 방안
4. 통합지원을 위한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5. 통합지원과 관련된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
7.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통합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Ⅱ 2023년도 통합돌봄 시범사업 재정지원 현황 Ⅱ

기초지자체명	재정지원 내역 (단위 : 백만원)				국비:시도비:시군구비
	국 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경기 부천시	250	0	1,495	1,745	14:0:86
경기 안산시	250	0	250	500	50:0:50
광주 서구	250	125	125	500	50:25:25
광주 북구	280	140	140	560	50:25:25
대전 대덕구	280	140	140	560	50:25:25
대전 유성구	280	140	140	560	50:25:25
충북 진천군	250	75	175	500	50:15:35
충남 천안시	260	75	185	520	50:15:35
전북 전주시	250	50	200	500	50:10:40
전남 여수시	280	84	196	560	50:15:35
경북 의성군	280	112	168	560	50:20:30
경남 김해시	250	75	175	500	50:15:35
합계	3,160	1,016	3,389	7,565	
비중	41.8%	13.4%	44.8%	100.0%	

※ 자료 : 각 기초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

2024년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경기도 부천시 등 12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총 134억 8,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전체적으로 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의 비중은 47.3% : 16.2% : 36.5%임. 하지만, 경기 부천시는 자체 시·군·구비를 최고 68% 부담하고 있으며, 광주 및 대전소재 4개 기초자치단체는 자체 시·군·구비를 최저 25%부담하고 있어서 43%p 차이가 남

Ⅱ 2024년도 통합돌봄 시범사업 재정지원 현황 Ⅱ

기초지자체명	재정지원 내역 (단위 : 백만원)				국비:시도비:시군구비
	국 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경기 부천시	533	0	1,118	1,651	32:0:68
경기 안산시	532	160	373	1,065	50:15:35
광주 서구	533	266	266	1,065	50:25:25
광주 북구	533	266	266	1,065	50:25:25
대전 대덕구	533	266	266	1,065	50:25:25
대전 유성구	533	266	266	1,065	50:25:25
충북 진천군	528	158	369	1,055	50:15:35
충남 천안시	520	156	505	1,181	44:13:43
전북 전주시	528	105	422	1,055	50:10:40
전남 여수시	542	163	380	1,085	50:15:35
경북 의성군	525	210	315	1,050	50:20:30
경남 김해시	542	163	380	1,085	50:15:35
합계	6,382	2,179	4,926	13,487	
비중	47.3%	16.2%	36.5%	100.0%	

※ 자료 : 각 기초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

※ 참고 : 통합돌봄 정부 시범사업 내용²¹⁾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개요 (1기, '19. 6월 ~ '22. 12월)

- (목적)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 모델을 검증·보완하여 다양한 통합돌봄 모델 개발

< 선도사업 실시 16개 지자체 >

- (노인 13) 부산 북구, 부산진구,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경기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시, 충남 청양군, 전북 전주시, 전남 순천시, 경남 김해시, 제주 서귀포시
- (장애인 2)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 (정신질환자 1) 경기 화성시

- (추진방향) △지역의 자율성·창의성·다양성을 반영, △지역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투입·활용, △다양한 부처 연계사업 동시 진행 등
- (대상) 노화·사고·질환·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사람(육구 기반 보편적 제도 지향)
- (사업내용) 대상자의 욕구에 맞추어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여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지원
 - 발굴 → 욕구 사정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영역별 서비스 연계·제공 → 모니터링 등
- (기간) '19.6월 ~ '22.12월
 - 당초 '21년 사업 종료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대면 서비스 제공 차질로 '22년까지 1년 연장
- (사업규모) 선도사업 예산 + 연계사업 예산 + 자체 재원으로 구성
 - 16개 시·군·구(노인 13, 장애인 2, 정신질환자 1)에서 선도사업 시행
 - (노인) 광주서구, 부천, 천안, 전주, 김해, 부산진구, 부산북구, 남양주, 안산, 진천, 청양, 순천, 서귀포, (장애인) 대구남구, 제주, (정신질환) 화성
- 복지부·행안부·국토부 연계사업 및 지자체 자체재원 활용

21) 보건복지부 제출자료(2024. 4. 17.)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2기, '23. 7월 ~ '25. 12월)

- (목표) 의료와 건강관리·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이 가능한 기본적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모델 정립
- (방향) 의료·돌봄 분야 서비스 간 연계체계 구축과 방문의료서비스 확충에 중점
- (기간·규모) '23.7월 ~ '25.12월(2년 6개월), 12개 지자체('23.3월 선정)
 - 광주 서구·북구, 대전 대덕구·유성구, 부천시·안산시, 진천군, 천안시, 전주시, 여주시, 의성군, 김해시
- (대상자) 요양병원(시설) 입원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
- (우선관리 대상)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일시 의료·돌봄수요군, 병원 퇴원환자 등 돌봄 필요도가 높은 75세 이상 노인
- (사업내용) 지역사회 지속 거주를 위해 필요한 방문형 의료서비스 확충과 지역 내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에 집중
 - (방문의료·보건) ①재택의료센터 연계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방문의료서비스 확대, ②보건소 방문건강관리·치매안심센터 연계 강화
 - (유관사업 연계)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사업* 지침·예산 연계 등 추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주거지원서비스, 일상생활지원 사회서비스 등
- (전달체계) 신청·접수·발굴, 방문상담, 제공계획 수립 및 지역케어회의*, 서비스 및 사후관리 등 체계, 시군구 본청 역할 강화
- (전담조직·인력) 시군구 본청 내 전담 조직(과 또는 팀)과 전담인력*(복지직+보건직+간호직 등)을 확보하여 운영하도록 지침 제정
전담인력은 '케어코디네이터' 등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역할을 중점 수행
- (정보시스템) 건보공단 업무시스템 활용 지자체-건보 간 대상자 정보공유

V. 노숙인복지제도의 개선방향²²⁾

1. 노숙인 복지제도의 개념

현행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은 2011년도에 제정되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이 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 등을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 .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주요 노숙인 복지제도 내용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주거지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지원, 일자리를 통한 자립지원 등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고용지원이 있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노숙인 복지제도의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한계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대상자의 필수적인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복지 서비스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거나 행정 절차가 복잡하여 실제로 필요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현상에 대해 지적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노숙인의 의료지원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은 ‘노숙인 등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²³⁾을 2020년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동 사업의 최근 4년간(2020년 ~ 2023년)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검진건수는 7,827건(49.6%) 증가하였고, 발견 비율(검진건수 대비 발견환자수 비율)은 0.01%p 감소하였음.

■ 질병관리청의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 운영 현황(2020년 ~ 2023년) ■

(단위 : 건, 명,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대비'23 증감 (증감률)
검진건수	15,777	22,943	25,229	23,604	7,827 (49.6)
발견환자수	22	35	39	30	8 (36.4)
발견비율	0.14	0.15	0.15	0.13	-0.01%p
예산액	5억 5,100만원	6억 9,100만원	6억 9,100만원	7억 3,600만원	1억 8,500만원 (33.6)

※ 주 1. 대상자는 거리 및 시설노숙인, 쪽방거주자, 무자격체류자

2. 발견비율은 검진건수 대비 발견환자수의 비율임

3. 예산액은 2020년 ~ 2022년까지는 국비 100% 지원이며, 2023년부터는 국비 50% 및 지방비 50%로 시행되고 있으며, 상기 2023년도 예산은 국비 및 지방비를 합한 예산액임

※ 자료 : 질병관리청 제출자료(2024. 10. 18.)

22) 정용제, 「노숙인 복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NARS 현안분석 제333호, 국회입법조사처, 2024. 11. 27.

23) 질병관리청 제출자료(2024. 10. 18.)

노숙인 등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은 2019년도에 서울 용산구 쪽방거주자 대상으로만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20년부터 전국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하지만, 2023년도에 질병관리청의 결핵검진사업을 통해 결핵이 발견된 노숙인 환자 30명은 국가통계기준으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에 발생한 10만명 당 결핵 환자수인 30.6명(발견비율 0.03%)²⁴⁾에 비해서 4.15배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2016년도 및 2021년도 노숙인 실태조사 등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노숙인의 건강수준은 전체 인구와 비교하면 열악한 상황을 보이고 있음²⁵⁾을 알 수 있음 또한, 질병관리청은 결핵 이외에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생활시설 노숙인에 대하여 2년간(2022년 ~ 2023년) 14,459명²⁶⁾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 바 있음

2. 노숙인 복지제도의 문제점

가. 노숙인 주거지원 제도의 문제점

2021년도에 노숙인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실태조사²⁷⁾에 따르면, 노숙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도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에서 주거지원(17.9%)이 소득보조(49.2%) 다음으로 가장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음. 주거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숙인에 대하여 생활장소 기준으로 정리하면 ① 자활시설(노숙인의 자립을 돕기 위한 직업상담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²⁸⁾의 입소자가 34.7%로 가장 비중이 높고, ② 거리노숙인 중 이용시설(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및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이 28.4%, ③ 거리노숙인이 20.3%, ④ 쪽방주민이 17.9%로 나타났음.²⁹⁾

‘임시주거비 지원사업’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시행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조사에 따르면,³⁰⁾ 아래 표 Ⅱ 최근 5년간 광역지방자치단체 노숙인 ‘임시주거비 지원사업’ 주요 현황(2019년 ~ 2023년) Ⅱ에서 서울특별시 등 8개 광역자

24) 국가통계포털, 「병변위치별 객담도말검사 결과별 신고 결핵 신환자수 및 율」(최종검색일 : 2024. 11. 1.)
2023년 노숙인 결핵 검진건수 23,604건에 대한 결핵환자수 30명을 10만명 기준으로 환산하면 결핵 환자수는 127명이 산출되어, 일반국민 10만명 당 결핵환자수 30.6명에 비해 4.15배의 수치를 보여줌

25) 관계부처합동,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사회보장위원회, 2021. 12. 24., p.21.

26) 질병관리청 제출자료(2024. 10. 21.)
생활시설 노숙인 코로나19예방접종 실적 : '22년 4차접종 5,365명, '22년 동절기 추가접종 5,481명, '23 '24 절기 예방접종 3,613명

27) 임덕영 외 10인,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21. 12., p.48.

28)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 ① 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11.>

1.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 등에게 일시보호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시설
2.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 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직업상담·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3. 노숙인재활시설: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 노숙인요양시설: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7. 쪽방상담소: 쪽방 밀집지역에서 쪽방거주자에 대한 상담·취업지원·생계지원, 그 밖의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9) 보건복지부,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결과발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 4. 7., p.13.

30) ‘임시주거비 지원사업’ 현황관련 지방자치단체 조사

- 조사대상 :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17개소
- 조사기간 : 2024. 10. 9. ~ 11. 6.
- 조사내용 : 2019년도 ~ 2023년도 지원실적(지원인원, 주거유지인원), 2019년도 ~ 2023년도 타서비스 연계지원 인원(생계급여, 주거급여, 일자리, 주거상향)

치단체의 실적 합계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2019년 ~ 2023년) 총 예산액 61억 3,638만원을 활용하여 총 노숙인 지원인원 5,565명에게 임시주거비를 제공하였음. 5년간 노숙인에게 임시주거비를 지원한 예산액은 1인당 평균 110만원으로서 타 지원 사업에 비해 예산이 적게 소요됨과 동시에 주거상실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기존에 ‘임시주거비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노숙인 중에서 사업 종료후에 다시 거리노숙인 또는 노숙인시설로 복귀하지 않고 주거를 지속적으로 유지한 실적은 71.1%³¹⁾이고, 임시주거비를 지원하는 동시에 다른 종류의 서비스(생계급여, 주거급여, 일자리, 주거상향)³²⁾로 동시에 연계하여 지원한 실적 또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동 사업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아직 8개소에서만 동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서 전국적인 확산이 필요함.

Ⅱ 최근 5년간 광역지방자치단체 노숙인 ‘임시주거비 지원사업’ 주요 현황(2019년 ~ 2023년) Ⅱ

(단위 : 명, %)

구 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원액 (24기준)	월세액 34.1 생필품 10	월세액 25 생필품 12	-	월세액 30	월세액 35 주거급여 10	월세액 35 생필품 42	월세액 30 생필품 30	-
예산액	40억 2,200만원	6억 6,000만원	4억 2,735만원	2억 7,550만원	5억 8,760만원	1억 4,550만원	923만원	860만원
지원인원	3,553	337	412	340	707	123	32	61
유지인원 (유지율)	2,653 (74.7)	208 (61.7)	67 (16.3)	312 (91.8)	518 (73.3)	116 (94.3)	22 (68.8)	61 (100)
타서비스 연계인원	생계급여 1,114 주거급여 1,186 주거상향 123 일자리 78 합 계 3,309	생계급여 197 주거급여 204 주거상향 60 일자리 40 합 계 501	생계급여 36 주거급여 36 주거상향 155 일자리 67 합 계 294	생계급여 98 주거급여 98 주거상향 2 일자리 42 합 계 240	생계급여 276 주거급여 169 주거상향 69 일자리 426 합 계 940	생계급여 121 주거급여 121 주거상향 46 합 계 288	생계급여 26	주거급여 5

- ※ 주 1. 지원액은 2024년 기준으로 지원되는 금액임
 2. 예산액은 최근 5년간(2019년 ~ 2023년) ‘임시주거비 지원사업’의 예산액 합산임
 3. 지원인원 및 유지인원은 최근 5년간(2019년 ~ 2023년) 임시주거비를 지원한 인원 및 기지원받은 임시주거지원이 종료된 이후

31) 최근 5년간 총 지원인원 5,565명 대비 총 유지인원 3,957명의 비율
 32) 서울특별시, 「서울시, 지난해 노숙인 636명에 임시 주거비용 제공... 재노숙 비율 18% 불과」,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024. 2. 7.

<‘임시주거비 지원사업’의 타서비스 연계지원 세부내용>
 -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문제로 취업이 어려운 임시주거비 지원자에게 생계급여 지원을 연계하고 있음
 - 주거급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임시주거비 지원기간이 끝난 후 주거급여로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음
 - 일자리지원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및 민간 일자리를 알선하여 지원함
 - 주거상향지원 : 국토교통부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노숙인시설, 쪽방 등을 지원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초기안정 지원사업”과 “이사비 지원사업 중 비정상거주가구 지원사업”이 있다. 해당 사업은 노숙인시설, 쪽방, 고시원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초기안착지원, 만족도상담, 주거환경개선, 이사비 등을 제공함

주거를 유지한 인원의 실적합산임

4. 타서비스 연계인원은 최근 5년간(2019년 ~ 2023년) 임시주거비와 연계하여 타서비스를 지원한 인원의 실적합산임
5. 유지비용은 주거지원인원 대비 주거유지인원 비율임
6. 광주광역시시는 2021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3개년(2021년 ~ 2023년) 통계임
7. 인천광역시와 울산광역시시는 2024년도 특정한 지원액 기준이 없음
8. 최근 5년간 총 지원인원 5,565명·총 유지인원 3,957명·타서비스 총 연계인원 5,603명 : 서울특별시 등 8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인원 합계임

※ 자료 : 각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 (2024. 10. 16. ~ 11. 5.)

나. 노숙인 의료지원 제도의 문제점

현재 노숙인이 직접 방문하여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노숙인 진료 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근거하여 2025년 3월 25일까지 임시적으로 기한을 정하여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제1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³³⁾이다. 이에 추가하여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시는 노숙인 무료진료소운영사업³⁴⁾을 통해 노숙인을 대상으로 진료 및 투약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노숙인에 대한 의료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

33) 「의료급여법」

제9조(의료급여기관)

② 의료급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제1차 의료급여기관

- 가.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 나.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2. 제2차 의료급여기관: 「의료법」 제33조제4항 전단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기관

※ 참고

-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으로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의료법」 제33조제3항), 보건소·보건의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 해당하는 의료급여기관
- 제2차 의료급여기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으로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의료법」 제33조제4항)

34) 서울특별시 제출자료(2024. 10. 18.), 대전광역시 제출자료(2024. 10. 23.)

- 서울특별시 노숙인 무료 진료소 운영현황

- 2개소 운영 : 서울역 무료진료소(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부속의원), 영등포 무료진료소(영등포보건종합지원센터 부속의원)
- 2024년도 예산(2개소) : 12억 1,800만원
- 운영시간 : 09시 ~ 18시 (응급 상황시 연장 운영)
- 직종별 근무인원 : 서울역 무료진료소(8명, 외과전문의 1명, 공중보건의 1명 등), 영등포 무료진료소(5명, 일반의 1명, 공중보건의 1명 등)
- 진료실적 : 25,118명('19), 21,065명('20), 13,121명('21), 13,875명('22), 11,572명('23), 7,467명('24.상반기)
- 주요 사업내용

- ① 노숙인 및 쪽방 주민 대상 진료 및 투약
- ② 내방 노숙인 상담, 시설 입소 안내, 무보험자 의료 급여 전환 추진
- ③ 진료 범위 초과 시 병원 진료 의뢰(2,3차), 응급 시 119 호출
- ④ 결핵검진(서울역 무료진료소 상시검진) 및 관리, 독감 예방 접종 지원 등

- 대전광역시 노숙인 무료 진료소 운영현황

- 1개소 운영 : 희망진료센터 (대전 동구 소재)
- 2024년도 상반기 예산(1개소) : 3,506만원
- 운영시간 : (평일) 09시 ~ 18시, (수) 09시 ~ 21시, (토) 15시 ~ 21시
- 직종별 근무인원 : 3명, 생활지도원(간호조무사) 1명, 생활지도원 1명, 사회복지사 1명
- 진료실적 : 5,398명('19), 2,254명('20), 2,746명('21), 1,966명('22), 3,885명('23), 1,637명('24.상반기)
- 주요 사업내용 : 의료진 야간 및 휴일 의료지원, 진료상비약 지원 등

스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인 ‘미충족 의료’³⁵⁾비율이 2016년 31.0%에서 2021년 42.6%로 11.6%p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노숙인 의료지원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실효성 없는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더욱 취약해진 노숙인의 의료접근권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①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를 폐지하되 관련 법령 개정 전까지 노숙인진료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② 노숙인시설이 없는 지역의 노숙인도 의료급여 신청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 등을 보완할 것을 권고 한 바 있음 (2021년 11월).³⁶⁾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최근 5년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지침)를 통해 지정된 노숙인진료 병원을 확대 지정하여 안내해 오고 있으며³⁷⁾ 해당 지정병원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67개소 → 291개소로 확대되었음. 구성요소를 확인하면 종합병원 . 병원 . 요양병원이 아닌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가 77.7% ~ 83.9%에 해당하여 노숙인 환자의 의료지원시설이 보건소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특히 지정된 의료기관도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치우쳐 있어서 그 외의 지역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으며, 특히 광주, 울산, 제주, 세종 지역은 종합병원이 없어 지역의 노숙인은 양질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임.³⁸⁾

Ⅱ 노숙인진료 전체 지정병원 현황(2019년 ~ 2022년)Ⅱ

2019년 9월 기준 (’20 지침)	2021년 4월 기준 (’21 지침)	2021년 12월 기준 (’22 지침)	2022년 1월 기준 (’23, ’24 지침)
267개소 (224개소, 83.9%)	286개소 (226개소, 79.0%)	289개소 (226개소, 78.2%)	291개소 (226개소, 77.7%)

※ 주 1. ()의 “지침”은 보건복지부 지침(2020년 ~ 2024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임

2. ()의 개소는 보건소(보건의료원, 일반보건소, 보건지소)의 합계이며, %는 전체 지정병원 대비 보건소의 비중임

※ 자료 : 보건복지부, 「2020년 ~ 2024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보건복지부는 2022년 3월 22일 시행된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하여 임시적으로 기한을 정하여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제1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하였으며, 매년 동 고시를 개정하면서 동 고시의 유효기간이 2025년 3월 25일까지로

35) 임덕영 외 10인,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21. 12., p.258.

노숙인 면접조사 항목 중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지고 않고 참는다’로 제시되고 있음

36)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2021. 11. 18.)

- 제목 : 코로나 19 재난상황에서 노숙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37) 보건복지부, 「2020년 ~ 2024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38) 신도경외 1인, 「[의료사각]⑤ 노숙인.쪽방촌 ‘가난 증명해야’...취약계층 의료 장벽 높아」, 뉴스핌, 2024. 4. 23. 2022년 1월 기준 노숙인진료 전체 지정병원은 총 291개소이며, 이중 수도권인 서울특별시(38개소), 인천광역시(7개소), 경기도(49개소)에 해당되는 동 진료소 94개소는 전체 지정병원의 32.3%에 해당함

연장되었음.³⁹⁾ 따라서,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가 법령에 의해 정비되지 않으면,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하여 임시적으로 기한을 연장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제21대 국회에서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8371호, 발의일 2022년 11월 22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전체 의료기관에서 노숙인 의료급여를 실시하도록 제안한 바 있으나, 동 법안은 2024년 5월에 제21대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폐기되었음⁴⁰⁾

다. 노숙인 고용지원 제도의 문제점

2021년도에 노숙인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실태조사⁴¹⁾에 따르면, 노숙인들이 일자리소개(고용지원)와 관련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이 18.7%로서 2016년도 실태조사 시 동 서비스 이용 비율인 38.8%에 비하여 20.1%p 감소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음. 현재 노숙인의 고용지원 일자리사업은 ①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거리노숙인 특화자활사업’, ②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③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노숙인 일자리 사업, ④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철도공사 등 MOU체결기관과 협력하여 시행하는 노숙인 일자리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노숙인 고용지원 일자리사업의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보건복지부 소관 ‘거리노숙인 특화자활사업’은 전국 10개소만이 참여하고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려는 의지가 필요해 보이며 예산확보를 통해 참여기관

39) 아래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의료급여법」제9조에 따른 제1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기한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68호, 2022. 3. 22., 제정] :

(기한지정) 2023년 3월 21일까지 효력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8호, 2023. 3. 22., 일부개정] :

(기한지정) 2024년 3월 21일까지 효력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40호, 2024. 3. 22., 일부개정] :

(기한지정) 2025년 3월 21일까지 효력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80호, 2024. 5. 8., 일부개정] :

(기한지정) 2025년 3월 21일까지 효력

40)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8371호)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23. 2., pp.5.-7.

- 입법필요성 : 개정안은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전체 의료기관에서 노숙인 의료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다른 의료급여수급자와 동일하게 모든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고, 노숙인이 이용가능한 의료기관이 확대되어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그 입법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 개정안 수용입장

. (보건복지부) 노숙인 이용가능 의료기관 확대에 기여하여 개정안에 동의함.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 노숙인 진료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정책 시행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서울특별시)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에 동의하며, 의료급여기관이 특별한 사유없이 노숙인 진료를 거부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 필요

- 개정안 반대입장

. (대한의사협회) 노숙인의료급여 제공에 따른 병원비 체납, 방만한 의료급여 이용에 따른 의료급여 재정 건전성 악화 등 우려

41) 임덕영 외 10인,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21. 12., p.46.

및 참여자를 확대하여 거리노숙의 만성화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⁴²⁾

고용노동부 소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은 노숙인이 참여할 수 있는 분류로서 I 유형과 II 유형이 있으나 노숙인 및 쪽방주민의 참여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II 유형 중 노숙인 및 쪽방주민이 비주택거주자의 일부로 포함되어 분류된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일자리 항목의 최근 3년간 지원은 26명(’22년), 11명(’23년), 3명(’24년 상반기)에 불과하며,⁴³⁾ 고용노동부는 노숙인 및 쪽방주민을 구분하여 통계수치를 정리하고 있지 않아 향후 노숙인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곤란함

또한, 2024년 현재 중앙정부의 노숙인 일자리 사업은 보건복지부 소관 ‘노숙인 등 복지지원 사업’과 고용노동부 소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두 부처간의 협력체계는 별도로 확인하기 어려움⁴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시행하는 노숙인 고용지원과 관련하여,⁴⁵⁾ 노숙인 일자리 사업은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등 3개소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한국철도공사 등 협력기관의 노숙인 일자리사업 이외에 추가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42) 임덕영외 8인, 「2022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성과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11., pp.387.-388.

43) 고용노동부 제출 및 확인 자료(2024. 10. 15.)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서 노숙인 및 쪽방주민의 참여 현황

. I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취업을 지원함

. 노숙인을 저소득층 자격으로서, I 유형을 지원하는 경우 별도로 노숙인 및 쪽방주민을 구분하여 통계수치를 정리하고 있지 않음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에서 노숙인 및 쪽방주민의 참여 현황

. II 유형은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며, 특정계층인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로서 취업을 지원함

. 노숙인을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특정계층 자격으로서, II유형을 지원하는 경우 노숙인 및 쪽방주민을 비주택거주자 특정계층에 포함하여 통계수치를 정리하고 있으므로, 노숙인 및 쪽방주민을 구분하여 통계수치를 정리하고 있지 않음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별표 1】취업취약계층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 요건(제2조 관련)

3.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노숙인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숙인 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주택 거주사실에 대한 확인서 또는 추천서를 받은 사람

44) 보건복지부,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서」, 2024. 1., p.154.

- ‘노숙인 등 복지지원 사업’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2024년도 보조금 1억 5,800만원을 교부하여 노숙인 자활사업을 시행함

고용노동부,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서」, 2024. 1., p.135.

-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총 예산은 9,425억 1,500만원이 편성됨

고용노동부,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서」, 2022. 9., pp. 404.- 405.

- 고용노동부의 ‘취약계층취업촉진’ 사업의 연혁에서 노숙인 취업지원은 2007년에서 시작해서 2020년에 폐지하였음 (폐지사유 : 보건복지부 ‘노숙인등의 복지지원사업’과 중복으로 폐지)

45) 임덕영외 8인, 「2022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성과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11., pp.387.-388.

3. 향후 과제

가. 노숙인 주거지원 제도의 개선방향

‘임시주거비 지원사업’의 시행지역 확대가 필요함

노숙인의 ‘임시주거비 지원사업’ 확대와 관련하여, 동 사업이 서울특별시 등 8개 광역자치단체 외에도 전국적으로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숙인복지법」에서 규정⁴⁶⁾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실태조사에 동 사업이 주요 요소로 반영될 필요가 있음.⁴⁷⁾ 또한, 동 사업과 노숙인복지를 위한 다양한 타서비스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일자리연계 등과의 연계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노숙인복지법」 제1조에서 규정한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울 필요가 있음

한편, ‘임시주거비 지원사업’을 통한 노숙인의 복지는 노숙인으로 복귀하지 않고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함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므로,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장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동 계획에서는 해당 노숙인에 대한 지속적·개별적 사례관리를 통해 주거안정이 가능한 노숙인에 대해서 임시주거비 지원액을 확대하는 방안, 노숙인 등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생계급여, 주거급여, 일자리, 주거상향 지원 등)와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음

나. 노숙인 의료지원 제도의 개선방향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의 폐지가 필요함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와 관련하여, 제21대 국회의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8371호, 발의일 2022년 11월 22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2021년 11월)⁴⁸⁾를 참고하

4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숙인(露宿人)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노숙인 등의 현황·욕구 및 심리와 이들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지원상황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47) 임덕영 외 8인, 「2022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성과평가」, 보건복지부, 2023. 11., pp.381. - 386.

- 4. 핵심과제별 총평 및 중앙-지자체 평가 중 다. 안정적인 생활 및 주거지원, 3-2. 서비스와 주거를 결합한 지원 확대에서의 지적사항

. 보건복지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임시주거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제2차 종합계획에 의한 지원주택 지원이 아닌 주거지원 대상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따라서, 임시주거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수립에 포함하여 성과평가에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48)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2021. 11. 18.)

여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의 폐지를 위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개정검토가 아래와 같이 필요함

■ 노숙인 진료시설 폐지관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관련 참고사항 ■

현 행	개정안
제12조(의료지원) ① (생 략)	제12조(의료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삭 제>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처치와 수술 등을 필요로 하는 노숙인 등에 대한 전문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에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제1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정기준 등 노숙인 등에 대한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의 료서비스의 의뢰·위탁 절차----- -----.

※ 자료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8371호, 발의일 2022년 11월 22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노숙인 의료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지원 및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함. 이는 노숙인 중 건강관리 취약성이 높은 일부 거리 노숙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질 높은 전문적인 진료와 돌봄 제공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회 취약계층 진료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건강안전망병원(가칭)’으로 하여 의료서비스 질을 인증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관련된 여러 해당 의료기관들과 노숙인 지원기관들이 공식적인 협력 관계를 맺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⁴⁹⁾

다. 노숙인 고용지원 제도의 개선방향

중앙정부의 노숙인 일자리사업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노숙인의 위기 상황이 노숙상태로 다시 이어지지 않도록 경제적 활동 및 최소한의 소득보장 등 예방적 사회안전망 구축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노숙인 계층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의 효과를 지속적

- 제목 : 코로나 19 재난상황에서 노숙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49) 이태진 외 12인, 「노숙인 의료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2022. 12., pp.313.-314.

으로 평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동 제도 I 유형의 대상인 저소득층 중 노숙인과 II 유형의 대상인 비주택거주자 중 노숙인에 대한 취업상황을 별도로 통계관리 및 평가하여 성과를 표출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특히 노숙인 일자리사업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체계를 개선하여 두 부처간에 협의회 구성을 통해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의 일원화를 추진하여 노숙인 일자리 확대에 연결될 수 있도록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일본의 사례⁵⁰⁾에서는 노숙인의 일자리 요구와 정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절차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고용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후생노동성 직업 안정국에서 ① 구인개척이나 인터넷 등을 활용한 구인 정보 등의 수집 및 제공, ② 자립지원센터 등을 통해 직업상담 제공, ③ 노숙인의 취직 후 직업 정착을 위해 직장 정착지도 등의 원조 제공, ④ 노숙인의 조기 취업 실현 및 고용 기회 창출을 위하여 연계된 사업소에 인턴십 프로그램 진행, ⑤ 협의회를 구성하여 직장, 인턴십, 취업 지원 세미나 등을 실시,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비영리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협동조합 등을 통해 ‘생활곤궁자 취업 지원 사업’과 ‘생활곤궁자 취업 훈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50) 일본 후생노동성「ホームレスの自立の支援等に関する基本方針に定める施策に関する評価書, pp.1.-7.」(최종검색일 : 2024년 8월 14일),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hukushi_kaigo/seikatsuhogo/homeless/index.html>

토 론 문

오 건 호 정책위원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양극화 대응, 기득권 틀을 넘어서야

양극화 대응의 근본적 재인식

- 한국사회 양극화가 고착화되어 있음. IMF 금융위기 이후 양극화 경향이 심화되고 노무현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공론화된 이후, 정부마다 양극화를 강조하며 대응 정책을 펴고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함.
- 2010년 이후 복지 확대에 따라 가처분소득에서 양극화가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그 효과가 크지 않아 고착화된 격차, 불평등 구조는 한국사회의 일상이 되어버린 현실임. 이로 인해 신뢰를 지닌 미래 비전을 제안하기 어렵고 ‘헬조선’ 담론까지 형성되어 있음.
- 게다가 빠른 인구 고령화와 높은 노인빈곤,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격차 확대, 자산불평등의 세대 이전 등 양극화 구조를 심화시킬 요인들이 포진해 있음.
- 이는 기존의 양극화 대응 방식으로는 한국사회 양극화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양극화는 현행 사회경제의 기득권구조가 재생산된 결과라는 점에서, 또한 정치체제가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주류 정치세력들이 기득권구조를 온존하는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점에서(피케티의 브라만 좌파와 상인 우파의 엘리트 정당체제), 앞으로 양극화 대응에 있어서 근본적 재인식이 요구됨.
- 이에 이 토론문은 기존 노동, 사회보장 제도의 부분적 개선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전환을 제안하고자 함.

자산불평등 대응: 부동산 가격 유지 혹은 하향

- 한국사회 불평등은 소득과 자산에서 나타남. 발표문이 지적하듯이, 소득과 자산 중 자산에서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이는 부동산 자산가격 상승이 자산에서의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
- 한국의 주류 정치세력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부동산시장 ‘부양’을 기본 정책 방향으로 삼고 있음. 서민주거 안정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으며, 윤석열 정부는 모처럼의 하향 국면을 부양책을 통해 다시 가격 상승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음. 주류 정치세력의 부동산 가격 상승 정책이 지속되는 한, 한국사회 자산 불평등은 개선되기 어려움.
-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점진적 ‘하향 안정화’ 방향 혹은 최소한 ‘가격 유지’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선언하고 정치세력은 이 방향으로 일관된 정책을 펴 나가야 함.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금융 유동성을 엄격히 관

리하고(대출, 금리 정책), 부동산 거래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며(양도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가 자리잡을 때까지는 부동산 보유세도 강화해야 함.

- 부동산 가격의 하향은 주택소유 계층의 이해에 반하나 거꾸로 무주택자, 즉, 주거서민계층의 이해를 증진하며 자산불평등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임. 앞으로 부동산 소유 계층의 동의를 이끌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 유지(하향) 안정화 계획을 수립하고, 시기별 민원에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정책 추진이 요구됨('부동산 불패론' 타파).

소득불평등 대응: 노동권 강화, 최저소득보장

- 소득불평등은 노동시장에서의 1차 분배와 공적 사회보장을 통한 2차 분배의 결과임.
- 우선 노동시장 1차 분배에서의 소득 빈곤이 불안정 지위에 있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우리 사회에서 불안정 노동자를 헐값으로 사용하는 관행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인권의 문제이기도 함. 이에 불안정 노동자의 노동권을 강화하여 노동 몫을 정당하게 분배받고, 사용자는 노동자의 권익을 존중하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해야 함.
- 구체적으로, 사실상 노동자성을 지니고 있는 노무제공자, 즉 실제 노동과정에서 사용자가 존재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모두 노동법(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하고,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조항(부당해고, 연차휴가 등)들도 폐지해야 함. 나아가 다수의 사용자 혹은 이용자가 존재하는 프리랜서, 독립사업자 등도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들도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함. 이를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 모두를 포괄하는 '일하는 시민의 노동기본법' 제정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사회보장에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의 최저소득보장이 요구됨. 현재 사회보험은 '고용' 지위에 따라 적용 여부가 정해지기에 다수 불안정 노동자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버림. 다행히 2020년 코로나19를 계기로 '전국민 고용보험', '실시간 소득파악'이 부상하면서 '고용' 기반에서 '소득' 기반으로 사회보험체제를 전환하는 '전국민 사회보험'이 논의되고 있음. 한국의 과세행정 인프라가 전면적인 전자거래를 토대로 구축된 강점을 지니기에 정부가 실시간 소득파악에 적극 나서면 '사각지대 없는 전국민 사회보험'이 가능할 것.
- 또한 실시간 소득파악으로 시기별 시민의 소득이 명확하게 파악된다면, 역소득세(Negative Income Tax) 방식의 최저소득보장도 시행할 수 있음. 만약 기존 중위소득 100%에서 지급률 50%의 역소득세가 실현된다면 이론적으로는 '상대적 빈곤 제로'도 지향할 수 있음. 이를 위해 저소득층 소득보장을

위해 운영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 긴급복지제도 등의 통합 조정될 것이며, 이는 소득보장에서 제도단순화, 낙인 최소화, 최저소득보장 등의 효과를 낼 것임.

부 록

- ◆ 연구회 소개
- ◆ 연구회 토론회 개최 연혁
- ◆ 공지사향
- ◆ 협력기관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설립목적 :

대한민국이 선진복지국가로 가는데 필요한 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를 위한 각종 연구, 조사, 계몽 활동 및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파악 및 해소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고 이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목적으로 함.

연 혁 :

- 2009. 10. 15 창립
- 2011. 1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경기도 제 1237호)
- 2012. 10 법인설립허가 (경기도 제 2012-01-90호)
- 2013. 07 기획재정부 지정기부단체 등록
- 2014. 09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시민사회소통부 협력단체
- 2014. 11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보건복지부 제 196호)
- 2013~ 『제 2인생 설계를 위한 전문가 과정』
- 시니어LIFE코디네이터 자격증 수여/보건복지부 승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등록번호2015-001578)
- 2009. 10~ 분기별 복지 현안정책 토론회 개최
- 2014~ 성남시 사회복지박람회 부스 운영 참가
- 2015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휴먼네트워크 멘토링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 2016 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나눔국민운동본부 권역별 나눔교육 수행기관 (보건복지부)
통일부 『통일박람회』참가-부스명: 통일이랑 복지랑 step by step!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방출물 모니터링사업
제 7 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부스운영-부스명: 오병이어를 만드는 사람, 사람들
- 2017 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지원사업 선정
나눔국민운동본부 권역별 나눔교육 수행기관 선정(보건복지부)
제 8 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부스참가
하반기 경기도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 선정
- 2018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경기도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선정
나눔교육운동본부 생애주기별 나눔교육 선정 (보건복지부)
제 9 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부스참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스마트 기술 및 조달전시회 컨퍼런스
- 2019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제 10 회 대한민국나눔대축제 부스 운영
제 5 회 (그를함)청소년과 중장년층이 함께 하는 멘토링 공감여행
제 5 회 중장년세대 Begin 한마당(9.28)
창립 10주년 기념 사회복지미래를 위한 Talk 콘서트
- 2020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나눔교육운동본부 생애주기별 나눔교육 선정 (보건복지부)
제 6 회 (그를함)청소년과 중장년층이 함께 하는 멘토링 제주공감여행
제 6 회 중장년세대 Restsrt 한마당
제 11 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 2021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기획재정부 지정기부단체 재허가(12.31)
제 12 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제 7 회 어르신과 중장년층이 함께 하는 농촌일손돕기 및 멘토링 공감여행
제 7 회 중장년세대 앙코르 한마당
제 12 회 대한민국나눔대축제 (12.8)
기획재정부공익법인 기부금단체재지정(12.31)
- 2022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8년 연속)
제 8 회 중장년세대 Re-Challenge 한마당
정책토론회 5회 개최
- 2023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지역발전운영자금지원사업 선정
제9회 중장년여성과 노인세대가 함께 하는 상.하반기 멘토링 공감여행
성남시립도당분당동지역아동센터, 성남시다함께돌봄센터3호점 수탁법인
- 2024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지역발전운영자금지원사업 선정
제10회 중장년여성과 노인세대가 함께 하는 상.하반기 멘토링 공감여행
산업현장견학 및 워크샵
성남시 은행1동 독거어르신 심리·정서지원을 위한 멘토링 사업 (5월~12월)

■ 연구회 토론회 개최 연혁 ■

● 2024. 12. 20 (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주제 : 한국사회의 양극화 심화에 따른 위기진단과 사회보장 대응방향

주제발표자 : 김 태 완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 론 자:

1. 강 성 호 선임연구위원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
2. 최 균 교수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3. 김 원 식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4. 오 건 호 운영위원장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주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안 상 훈 국회의원

축사: 김 상 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서 상 목 前 보건복지부 장관

박 강 수 前 배재대학교 총장

1부 사회: 김 은 경 호서대학교 겸임교수/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사무국장

2부 좌장: 이 정 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 2024. 10. 29 (화)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

주제 : 노인 돌봄 및 간병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주제발표자 : 유 재 언 교수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1. 서 희 경 시의원 (성남시)
2. 김 현 미 센터장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3. 이 정 우 관장 (분당노인종합복지관)
4. 김 동 희 이사 (대한요양병원협회/로하스용인요양 병원장)
5. 박 진 석 과장 (성남시 노인복지과)

주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축사: 신 상 진 성남시 시장

차 흥 봉 前 보건복지부 장관

박 강 수 前 배재대학교 총장

1부 사회: 김 은 경 호서대학교 겸임교수/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사무국장

2부 좌장: 이 정 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관련 언론기사

<https://www.as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99104> 경인신문

<https://m.goje.co.kr/439> 경기좋은신문

<https://5060career.com/news/view.html?section=111&category=115&no=1233> 커리어매거진

<https://www.newsspace.co.kr/59331> 뉴스공간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173982> 매일일보

<https://www.s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525750> 서울매일

<https://www.seongnamvision.com/35671> 성남비전

<https://www.snillbo.co.kr/47286> 성남일보

<https://www.tcnews.kr/101927> NOW경기

<https://www.senews.kr/22093> 사회적경제뉴스

● 2024. 8. 22 (목)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주제 : 비급여 의료비 관리 및 실손보험제도 개선방안

주제발표자 : 정 형 선 소장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

토 론 자:

1. 여 나 금 연구의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이 주 열 교수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3. 김 원 식 객원교수 (조지아주립대)
4. 신 성 식 복지전문기자 (중아일보)
5. 구 슬 이 보건복지여성팀장 (국회입법조사처)

주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축사: 김 상 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서 상 목 前 보건복지부 장관

1부 사회: 김 은 경 호서대학교 겸임교수/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사무국장

2부 좌장: 이 정 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관련 언론기사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2836> 충청일보

<https://www.snlibo.co.kr/47101> 성남일보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0358> 청년의사

<https://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55380> 한국NGO신문

<https://m.kukinews.com/article/view/kuk202408220177> 쿠키뉴스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172212> 천지일보

<https://medigatenews.com/news/4166852370> 메디게이트뉴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822_0002858869&pc_view=1 뉴시스

https://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317895#google_vignette 녹색경제신문

<https://www.4th.kr/news/articleView.html?idxno=2068221> 포쓰저널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9597> 글로벌경제신문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3338> 뉴스웍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398868> 데일리안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59282 한의신문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461> 복지뉴스

<http://m.sinhannews.com/1073205> 신한뉴스

● 2023. 10. 11 (수)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

주제 : 코로나 이후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정신건강 지원방안 마련

주제발표자 : 배 은 경 교수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1. 김 기 주 부회장 (요양병원협회)
2. 서 희 경 시의원 (성남시의회)
3. 윤 미 정 상임팀장 (성남시 건강복지센터)
4. 신 명 희 과장 (중원노인종합복지관)
5. 남 현 주 교수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주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축사: 신 상 진 성남시 시장

박 은 미 성남시의회 부의장

차 흥 봉 前 보건복지부 장관

1부 사회: 석 춘 지 前성남위례종합사회복지관 관장

2부 좌장: 이 정 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관련 언론기사
성남아름방송 녹화방송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4435> G글로벌경제신문1
<http://www.as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992> 경인신문
<http://m.sisasports.com/29848> 시사&스포츠
http://www.snibo.co.kr/sub_read.html?uid=46070 성남일보
<http://www.sudokwon.com/article.php?aid=1697022233608267013> 수도권일보
<https://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44646> 한국NGO신문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0399> 청년의사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15021> 중부일보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4435> G글로벌경제신문2
<http://www.snjournal.com/35541> 성남저널

● 2023. 07. 06 (목)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주제 : 간호법 대안을 모색하다

- 의료 · 요양 · 돌봄 통합서비스 운영을 위한 해결 과제 -

주제발표자 : 이 주 열 교수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토 론 자:

1. 김 기 주 부회장 (요양병원협회)
2. 이 만 우 선임입법조사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3. 나 임 순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 이 무 열 교수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5. 신 성 식 복지전문기자 (중앙일보)

축사: 서상목 前 보건복지부장관/ 국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주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주관: 국제사회복지협의회

1부 사회: 석 춘 지 (본 연구회 이사 / 前성남시위례종합사회복지관 관장)

2부 좌장: 이 정 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관련 언론기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4535> 중앙일보
http://www.snibo.co.kr/sub_read.html?uid=45760 성남일보
http://www.snibo.co.kr/sub_read.html?uid=45760 데일리안
<https://news.tf.co.kr/read/life/2029224.htm> 더팩트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7070198> 쿠키뉴스
<https://www.news1.kr/articles/?5101848> 뉴스1 1보
<https://www.sedaily.com/NewsView/29S1GE3LVO> 서울경제
https://news.g-enews.com/view.php?ud=202307071618576124f83bf132e7_1&md=20230707165034_U 글로벌이코노믹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70710470871872> 머니투데이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7498> 청년의사
<http://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42433> 한국NGO신문 1보
<https://www.news1.kr/photos/view/?6088118> 뉴스1 2보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2911> G글로벌경제신문
<http://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42331> 한국NGO신문 2보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094> 복지연합신문

● 2022. 11. 16 (수) 광화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제 : 인터내셔널 사회복지와 국제협력

주제발표자 : 황 명 진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토 론 자:

1. 한 창 근 교수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장 영 신 정책연구실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3. 강 대 성 고문 (굿피플)
4. 김 윤 섭 센터장 (고려대학교의료원 사회공헌사업본부 국제협력센터)

주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1부 사회: 김 은 경 교수 (다산경영정보연구원/ 본 연구회 운영위원)

2부 좌장: 이 정 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관련 언론기사

<http://www.ktin.net/62869998> 경인투데이뉴스 1보

<http://www.ktin.net/62869998> 경인투데이뉴스 2보

<http://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36865> 한국NGO신문

<https://munhwa.newscj.com/article/20221117580085> 천지일보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1117000547> 뉴스핌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7297> 복지연합신문

<https://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9413> 환경일보

https://news.g-enews.com/article/General-News/2022/11/20221117102331543f83bf132e7_1?md=20221117123023_U 글로벌이코노믹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6289> G글로벌경제신문

<http://www.snillbo.co.kr/45111> 성남일보

● 2022. 11. 08 (화) 성남시 성남아트센터 사무동 1층 컨퍼런스홀

주제 : 민선 8기 성남시민 맞춤형 사회복지의 과제와 전망

모 두 발언 : 서 민 공동대표 (대안연대/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주제발표자 : 이 준 우 교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토 론 자:

1. 정 효 신 센터장 (굿피플장애인활동지원기관)
2. 석 춘 지 前성남위례종합사회복지관 관장
3. 박 영 애 前성남시의원
4. 조 기 흥 회계사
5. 남 천 우 관장 (상대원1동 복지회관)
6. 허 은 국장 (성남시 복지국)

공동주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성남시민연대, 대안연대

1부 사회: 문 승 권 원장 (다산경영정보연구원/ 본 연구회 운영위원)

2부 좌장: 이 정 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행정안전부

※성남아름방송

● 2022. 10. 26 (수) 국회의원회관 제 9 간담회의실

주제 : 제 3의 송파, 수원 세모녀 사건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제 1주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 한 소득보장제도 개선방향

주제발표자 : 윤 성 원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토 론 자: 이 정 은 권익옹호 부장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제 2주제 : 세모녀의 사회복지-현실과 대책

주제발표자 : 정 재 훈 교수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김 태 완 연구실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평등연구실)

공동주최: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축 사: 김 미 애 국회의원, 이 종 성 국회의원

1부 사회: 석 춘 지 前성남시위례종합사회복지관 관장)

2부 좌장: 이 정 숙 사)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관련 언론기사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33995> 글로벌이코노믹

<https://news.zum.com/articles/79097202> 뉴스핌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3962> G글로벌경제신문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7050> 환경일보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36449 한국NGO신문

<http://www.k-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61723> 헬스경향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240> 스트레이트뉴스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10260095> 쿠키뉴스

<http://www.bokin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6975> 복지연합신문

<https://www.natv.go.kr/natv/news/newsView.do?newsId=504787> 국회방송

● 2022. 06. 29 (수)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

주제 : 한국연금체계의 개혁방향과 과제

주제발표자 : 오 건 호 정책위원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토 론 자:

1. 김 원 섭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2. 강 성 호 박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 주 은 선 교수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공동주최: 성 일 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축 사: 권 성 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강 기 윤 국회의원

1부 사회: 김 은 경 교수 (삼육대학교/ 본 연구회 사무국장)

2부 좌장: 이 용 하 前 국민연금연구원 원장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관련 언론기사

<http://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7130> 충남일보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33995> 이코노미뉴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189> 여성신문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6290157> 쿠키뉴스

<https://www.news1.kr/articles/?4725157> 뉴스1

<http://www.newstnt.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246> 뉴스티앤티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6/570759/> 매일경제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8926> 충청일보

<https://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9459> 내외경제TV

<http://www.eopennews.com/news/view.php?no=30522> open뉴스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34621 한국ngo신문

https://www.asiaailbo.co.kr/posting/_extLink.php/21010100439495 아시아일보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3209> 환경일보

http://www.snibbo.co.kr/sub_read.html?uid=44651 성남일보

https://www.cndnews.co.kr/sub_read.html?uid=349966 뉴스충청인

<http://www.bokin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4540> 복지연합신문

● 2022. 05. 19 (목)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

토코콘서트 주제 : 新국제질서와 한국정치의 도전:

-복지 및 주요 정책과 제도의 정치적 대응력 진단-

○초청강사: 최 연 혁 교수 (스웨덴 린네대학교 정치학과)

○공동주최: 송 석 준 국회의원

○격려사: 차 흥 봉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표이사/前보건복지부장관

○축 사: 서 상 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前보건복지부장관

1부 사회: 안 자 희 박사 (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회: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기사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5170> G글로벌경제신문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5210923386180207> e대한경제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486> 여성신문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3232> 복지연합신문

● 2021. 12. 10 (수)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 제 : 차기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

-사회복지, 보건·의료, 고용·노동, 교육, 주거(부동산)-

○기조발제 및 사회복지: 최 균 교수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보건·의료: 이 기 효 교수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고용·노동: 이 지 만 교수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 육: 양 정 호 교수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주거(부동산): 서 진 형 회장 (대한부동산학회/경인여자대학교 교수)

축 사: 김 상 훈 국회의원

1부 사회: 안 자 희 박사 (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회: 김 미 령 소장(대구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기사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12111431412520360> e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12111431412520360> 환경일보
http://www.snibo.co.kr/sub_read.html?uid=44311 성남일보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9677> 시사포커스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4115> 글로벌경제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333> 백세시대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5144> 이로운넷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9151> 복지연합신문

● 2021. 11. 10 (수)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 제 : 복지 포퓰리즘, 어떻게 막을 것인가?

주제발표자 : 김 용 하 교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토 론 자:

1. 조 성 환 교수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 김 정 학 교수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3. 김 상 철 교수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 최 연 혁 교수 (스웨덴 린네대학교 정치학과)

축 사: 김 상 훈 국회의원

1부 사회: 이 윤 진 교수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부 사회: 이 정 숙 회장 (본 연구회 회장)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기사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9/892499/> 데일리안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11131339373320664> e대한경제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1111000503> 뉴스핌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5016> 한경일보
http://www.snibo.co.kr/sub_read.html?uid=44202 성남일보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8342> 시사포커스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9521> 글로벌경제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9880 한국NGO신문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5144> 충청일보
<http://m.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8450> 복지연합신문

● 2021. 10. 19 (화)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 제 : 중장기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 방향

주제발표자 : 김 우 철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토 론 자:

1. 이 태 석 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공공경제연구부)
2. 주 원 실장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3. 이 영 숙 센터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통계연구센터)
4. 정 창 룰 교수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축 사: 이 효 수 전 영남대학교 총장

1부 사회: 김 기 영 겸임교수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본 연구회 이사)

2부 좌장: 황 명 진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기사

http://www.snibo.co.kr/sub_read.html?uid=44116 성남일보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9320 한국NGO신문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10201824522680634> e대한경제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620> 백세시대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676> 복지연합신문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7269> 시사포커스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8325> 충청일보

● 2021. 9. 15 (수)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 제 : 차기 정부의 복지 :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복지플랫폼이 필요하다.

주제발표자 : 김 원 식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통상학과)

토 론 자:

1. 장 영 신 정책연구실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 박 영 용 회장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3. 김 광 병 교수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인천남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4. 김 은 하 센터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연구센터)
5. 이 상 철 실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

축 사: 차 흥 봉 대표이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 원: 행정안전부

1부 사회: 안 자 희 부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2부 사회: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관련 언론기사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9/892499/> 매일경제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33805> 데일리안
<http://www.ngonews.kr/128449> 한국NGO신문
<http://www.snibo.co.kr/44068> 성남일보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09171555584220949> e대한경제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915001201> 뉴스핌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3053> 충청일보

● 2021. 8. 24 (화)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 제 : 코로나베이비, 출생감소 대안은 없나?

주제발표자 : 김 동 섭 교수 (한림대학교 / 前조선일보 논설위원, 보건복지전문기자)

토 론 자:

1. 박 기 남 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국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
2. 이 윤 진 교수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부)
3. 박 선 권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4. 김 충 환 과장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부 사회: 김 은 경 삼육대학교 겸임교수/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사무국장

2부 사회: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관련 언론기사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8/823154/> 매일경제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26177/?sc=Daum> 데일리안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7788 한국NGO신문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300> 복지뉴스
<http://m.snillbo.co.kr/a.html?uid=43991> 성남일보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8281321469870185 대한경제
<https://m.newspim.com/news/view/20210826000451> 뉴스핌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8304> 충청일보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8304> 디지털타임스
<https://www.chosun.com/national/obituary-personnel/2021/08/24/OJCOKU6SNFEP5IIDMLUAXXRBCA/> 조선일보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5372> 환경일보

● 2021. 6. 16 (수)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주 제 : 청년 일자리,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주제발표자 : 김 태 기 명예교수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토 론 자:

1. 김 주 섭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
2. 이 재 모 교수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3. 김 대 광 청년 (취업후 퇴사, 창업/ 챗터서울 대표)
4. 이 형 준 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기사

<http://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1955> 글로벌경제신문
<https://www.dailian.co.kr/news/view/940788/?sc=Daum> 데일리안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1762 한국NGO신문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293> 복지뉴스
http://www.snillbo.co.kr/sub_read.html?uid=43050 성남일보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1291020598640301> 대한경제
<http://www.naewoe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700> 내외일보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058> 백세시대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130000417> 뉴스핌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1/1229533/> 매일경제
<http://www.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84> 실버아이뉴스

● 2020. 11. 26 (목)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주 제 : 고령사회의 노인자원봉사 및 코로나 이후의 활성화 방안

주제발표자 : 김 미 령 교수 (대구대학교 지역사회개발 · 복지학과 / 고령사회연구소장)

토 론 자:

1. 박 양 숙 소장 ((사) 안양시 자원봉사센터)
2. 황 진 수 명예교수 (한성대학교)
3. 우 보 환 본부장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지원부)
4. 박 기 준 과장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관련 언론기사

<http://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1955> 글로벌경제신문
<https://www.dailian.co.kr/news/view/940788/?sc=Daum> 데일리안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1762 한국NGO신문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293> 복지뉴스
http://www.snibo.co.kr/sub_read.html?uid=43050 성남일보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1291020598640301> 대한경제
<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700> 내외일보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058> 백세시대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130000417> 뉴스핌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1/1229533/> 매일경제
<http://www.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84> 실버아이뉴스

● 2020. 10. 08 (목)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

주 제 : 국내외 노인인권 보호증진 활동현황과 노인단체의 역할

주제발표자 : 박 영 란 교수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토 론 자:

1. 한 정 란 교수 (한서대학교 보건상담복지학과/ 한국노년학회 회장)
2. 박 노 숙 회장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관장)
3. 백 승 민 박사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4. 이 동 우 사무관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관련 언론 기사

https://www.chosun.com/national/people/2020/10/08/YI2ZT44U2BA27K5ZDXK4QYIHOQ/?utm_source=daum&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조선일보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253> 복지연합신문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0/1032331/> 매일경제
<http://m.ngonews.kr/120618> 한국NGO신문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1010000108> 뉴스핌
http://m.getnews.co.kr/view.php?ud=EJ0815060348774ecd436290_16 글로벌경제신문
<https://www.dailian.co.kr/news/view/925948> 데일리안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747> 백세시대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0110939375520029> 대한경제
http://www.snibo.co.kr/sub_read.html?uid=42859 성남일보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9211> 충청일보
<http://www.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84> 실버아이뉴스

● 2020. 09. 24 (목)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 제 : 위드코로나 시대의 보건의료 인력정책-국민중심 접근

주제발표자 : 이 기 효 교수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토 론 자:

1. 신 영 석 선임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건강보험연구센터)
2. 정 형 선 교수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과/ 연세대의료복지연구소장)
3. 이 태 윤 기자 (중앙일보 복지행정팀)

4. 홍 선 미 교수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커뮤니케이션 전문위원회 위원장)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 기사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9/988321/> 매일경제
<https://news.joins.com/article/23879571> 중앙일보
<https://www.dailian.co.kr/news/view/922819/?sc=Daum> 데일리안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018> 복지연합신문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7219> 충청일보
http://www.getnews.co.kr/view.php?ud=2020092310485232144ecd436290_16 글로벌경제신문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924001066> 뉴스핌
<http://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871> 병원신문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339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메디파나뉴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3206> 청년의사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4&nid=249511> 약업신문
http://www.snibo.co.kr/sub_read.html?uid=42799 성남일보
<http://www.silv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38> 실버아이TV/NEWS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0423 한국NGO신문

● 2020. 07. 21 (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 제 : 기본소득, 복지정책인가? 포퓰리즘인가?

제 1주제: 기본에서, 기본소득제를 생각한다. 기본소득제를 비판하는 3가지 이유

주제발표자 : 홍 경 준 교수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 오 건 호 공동위원장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제 2주제: 한국복지국가 발전, 사회보장의 강화로 풀어야

주제발표자 : 양 재 진 교수 (연세대 행정학과/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소장)

토 론 자: 1. 윤 홍 식 교수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2. 신 성 식 복지전문기자 (중앙일보)

개 회 사: 김 상 훈 국회의원

축 사: 차 흥 봉 前보건복지부 장관

격 려 사: 이 갑 산 범사회시민단체연합 상임대표

1부 사회: 조 중 근 회장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2부 사회: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 기사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95998940202665018>전기신문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19225 한국NGO신문
<https://www.dailian.co.kr/news/view/906731?sc=Daum> 데일리안
http://www.snibo.co.kr/sub_read.html?uid=42548 성남일보
<http://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073> 경인매일
<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89839> 내외일보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7742> 복지연합신문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720000980> 뉴스핌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12805> 이로운넷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953> 한국정책신문

● 2020. 06. 3 (수)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

주 제 : 코로나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케이션의 역할과 전망

주제발표자: 항 명 진 교수 (고려대학교 공공사회학과장/복지대학원 주임)

토 론 자:

1. 이 진 한 기자 (동아일보 의학전문)

2. 사공 정 규 교수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3. 공 선 희 전문연구위원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4. 임 강 섭 팀장 (보건복지부 커뮤니케이터 추진단)

1부 사회: 김 기 영 교수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부 좌장: 이 정 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김 상 훈 국회의원

협력단체: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사)서울시보건협회

한국사회봉사연합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지난 6월 3일 '코로나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케이터의 역할과 전망' 토론회는 1)본 연구회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과 2)국회방송 주 3)복지 TV 주소를 클릭하시면 본 토론회를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국회방송:

https://www.natv.go.kr/renew09/brd/formation/last_pro_vw_detail.jsp?programId=859&infol=34414&index=942&gotopage=4

복지TV: <https://tv.naver.com/v/14221827>

※관련 언론 기사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91324954199726018> 전기신문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190> 백세시대신문

<http://www.r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373> 농촌여성신문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18585 한국NGO신문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ASM/323188/view> 농민신문

<http://sundaytimes.kr/View.aspx?No=864001> 선데이타임즈

<https://www.dailian.co.kr/news/view/895050?sc=Daumlogo> 데일리안

http://www.snillbo.co.kr/sub_read.html?uid=42348 성남일보

<http://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837> 경인매일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795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메디파나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8083> 의학신문

<http://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53431> 메드포뉴스

http://www.getnews.co.kr/view.php?ud=202006031526242324ecd436290_16 글러벌경제신문

<http://www.naewoo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84830> 내외일보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6731> 복지연합신문

● 2019. 11. 7(목)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주 제 : 사회복지 전문가가 말하는 대한민국 사회복지 현 좌표는?

토크발표자:

1. 차 흥 봉 대표이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전 보건복지부 장관)
2. 김 용 하 교수 (순천향대학교 금융경제학과/ 제 9.10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3. 성 규 탁 교수 (미국남가주대학교 석좌교수/ 글로벌 문화실천나눔포럼 상임대표)
4. 조 성 철 이사장 (한국사회복지공제회설립명예 이사장/ 제 17.18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1부, 3부 사회: 강신성 박사

2부 토크콘서트 진행: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 기사

<http://fnewstv.com/news/newsview.php?ncode=1065590229774209>파이낸셜경제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9111116168042040&outlink=1> Money S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14935 한국NGO신문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5735> 충청일보

<http://www.dailian.co.kr/news/view/841945> 데일리안

<http://www.ngtv.tv/news/articleView.html?idxno=72889> 엔지티브

http://www.snillbo.co.kr/sub_read.html?uid=42348 성남일보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73518309189542096> 전기신문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3526> 복지연합신문

● 2019. 07. 17(수)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

주 제 : 포용적 복지 정책과 지속가능성

주제발표자: 김 용 하 교수 (순천향대학교 금융경제학과)

토 론 자:

1. 조 중 근 교수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2. 신 소 정 교수 (가톨릭관동대학교 치매전문재활학과 학과장)

3. 김 동 섭 논설위원 (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 기사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563944931183318035> 전기신문
http://www.wngo.kr/sub_read.html?uid=112406 한국NGO신문
<http://www.focus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79> 포커스투데이
<http://www.globalnewsagency.kr/news/articleView.html?idxno=124572> GV글로벌뉴스통신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881> 백세시대신문
<http://www.dailian.co.kr/news/view/811721/?sc=naver> 데일리안
<http://www.nw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278> 내외통신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1244> 복지연합신문
<http://www.silv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35> 실버아이뉴스
http://www.snlibo.co.kr/sub_read.html?uid=42348 성남일보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7906> 국제신문

● 2019. 05. 09(목)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노인연령 상향 쟁점과 정책과제

주제발표자: 정 순 돌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1. 김 미 령 교수 (대구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장)
2. 이 상 이 교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3. 황 남 희 연구의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고령사회연구센터)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 기사

<https://news.v.daum.net/v/20190509143641930?f=o>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https://news.v.daum.net/v/20190509143644931?f=o>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9051011178029947&outlink=1> 머니S
http://www.wngo.kr/sub_read.html?uid=111052 한국NGO신문
<http://www.dailian.co.kr/news/view/794496> 데일리안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235> 백세시대신문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0038> 복지연합뉴스
<http://www.silv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75> 실버아이뉴스
<http://www.ngonews.com/news/article.html?no=13751> 시민운동연합신문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58086391179232018> 전기신문
http://www.snlibo.co.kr/sub_read.html?uid=40346 성남일보

● 2018. 10. 16(화)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제 1 주제 : ‘노인 자살률 낮출수 없나?’

-대인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주제발표자: 현 명 호 교수(중앙대학교 심리학과)

토 론 자: 양 두 석 교수(안실연 자살예방센터장)

제 2 주제 : ‘한국 노인의 고령화 과정에서의 자살 위기진단’

-나이 들에 대한 사회적 통증과 배제

주제발표자: 박 지 영 교수(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 김 종 래 대표(복지연합신문)

1부 사회 : 문 승 권 박사 (본 연구회 운영위원)

2부 사회 : 조 성 철 (前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복지TV, 백세시대신문, 한국고령화산업포럼, 생명연대

● 2018. 05. 02 국회의원회관 제 3 간담회의실

주 제 : ‘정치제도의 개혁, 사회복지발전에 왜 필요한가?’

주제발표자: 홍 경 준 교수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사)좋은나라 연구원 이사장)

토 론 자:

1. 양 재 진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행정학과/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 소장)
2. 정 종 훈 기자 (중앙일보)
3. 노 대 명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부 사회: 이 진 박사 (국회 사무처 정책연구위원)

2부 사회: 김 진 학 박사 (본 연구회 이사/ 전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 2017. 10. 17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과 건강 -장기요양보험과 중장년 실업대책 및 재교육-

제 1 주제 :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선진적 운영방식 모색

주제 발표자 : 선 우 덕 명예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 :

1. 서 동 민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김 동 섭 보건복지전문기자 (조선일보)
3. 유 승 호 교수 (건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성북구치매지원센터장)

제 2주제 : 중장년 실업대책과 재교육운영방식 모색

주제발표자 : 김 영 생 선임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토론자 :

1. 한 국 은 초빙교수 (송실대학교)
2. 최 상 덕 연구위원 (한국교육개발원)
3. 지 은 정 부연구위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동주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한국사회복지포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사)좋은나라연구회, 리더십한림원, 사회복지교육실천포럼

후 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 2017. 06. 29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기조 발제 및 좌장: 노인복지정책 방향: 고령인력 참여복지(Smarter Ageing)

-정 경 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회 원장

제 1주제 : 사회복지서비스 과제: 복지체감도와 현실성

주제발표자: 김 미 혜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제 2주제 : 문재인정부의 노인 건강과 돌봄의 공약에 대한 평가와 과제

주제발표자: 전 용 호 교수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제 3주제: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과 복지재원 조달방안

주제발표자: 김 재 진 선임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

공동주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리더십한림원, 사회복지교육실천포럼, 한국사회복지포럼

후 원 : 행정자치부

● 2017. 02. 23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프리미엄 특강 1. 한국 복지정책의 효율성-균형의 길

-정 경 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프리미엄 특강 2. 한국사회복지 미래와 과제

- 김 진 수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주 최 : 사) 선진복지사회연구원

후 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2016. 12. 02 광화문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위기의 한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제 1주제 : 일과 빵의 균형개혁

주제 발표자 : 정 경 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토론자 : 김 도 형 (한림대학교 겸임교수)

제 2주제 : 특권과 반칙없는 공정사회

주제 발표자 : 고 재 방 (전 교육부 차관보)

토론자 : 최 영 관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1, 2 부 사회 : 이 정 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원

공동주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원, 리더십한림원

● **2016. 11. 24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 제 : 2016 청소년유해방출물모니터링사업 결과 보고 겸한 토론회

주제발표자 : 성 윤 숙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토론자 :

1. 김 경 수 대학생(단국대학교 경영학과)
2. 최 옥 주 교수(건국대학교 영육아보육학과)
3. 박 열 규 강사(경민대학교 효충교육원)
4. 박 찬 균 편집국장(복지연합신문)
5. 한 병 재 감사(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성남지소)
6. 양 혜 지 간사(선진복지사회연구원)

사 회 : 박미출 원장(한국정책연구원)

후 원 : 여성가족부, 국민대통합위원회

● **2016 .10.26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 제: 고령화시대의 보건의료 과제와 정책제안

주제발표자: 이 진 석 교수 (서울대 의대)

토 론 자:

1. 이 진 한 차장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2. 정 순 둘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박 은 자 센터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 보건의료정책연구실)
4. 최 기 춘 실장 (건강보험공단 보험정책연구실)

후 원 : 행정자치부, 국민대통합위원회

● 2016. 06. 21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 제 : 중장년층의 주거복지 정책과제와 대안

발제 1 : 신 성 식 기자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부국장)

발제 2 : 이 연 숙 교수 (연세대학교 주거복지연구단 단장)

패널 :

1. 박 신 영 소장 (한국도시연구소)
2. 구 혜 영 교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박 재 만 과장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1부 사회 : 고 은 지 박사(본 연구회 이사/ 어린이집 원장)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민대통합위원회

*** e-run TV인터넷 생방송, 데일리안, 한국 NGO 신문 외 5개 언론보도

● 2016. 02. 03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 공동주최: 이주영의원실

주 제 : 중앙-지방간 복지재정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주제발표자 : 류 진 석 교수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1. 신 성 식 중앙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논술위원)
2. 김 태 일 교수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3. 천 우 정 심의관 (국회사무처 행정법제)
4. 박 인 환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
5. 고 경 환 실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연구실)

축 사 : 김 무 성 새누리당 당대표

서 상 목 前 보건복지부장관/ 지속기능경영재단 이사장/ 본 연구회 고문

김 득 린 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송암복지재단 이사장

1부 사회 : 조 명 숙 교수(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회 : 황 명 진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 국회방송, 한국정책방송 중계, 성남일보, e-runtv 인터넷 생중계

* 중앙일보 등 다수 언론에 노출 됨

● 2015. 10. 22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 현황과 제안

(*토론책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으로 제공)

주제발표자 : 김 주 섭 선임연구원 (한국고용노동연구원)

토론자 :

1. 이 준 우 교수(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김 정 태 센터장(서울시 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
3. 김 동 준 센터장(전경련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4. 정 양 범 부장(매일경제 생애설계센터 센터장)

5. 이 수 민 (국민연금서울북부지역본부 본부장)

축 사 : 서 상 목 前 보건복지부장관/ 지속기능경영재단 이사장/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최 옥 주 (본 연구회 부회장/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2부 사회 : 이 정 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 행정자치부,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 2015. 7. 9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 준비 실태와 정책과제

(*토론회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으로 제공)

주제발표자 : 정 경 희 센터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고령사회연구센터)

토론자:

1. 김 헌 수 박사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 팀장)

2. 이 상 철 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

3. 김 경 록 소장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축 사 : 김 영 래 현 아주대 명예교수/ 전 동덕여대 총장

조 성 철 본 연구회 고문/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1부 사회 : 고 은 지 (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회 : 이 정 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 행정자치부

협 찬 : 국민연금공단

*** 연합 외 12개 언론 기사

● 2015. 2. 26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북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중심으로

(*토론회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

주제발표자 : 최 균 교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원장/ 한림대학교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1. 고 수 석 연구위원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2. 유 근 춘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 은 주 소장 (통일준비위원회 사회문화분야 전문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소)

4. 김 원 섭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5. 은 성 호 과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과)

축 사 : 유 지 수 총장 (국민대학교)

1부 사 회 : 조 명 숙 교수 (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 회 :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14. 10. 22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토론책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으로 제공)

주제 발표자 : 김 진 수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좌 장 : 도 미 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남서울대학교 교수

토론자 :

1. 김 재 진 박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2. 최 진 봉 교수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3. 유 근 형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축 사 : 박 범 진 이사장 (미래정책연구소/ 선진복지사회연구회 고문)

사 회 : 김 혜 숙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2014. 6. 20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주제 발표자 : 황 명 진 교수(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좌 장 : 도 미 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남서울대학교 교수

토론자 :

1. 양 점 도 교수 (한국복지행정학회 회장/ 경북대학교 교수)
2. 구 종 회 석좌교수 (동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3. 양 성 근 회장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4. 권 오 영 변호사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5. 이 동 우 사무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축 사 : 최 성 균 회장 (한국사회복지미래경영협회)

사 회 : 김 준 경 교수 (남서울대학교)

● 2014. 4. 30 토론회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관 501호

제 1 주제: ‘저출산 원인과 대책’

주제 발표자: 양 찬 희 과장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제 2 주제: ‘출산장려를 위한 일가정 양립정책’

주제 발표자: 이 삼 식 박사 (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장)

제 3 주제: ‘출산장려를 위한 보육 및 일가정 양립정책’

주제발표자: 도 미 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남서울대학교 교수

좌 장 : 김 한 곤 회장 (한국인구학회/ 영남대학교 교수)

토론자:

1. 박 미 숙 과장 (천안시 여성가족과)
2. 김 태 희 교수 (백석문화대 /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장)
3. 이 명 숙 교수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4. 이 은 하 분과장 (천안시 어린이집 연합회 가정분과)

축 사 : 공 정 자 총장 (남서울대학교)

주 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천안시, 남서울대학교

후 원 : 보건복지부

● 2013. 11. 14 (목)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의 정책과제와 대안

주제 발표자 : 강 명 순 이사장 (사단법인 세계빈곤퇴치회)

토론자 :

1. 박 병 현 교수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이 태 진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3. 서 병 수 소장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축 사 : 조 성 철 회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 영 숙 (전 세종대학교 총장/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김 혜 숙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부 사회: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 국민연금공단

● 2013. 7. 5 (금)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창조경제를 통한 한국형 복지전략

주제 발표자 : 안 상 훈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위원장)

토론자 :

1. 김 정 근 박사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 수석연구원)
2. 최 균 교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원장/한림대학교사회복지학과)
3. 이 창 곤 소장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4. 유 종 일 교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5. 허 재 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축 사 : 차 흥 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본 연구회 고문

오 영 숙 전 세종대학교 총장 /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정 윤 경 소장 (말샘/글샘언어교육연구소/ 본 연구회 운영위원)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후 원 : 현대자동차

● 2013. 3. 7(목) 사단법인 허가 및 창립 3주년기념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주 제 :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주요 대선복지공약을 중심으로

주제발표자 : 허 준 수 교수(숭실대 사회복지학부/경실련사회복지위원장)

토론자 :

1. 신 성 식 기자 (중앙일보 사회복지전문)
2. 정 은 상 님 (일반시민패널공모 선정)
3. 현 진 권 소장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4. 김 동 열 실장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수석연구원)
5. 김 명 훈 박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제도위원장/강남세브란스병원사회사업팀장)
6. 김 재 진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축 사 : 차 흥 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 성 호 행복세상 이사장(전 법무부장관)

김 영 래 동덕여자대학교 총장 (전 한국매니페스트실천본부 상임공동대표)

오 제 세 국회의원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축시낭송 : 정 윤 경 (본 연구회 운영위원)

1부 사회 : 도 미 향 교수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영동대학교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후 원 : 국민건강보험

● 2012. 10. 25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주제 발표자 : 신 영 석 부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 :

1. 김 동 섭 조선일보 사회복지전문기자
2. 이 준 우 교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3. 조 중 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4. 박 민 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
5. 김 선 희 한노총 사회정책국장
6. 윤 철 수 의료개혁국민연대 대표

축 사 : 김 정 례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 양 근 강남대학교 부총장 /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나 임 순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 흙플러스

● 2012. 6. 26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

주제 발표자 : 이 준 영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1. 신 인 석 교수 (중앙대 경영학과)
2. 이 의 영 교수 (경실련 전 상집위원장/ 군산대 경제학과)
3. 김 광 기 경제선임기자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부소장)

축 사 : 심 윤 중 총장(前 성균관대학교 / 국민희망포럼 이사장)

임 성 택 총장 (그리스도대학교)

1부 사회 : 진 석 범 교수 (동서울대학교 실버복지학과/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미래정책연구원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을 통해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 2012. 3. 9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의 모색

주제 발표자 : 홍 경 준 교수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1. 박 미 출 (일반시민토론자 신청공모자에서 선정)
2. 허 준 수 교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송실대 사회복지학과)
3. 이 정 한 과장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4. 박 기 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본 연구회 이사)
5. 류 기 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축 사 : 조 성 철 회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박 인 복 회장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구 본 흥 사장 (cts기독교TV)

최 란 이사장 (대한민국 서울문화예술협회)

1부 사회 : 나 임 순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고용노동부, CTS기독교TV

협 찬 : 대구은행

*** 연합, 뉴시스 및 5개 언론 기사

● 2011. 12. 20 창립 2주년 겸한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누가, 어디에 기부하고 자원 봉사하는가?-나눔 주제 및 선호에 대한 이해

주제발표자: 강철희 교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1. 강 학 봉 사업본부장 (사회공동모금회)
2. 임 해 성 팀장 (보건복지부 나눔정책팀)
3. 곽 대 석 사무국장 (cj 나눔 사무국)
4. 김 현 옥 회장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5. 안 명 옥 前국회의원/나눔공동체

축 사 : 차 흥 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본 연구회 고문)

김 원 길 (전 보건복지부 장관)

오 영 숙 (전 세종대 총장/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석 말 숙 교수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보건복지부, IBK기업은행, CTS기독교TV

축 가 : 소프라노 이윤순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 'Memory'(추억), <갯츠>

*** 연합 및 언론사 6기사보도

● 2011. 9. 27 토론회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한국 복지재정의 효율성 및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

주제발표자 : 고 영 선 연구본부장 (한국개발연구원)

토론자 :

1. 박 용 오 사무총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 홍 백 의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김 재 진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예산분석센터장)
4. 장 상 수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선무

축 사 : 심 윤 중 前 성균관 대학교 총장/국민희망포럼 이사장

1부 사회 : 박 서 영 교수 (신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박 기 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본 연구회 이사)

후 원 : SK사회적기업지원단

*** 뉴시스 및 연합뉴스 등 5개 언론사기사

● 2011. 6. 14 토론회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

주제 발표자 : 김 용 하 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 :

1. 김 미 혜 교수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2. 이 기 영 단장 (보건복지부 베이비부머정책기획 총괄)
3. 우 재 룡 소장 (삼성생명은퇴연구소)
4. 최 용 민 님 (베이비부머해당 토론회 신청공모에서 선정된 일반시민)

축 사 : 김 성 이 前 보건복지부 장관

조 성 철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회장

오카리나 특별연주 : 오영숙 前세종대 총장(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진 석 범 교수 (동서울대 실버학과)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삼성생명, 한국경제신문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을 통해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뉴시스 및 6개 언론사 기사 게재

● 2011. 2. 17 토론회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주 제 : 저출산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

주제발표자 : 이 삼 식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

토론자 :

1. 정 영 훈 과장 (대통령직속기관 미래기획위원회 사회복지정책과)
2. 도 미 향 교수(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3. 안 명 옥 이사장 (한국여성인권진흥원/17대 국회의원)
4. 류 기 정 사회정책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축 사 : 진 수 희 보건복지부장관

차 흥 봉 회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前 보건복지부장관)

오 영 숙 총장 (前세종대총장)

축 가 : 장 선 주 (바리톤). 이동형(테너)

1부 사회 : 도 미 향 교수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보건복지부, 대통령미래기획위원회, 롯데백화점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을 통해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데일리안, 뉴시스, 뉴일리, 조선일보

● 2010. 10. 01 토론회 성남시청 3층 대회의실

주 제 : 고령화시대 경제성장의 뒷안길에 선 한국 노인들

주제 발표자 : 최 성 재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사장)

토론자 :

1. 나 임 순 교수 (백석대학교)
2. 신 영 석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
3. 곽 순 현 서기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4. 김 영 진 회장 (성남시 노인복지시설연합회)

축 사 : 차 흥 봉 前 보건복지부 장관 (2013년 세계노년학·노인의학대회 대회장)

1부 사회 : 박 기 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성남시, S·K사회적기업지원사업단

● 2010. 07. 12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한국적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자 : 정 무 성 원장 (前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위원)

토론자 :

1. 박 헌 준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적기업지원센터소장)
2. 김 재 춘 정책국장 (아름다운가게)
3. 정 태 길 사무국장 (함께 일하는 재단)
4. 박 찬 민 총괄실장 (S·K사회적기업지원사업단)
5. 윤 준 현 대표 (주)에이스푸드
6. 모 동 희 대표 남한산성반딧불이학교(예비사회적기업)

축 사 : 오 영 숙 전 세종대 총장

축사문 보내주신분 : 오 세 훈 서울시장, 이재선 국회보건복지위원장

1부 사회 : 이 승 훈 교수 (국제대학교)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을 통해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 2010. 02. 25 토론회 성남 신청사 대강당(온누리관)

주 제 :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과 지역복지발전의 과제

주제 발표 : 백 종 만 학장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토론자 :

1. 진 석 범 교수 (동서울대학교)
2. 장 향 만 사무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지역복지과)
3. 이 애 련 교수 (경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4. 장 윤 영 도의원 (한나라당)
5. 지 관 근 시의원 (민주당)

축 사 : 장 석 권 前 단국대 총장

김 경 우 회장 (성남시 사회복지연합회/을지대 교수)

● 2009. 12. 10 오전 11시, 창립기념 제 1차 토론회

주 제 : 미래한국 복지건설을 위한 신구상

주제 발표자 : 강 옥 모 교수 (국립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1. 김 병 숙 교수 (건국대학교행정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2. 김 창 남 교수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정치학박사)
3. 조 순 태 소장 (강남성폭력상담소, 한국사회문제연구원)
4. 정 무 성 교수 (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축 사 : 박 범 진 前 총장 (한성디지털대학교/ 현 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

□ 공 지 사 항 □

2024년 크고 작은 사건, 사고 등이 많이 있었지만, 가장 어려웠고 힘든 일은 유난히 길었던 여름 날씨 더위와 연말 계엄선포로 인한 대통령의 탄핵 정국 혼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격변기에 있었던 올 한 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에 참여와 격려,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밝아 오는 2025년 을사년은 저희 법인이 창립 16주년 되는 해입니다.

2025년 새해에는 저희 법인이 더욱 심기일전하여 대한민국이 선진복지국가 되도록 미력하나마 일조를 다 하는 해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 건강하시고 소원하시는 일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12. 20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올림

*아래 주소를 클릭 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뀔 수 있습니다.

- 1) https://www.youtube.com/channel/UCVqg_WH11FaBCAx-KZ3lnKg 유튜브 주소
- 2) www.sswkorea.org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
- 3) 예약된 Zoom 회의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Zoom 회의 참가 <https://us02web.zoom.us/j/9959424971> 회의 ID: 995 942 4971

● ‘한국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2010.7.16), ‘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2011.2.18),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2011.6.15), ‘경제민주화를 통한복지의 이상과 현실’(2012.6.29) 토론회를 MBC뉴스 토론회 풀영상 이나 본 연구회 홈페이지에서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 2014.10.22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2015.2. 26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북한의 사회안정망 구축을 중심으로』, 2015.7.9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정책과제』, 2015.10.22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일자리정책의현황과 정책제안』 토론회자는 국립중앙도서관 요청으로 도서관법 제 20조근거로 보존 ,전수, 이용 되고 있습니다.

● 2020년 6월 3일 '코로나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티케어의 역할과 전망' 토론회는 1)본 연구회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과 2)국회방송 주소 3)복지 TV를 클릭하시면 본 토론회를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6월 29일 '한국연금체계의 개혁방향과 과제' 케어의 역할과 전망' 토론회는 1)본 연구회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과 2)국회방송 주소를 클릭하시면 본 토론회를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1) 연구회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www.sswkorea.org

2) 국회방송 https://www.natv.go.kr/renew09/brd/formation/last_pro_vw_detail.jsp?programId=859&infol=34414&index=942&gotopage=4

● 2022년 10월 26일 '제 3의 송파·수원 2모녀사건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토론회는 1)본 연구회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과 2)국회방송 주소를 클릭하시면 본 토론회를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1) 연구회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www.sswkorea.org

2) 국회방송 https://www.natv.go.kr/renew09/brd/formation/last_pro_vw_detail.jsp?programId=859&infol=34414&index=942&gotopage=4

■ 협력 기관 ■

유한대학교 (총장 이 권 현)
사회안전범국민포럼 (상임대표 백 봉 현)
사)화순군 귀농귀촌정보센터 (센터장 전 승 규)
사)한국사회교육복지회 (대표 최 용 희)
사)한국유스호스텔 연맹 (총재 임 성 준)
서울문화예술 대학교 실버문화경영학과 (학과장 조경훈)
사회복지교육실천포럼 (회장 성 규 탁)
사)여성자원금고 (이사장 김 근 화)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 (회장 박 춘 선)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센터장 강 경 아)
남서울대학교 복지경영대학원 코칭학과 (학과장 도 미 향)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학과장 강 현 정)
리더십 한림원 (원장 정경배)
휴먼서비스아카데미 (원장 최 은 미)
대한민국리더스포럼: 배려와 섬김 (회장 박 창 수)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정 연 보)
사)한국소아당뇨인협회 (회장 김 광 훈)
비)아동안전위원회 (회장 이 제 복)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회장 조 중 근)
한국사회봉사연합회 (회장 이 진)
대구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소장 김 미 령)
재단법인 만광장학회 (이사장 홍 효 주)
성남시 은행1동 다목적복지회관 (관장 장창현)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 후원계좌

1005-002-894690(우리) 예금주: 사단법인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본 법인은 시민이 참여하는 사회복지시민단체로 복지전공자, 복지종사자, 복지관계자 아니어도 누구든지 함께 우리나라를 선진복지국가로 만들어 가실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2silent@hanmail.net 070-8793-5202

- 2024년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

한국사회의 양극화 심화에 따른 위기진단과 사회보장 대응방향

일 시 2024. 12. 20 (금) 오후 2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공동주최 안 상 훈 국회의원



사단
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보건복지부

축 사 김 상 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서 상 목 前 보건복지부 장관

박 강 수 前 배재대학교 총장

주제발표 김 태 완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 론 자 강 성 호 선임연구위원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

최 균 교수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정 용 제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오 건 호 정책위원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YouTube 에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협력단체 | 골든에이지포럼, 사)지속가능발전원, 한국사회봉사단연합회, 동아노인복지연구소,
한국복지공공연구소, 한국사회복지원로회, 환경과 복지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성남시민포럼

2024년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지역발전운용자금지원사업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창립 15주년 기념토론회



노인 돌봄 및 간병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일 시 2024. 10. 29 (화) 오후 1시 30분

장 소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

주 최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성남시민포럼

축 사 신 상 진 성남시 시장
차 흥 봉 前 보건복지부 장관
박 강 수 前 배재대학교 총장



주제발표 유 재 언 교수(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서 희 경 시의원(성남시)
김 현 미 센터장(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이 정 우 관장(분당노인종합복지관)
김 동 희 이사(대한요양병원협회/로하스용인요양 병원장)
박 진 석 과장(성남시 노인복지과)



 YouTube 에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협력단체 | 사)대한노인회 분당·수정·중원구지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골든에이지포럼,
동아노인복지연구소, 한국사회복지원로회, 성남시민단체협의회





h·well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비급여 의료비 관리 및 실손보험제도 개선방안

일 시 2024. **08.22** (목) 오후 2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공동주최 **최 보 윤** 국회의원



사단
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보건복지부

축 사 **김 상 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서 상 목 前 보건복지부 장관

주제발표 **정 형 선** 소장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

토 론 자 **여 나 금**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 주 열 교수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김 원 식 객원교수 (조지아주립대)
신 성 식 복지전문기자 (중앙일보)
구 슬 이 보건복지여성팀장 (국회입법조사처)

 YouTube 에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협력단체 | 골든에이지포럼, 사)지속가능발전원, 한국사회봉사단연합회, 동아노인복지연구소,
한국복지공공연구소, 한국사회복지원로회, 환경과 복지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일 시 2023. 10. 11 (수) 오후 1시 30분 ~ 오후 4시
장 소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

주 최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축 사 신 상 진 성남시 시장
 박 은 미 성남시의회 부의장
 차 흥 봉 前 보건복지부 장관

주제발표 배 은 경 교수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김 기 주 부회장 (요양병원협회)
 서 희 경 시의원 (성남시의회)
 윤 미 정 상임팀장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신 명 희 관장 (중원노인종합복지관)
 남 현 주 교수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YouTube 에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협력단체 |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사)대한노인회수정 · 중원 · 분당구지회,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 성남시민포럼, 고도제한완전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 국제스마트복지센터(GSWC), 환경과복지를 생각하는시민의모임, 한국복지공공연구소,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국사회봉사단연합회,

국제개발협력과 스마트복지전략

정·책·토·론·회

2023. **9. 19** (화) 14:00-17:00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장

개회

서상목 국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발제

- 01** [국제개발협력과 글로벌 사회정책의 동향]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02** [국제개발협력의 NGO(비정부기구) 역할과 스마트복지]
이명신 전 월드비전 해외사업본부장
- 03** [한국의 ODA(공정개발원조) 전략과 국제사회복지]
황원규 강릉원주대 명예교수

좌장

최병호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패널토론

- 노영선 (사)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부장
- 박영란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
-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협력단장
- 유태균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정우용 신한대학교 국제개발협력학과 교수



| 주최 |  서정숙, 김성주, 이종성 국회의원

| 주관 |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 국제스마트복지센터(GSWC),
(사)선진복지사회 연구회

2023. 07. 11 (화) PM. 14: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장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향한 스마트복지의 길 -개도국에의 시사점

| **주최** | 서정숙·김성주·이종성 국회의원 | **주관** | 국제스마트복지센터(GSWC)
| **공동주최** |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 | (사)선진사회복지연구회

| **발제** |

- **스마트복지: Why & How?**
서상목 | 국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디지털 복지국가,
우리나라의 실험과 개도국에의 시사점**
김수완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개도국의 스마트한 복지정책
시행방향 모색**
이현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 **복지와 일자리의 선순환**
최 군 |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좌장** |

서상목 | 국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토론** |

- ① 이정숙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 ② 정무성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③ 조상미 |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 ④ 한은희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연구위원





의료 · 영양 · 돌봄 **통합서비스** 운영을 위한 해결 과제

일 시 2023. **07. 06** (목) 오후 2시 30분

장 소 프레스센터 19층 대화홀

주 최  사단 법인 **선진복지사회 연구회**

주 관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

축 사 서 상 목 前보건복지부 장관

주 제 민선 8기 성남시민 맞춤형 사회복지의 과제와 전망

주제발표 이 주 열 교수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토 론 자
 김 기 주 부회장 (요양병원협회)
 이 만 우 선임입법조사연구관 (국회입법조사처)
 나 임 순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 무 열 교수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신 성 식 복지전문기자 (중앙일보)

 YouTube 에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협력단체 | 사)서울특별시보건협회,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국NGO연합, 공정사회실천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한국사회봉사단연합회



일 시

2022.11. 16 (수) 오후 2시 30분

장 소

서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 최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주 제

인터내셔널 사회복지와 국제협력

발 표 자

황 명 진 교수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 1) 강 대 성 고문 (굿피플)
- 2) 장 명 신 정책연구실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3) 한 창 근 교수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4) 김 윤 섭 센터장 (고려대학교의료원 사회공헌사업본부국제협력센터)



YouTube



facebook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를 통해 생방송 시청 바랍니다.

협력단체: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국사회봉사단연합회
한국복지공공연구소,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공정언론국민연대

민선 8기 성남시민 맞춤형 사회복지의 과제와 전망

2022. 11. 08 (화) 오후 2시
성남시 성남아트센터 사무동 1층 컨퍼런스홀

공동주최



사단
법인

선진복지사회 연구회

성남시민연대 ■ 대안연대

후원



행정안전부

주제

민선 8기 성남시민 맞춤형 사회복지의 과제와 전망

모두발언

서민 공동대표 (대안연대/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발표자

이준우 교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토론자

정호신 센터장 (굿피플장애인활동지원기관)

석춘지 前 성남위례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박영애 前 성남시의원

조기흥 회계사

남천우 관장 (상대원1동복지회관)

허은 국장 (성남시 복지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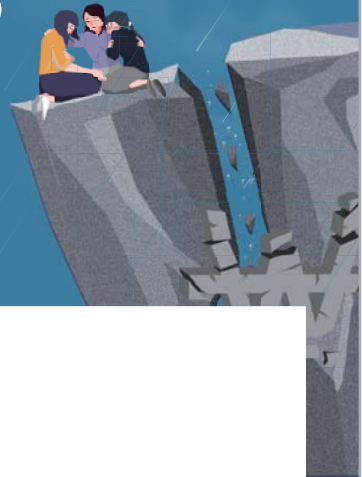
YouTube 에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협력단체 | 성남지역서민단체연대회의,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국사회봉사단연합회, 한국복지공공연구소, 성남전철협,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공정언론국민연대, 전국민속5일장연합회 성남지부, 자영업자소상공인성남연대, 부동산적폐청산시민행동 성남지부, 터사랑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서민의힘 성남지부, 성남환경실천연합회, 성남의힘

제 3의 송파·수원 세모녀 사건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일시 2022.10.26. (수)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공동주최



사단
법인

선진복지사회 연구회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



국회의원 김미애



국회의원 이종성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발제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소득보장제도 개선방향

발제자 윤성원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토론자 박영용 회장(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발제 2 세모녀의 사회복지 - 현실과 대책

발제자 정재훈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김태완 연구실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평등연구실)

정중규 정책실장(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 본 토론은 YouTube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협력단체 | 범사회시민단체연합,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국사회봉사단연합회,
한국공공복지연구수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

한국 연금체계의 개혁 방향과 과제

2022. 06. 29 (수)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성 일 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사단
법인

선진복지사회 연구회

후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격려사 **이 갑 산** 명예회장(범시민사회단체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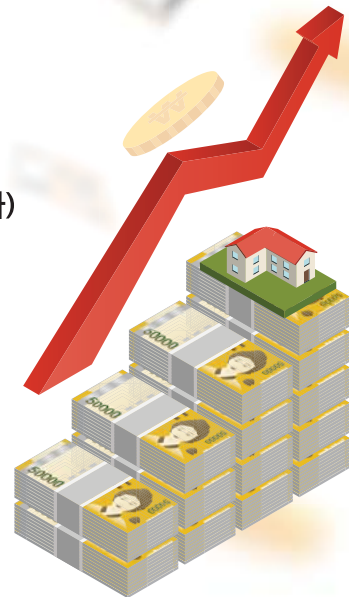
발표자 **오 건 호** 정책위원장(내가만드는복지국가)

좌장 **이 용 하** 박사(前국민연금연구원장)

토론자 **김 원 섭** 교수(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강 성 호 박사(보험연구원)

주 은 선 교수(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토크콘서트는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YouTube 에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를 검색하세요.

협력단체 | 범사회시민단체연합,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국사회봉사단연합회,
공정언론국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최연혁 교수 초청 토크콘서트

新국제질서와 한국정치의 도전:

복지 및 주요 정책과 제도의 정치적 대응력 진단

일시 2022. 5. 19 (목)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송 석 준



사단 법인 **선진복지사회 연구회**

축사 서 상 목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前 보건복지부 장관

격려사 차 흥 봉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표이사
- 前 보건복지부 장관

후원  행정안전부

*본 토크콘서트는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YouTube 에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를 검색하세요.

초청 교수



최 연 혁 교수

· 스웨덴 린네대학교 정치학과

협력단체 | 범사회시민단체연합,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국사회봉사단연합회,
한국복지공공연구소,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